

평택시 공고 제2026-2390호

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_동작2지구 등 7개 지구]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_동작2지구 등 7개 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 7. 27.
평택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공간적 범위 : 동작2지구 등 7개 지구 (5,497,188.6㎡)

나. 내용적 범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7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

구분	지구명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변경 (학원 및 교습소 용도분리)	• 6개 지구 － 동작2지구, 서재지구, 신촌지구, 안정지구, 안정리로테오거리, 안중송담지구
하수도시설용지 허용용도 변경 (편익시설 허용)	• 1개 지구 － 소사벌택지지구

2. 공람기간 : 공고일(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평택시청(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작동, 비전1동, 송탄동, 안중읍, 팽성읍)

4.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가. 결정조서: 변경(열람장소 비치)

나. 결정도면: 변경없음(게재생략)

5.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도시계획과(☎031-8024-3927)로 문의 또는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람(안)은 향후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동작2지구

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동작2지구	동작동 854 일원	643,442.3	-	643,442.3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43,442.3	-	643,442.3	100.0	-
주거지역	소계	555,975.3	-	555,975.3	86.4	-
	제1종일반주거지역	122,722.0	-	122,722.0	19.0	-
	제2종일반주거지역	399,961.3	-	399,961.3	62.2	-
	준주거지역	33,292.0	-	33,292.0	5.2	-
녹지지역	소계	87,467.0	-	87,467.0	13.6	-

3.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가.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48	7,964	130,062.7	13	3,730	62,816.9	4	977	10,793.8	31	3,257	56,452.0
대로	5	2,020	42,068.2	1	177	483.6	1	367	1,034.2	3	1,476	40,550.4
중로	14	3,208	64,388.3	2	2,002	46,298.6	2	405	8,147.8	10	801	9,941.9
소로	29	2,736	23,606.2	10	1,551	16,034.7	1	205	1,611.8	18	980	5,959.7

※ 연장은 구역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3	35~37	주간선 도로	2,124 (177)	세교동 15호 광장	칠괴동 13호 광장	일반 도로	-	경고2000-53 (2000.03.03)	-
기정	대로	2	2	34~37	주간선 도로	2,910 (367)	대로1-6	대로1-3	일반 도로	-	경고2007-382(2 007.11.02)	-
기정	대로	3	1	27~33	보조 간선 도로	763	대로2-2 동삭동97-2	칠원동453-5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대로	3	2	25~31	보조 간선 도로	525	중로1-1	동삭동896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대로	3	3	26	보조 간선 도로	188	대로2-2	중로1-1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1	1	20~26	집산 도로	1,465	대로3-1	대로3-1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1	2	20	집산 도로	537	중로1-1	중로1-1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2	1	18~24	집산 도로	350	대로2-2 동삭동 874	중로1-1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2	30	15	집산 도로	55	대로1-3 동삭동338-8	동삭초교 동삭동332-7	일반 도로	동삭 초교	경고2001-12 (2001.01.07)	-
기정	중로	3	1	12~15	국지 도로	201	중로1-1	소로3-1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3	2	14	국지 도로	10	중로3-2	2호초등학교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3	3	14	국지 도로	10	중로1-1	1호중학교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3	4	13	국지 도로	25	대로3-1	동삭동98-3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3	5	12	국지 도로	87	중로1-2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30	중로1-2	2호초등학교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3	7	12	국지 도로	24	중로1-2	1호 중학교	일반 도로	-	경고2014-58 (2014.03.17)	-
기정	중로	3	8	12	국지 도로	181	대로3-3	중로3-1	일반 도로	-	경고2014-282(2 014.11.06)	-
기정	중로	3	9	12	국지 도로	228	중로1-2	중로1-2	일반 도로	-	경고2014-282(2 014.11.06)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	12	국지 도로	5	중로1-1	3호초등학교	일반 도로	-	경고2014-282(2014.11.06)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11	중로3-1	중로3-1	일반 도로	-	경고2014-58(2014.03.17)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08	중로3-1	소로1-1	일반 도로	-	경고2014-58(2014.03.17)	-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312	소로3-7	중로1-2	일반 도로	-	경고2014-58(2014.03.17)	-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86	중로1-2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2014-58(2014.03.17)	-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86	중로1-2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2014-58(2014.03.17)	-
기정	소로	1	9	10	국지 도로	102	중로2-30	동삭동830-5	일반 도로	-	경고2014-58(2014.03.17)	-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223	중로3-8	중로3-1	일반 도로	-	경고2014-282(2014.11.6)	-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126	소로1-7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2014-282(2014.11.6)	-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57	소로1-11	소로1-6	일반 도로	-	경고2014-282(2014.11.6)	-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140	중로3-1	소로1-10	일반 도로	-	경고2014-282(2014.11.6)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05	중로2-30	중로2-1	일반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1	6	특수 도로	10	대로2-2	중로3-1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2	6	특수 도로	7	대로2-2	소로1-1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9	대로3-1	소로1-6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9	대로3-1	소로1-6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9	6	특수 도로	9	대로3-1	소로1-6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10	6	특수 도로	8	대로3-1	소로1-6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11	6	특수 도로	6	대로3-1	소로1-6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2	6	특수 도로	10	대로3-2	동삭동845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13	6	특수 도로	10	중로2-1	동삭동835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14	6	특수 도로	331	대로3-2	중로1-1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15	6	특수 도로	197	중로2-1	소로3-14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16	6	특수 도로	100	중로1-1	칠원동산73	보행자 도로	-	경고2014-58(2014.3.17)	-
기정	소로	3	18	6	특수 도로	7	대로2-2	소로1-10	보행자 도로	-	경고2014-282(2014.11.6)	-
기정	소로	3	19	6	특수 도로	36	중로1-1	중로3-9	보행자 도로	-	경고2014-282(2014.11.6)	-
기정	소로	3	20	6	특수 도로	44	대로3-1	중로3-9	보행자 도로	-	경고2014-282(2014.11.6)	-
기정	소로	3	21	6	특수 도로	38	대로3-2	중로3-9	보행자 도로	-	경고2014-282(2014.11.6)	-
기정	소로	3	22	6	특수 도로	19	중로1-2	소로1-11	보행자 도로	-	경고2014-282(2014.11.6)	-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130	중로1-1	완충녹지5	보행자 도로	-	경고2017-377(2017.12.8)	-

※()는 사업구역 내 연장임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5,307.0	－	5,307.0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①	주차장	동삭동 843-2	1,535.0	－	1,535.0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②	주차장	동삭동 847-4	2,233.0	－	2,233.0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④	주차장	동삭동 868-1	1,539.0	－	1,539.0	경고2014-58 (2014.3.17)	－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개소	84,554.1	-	84,554.1	-	-
기정	①	상서재동초 근린공원	근린공원	동작동 834	11,005.6	-	11,005.6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②	상서재서초 근린공원	근린공원	동작동 858	13,010.2	-	13,010.2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③	상서재마당 근린공원	근린공원	동작동 843-1	13,992.7	-	13,992.7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④	상서재 근린공원	근린공원	동작동 853	16,318.1	-	16,318.1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①	모산골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동작동 836-2	2,221.8	-	2,221.8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④	서재초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동작동 857-1	3,408.9	-	3,408.9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①	상서재1호 소공원	소공원	동작동 868-2	915.8	-	915.8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②	상서재2호 소공원	소공원	동작동 860-2	1,358.7	-	1,358.7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③	상서재3호 소공원	소공원	동작동 833-10	1,164.1	-	1,164.1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①	상서재1호 수변공원	수변공원	동작동 850-1일원	11,688.2	-	11,688.2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②	상서재2호 수변공원	수변공원	동작동 870	9,470.0	-	9,470.0	경고2014-58 (2014.3.17)	-

나.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개소	40,088.3	－	40,088.3	－	－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13호 교통광장주변 동작동851-1	19,439.2	－	19,439.2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대로2-2호선변 동작동833-9일원	6,081.2	－	6,081.2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대로3-2호선변 동작동845-1일원	5,529.8	－	5,529.8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대로3-1호선변 동작동862-7일원	1,914.4	－	1,914.4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현대아파트 경계부 동작동852-1	4,154.5	－	4,154.5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중로2-1호선변 동작동835-2일원	2,969.2	－	2,969.2	경고2014-58 (2014.3.17)	－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개소	14,807.1	－	14,807.1	－	－
기정	①	공공공지	중로1-1호선변 동작동835-4일원	10,170.0	－	10,170.0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②	공공공지	동작동 832	304.8	－	304.8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③	공공공지	대로3-1호선변 동작동849-11일원	1,505.0	－	1,505.0	경고2014-282 (2014.11.6.)	－
기정	④	공공공지	대로3-2호선변 동작동848-4일원	942.9	－	942.9	경고2014-282 (2014.11.6.)	－
기정	⑤	공공공지	대로3-3호선변 동작동835-5일원	1,615.8	－	1,615.8	경고2014-282 (2014.11.6.)	－
기정	⑥	공공공지	동작동 830-15	268.6	－	268.6	경고2014-282 (2014.11.6.)	－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41,051.3	－	41,051.3	－	－
기정	①	학교	중학교	동작동 859	12,992.0	－	12,992.0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②	학교	초등학교	동작동 856	12,499.5	－	12,499.5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③	학교	초등학교	동작동 840-1	10,499.0	－	10,499.0	경고2014-282 (2014.11.6.)	－
기정	④	학교	유치원	동작동 840-2	5,060.8	－	5,060.8	경고2014-58 (2014.3.17)	－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2,189.9	－	2,189.9	－	－
기정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동작동 843-3	1,147.0	－	1,147.0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②	공공청사	공공청사	동작동 860-3	1,042.9	－	1,042.9	경고2014-58 (2014.3.17)	－

4) 방재시설 : 변경없음

가. 유수지 :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7,606.4	－	7,606.4	－	－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동작동 844	2,846.6	－	2,846.6	경고2014-58 (2014.3.17)	－
기정	②	유수지	저류시설	동작동 850-3	4,759.8	－	4,759.8	경고2014-58 (2014.3.17)	1호수변공원내 중복결정

나. 하천 : 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⑥	하천	지방하천 (통복천)	-	-	동작동 1번지	-	-	510.6	-	-

※ 경기도고시 제2018-5122호(2018.06.18.)에 의한 통복천 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단독	계	44,882.8	15가구			-
	1	1,535.9	-1	동작동 830-1 일원	1,535.9	• 단독주택용지의 획지계획은 환지 계획을 따르며 아래 사항을 준수함 - 획지의 규모는 165㎡ 이상으로 함 - 환지계획으로 결정된 단독필지는 분할 및 합병 할 수 없음
	2	2,058.6	-1	동작동 831-1 일원	2,058.6	
	3	5,239.2	-1	동작동 830-3 일원	5,239.2	
	4	3,209.7	-1	동작동 833-1 일원	3,209.7	
	5	4,585.3	-1	동작동 838-1 일원	4,585.3	
	6	4,706.2	-1	동작동 839-1 일원	4,706.2	
	7	4,024.4	-1	동작동 841-1 일원	4,024.4	
	8	3,255.9	-1	동작동 842-1 일원	3,255.9	
	9	1,823.1	-1	동작동 862-1 일원	1,823.1	
	10	1,192.5	-1	동작동 861-1 일원	1,192.5	
	11	1,412.3	-1	동작동 863-1 일원	1,412.3	
	12	1,467.5	-1	동작동 864-1 일원	1,467.5	
	13	3,293.8	-1	동작동 865-1 일원	3,293.8	
	14	3,240.1	-1	동작동 866-1 일원	3,240.1	
	15	3,838.3	-1	동작동 867-1 일원	3,838.3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공동	계	264,823.0		-	264,823.0	-
	1	45,480.0	-1	동작동 835	45,480.0	공동주택용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을 불허함 (단, 「주택법」 제2조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예외이며, 집단채비지 지정을 위한 분할은 환지계획을 따르고, 이 경우 분할된 공동주택용지는 공동개발이 가능함)
	2	38,802.0	-1	동작동 845	38,802.0	
	3	109,991.0	-1	동작동 852	109,991.0	
	4	32,983.0	-1	동작동 854	32,983.0	
	5	37,567.0	-1	동작동 855	37,567.0	

3)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준주	계	12,318.9		-	12,318.9	-
	1	1,561.4	-1	동작동 846-1 일원	1,561.4	- 준주거용지의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을 따르며 아래 사항을 준수함 - 획지의 규모는 250m² 이상으로 함 - 환지계획으로 계획된 획지는 분할할 수 없음 - 환지계획에 의해 계획된 획지간의 합병을 허용하며, 합병 시 각 획지에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함
	2	3,297.2	-1	동작동 849-2 일원	3,297.2	
	3	2,947.1	-1	동작동 849-7 일원	2,947.1	
	4	1,577.3	-1	동작동 848-1 일원	1,577.3	
	5	1,514.0	-1	동작동 847-1 일원	1,514.0	
	6	1,421.9	-1	동작동 847-5 일원	1,421.9	

4)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가. 학교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학교	계	35,990.5		-	35,990.5	-
	1	12,992.0	-1	동작동 859	12,992.0	중학교
	2	12,499.5	-1	동작동 856	12,499.5	초등학교
	3	10,499.0	-1	동작동 840-1	10,499.0	초등학교

나. 유치원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유치원	계	5,060.8		-	5,060.8	-
	1	5,060.8	-1	동작동 840-2	5,060.8	-

다. 공공청사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공청	계	2,189.9	-	-	2,189.9	-
	1	1,147.0	-1	동작동 843-3	1,147.0	-
	2	1,042.9	-1	동작동 860-3	1,042.9	-

라.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주차	계	5,307.0	-	-	5,307.0	-
	1	1,535.0	-1	동작동 843-2	1,535.0	-
	2	2,233.0	-1	동작동 847-4	2,233.0	-
	4	1,539.0	-1	동작동 868-1	1,539.0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단독1 ~ 단독15	단독1 ~ 단독2	용도 (R)	허용용도 (R1)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소매점 - 나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 라목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마목의 탁구장 및 체육도장 -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협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사목의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일반음식점, 기원 - 바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목의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존치건축물은 기승인된 용도 허용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소매점 - 나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 라목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마목의 탁구장 및 체육도장 -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사목의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일반음식점, 기원 - 바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목의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원격교습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원격교습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준치건축물은 기승인된 용도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R1)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
	단독3 ~ 단독4	용도 (R)	허용용도 (R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단독주택 - 다목의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소매점 - 나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 라목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마목의 탁구장 및 체육도장 -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사목의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일반음식점, 기원 - 바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목의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준치건축물은 기승인된 용도 허용 ※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비주거용도의 면적은 건축물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50% 초과하지 못함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소매점 - 나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및 세탁소 - 라목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및 안마원 - 마목의 탁구장 및 체육도장 -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사목의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일반음식점, 기원 - 바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목의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원격교습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원격교습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불허용도 • 허용용도(R2)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단독5 ~ 단독15	용도 (R)	허용용도 (R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단독주택 - 다목의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불허용도	• 허용용도(R3)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단독1 ~ 단독15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R1	• 4층 이하	
		R2	• 4층 이하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만을 허용하는 경우 3층 이하(지상1층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확보 시 필로티 포함 4층까지 허용)	
		R3	• 3층 이하 ※ 지상1층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확보 시 필로티 포함 4층까지 허용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배치	전면방향:접하고 있는 도로 중 폭이 넓은 도로변을 향하도록 배치
		형태	- 지붕형태: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인 경우 지붕 경사도는 3/10~7/10 범위내 조성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평지붕으로 한다) - 건축부속시설(실외기, 배수홈통 등)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입면에 설치할수 없으며, 옥상설비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목재 등 친환경적재질을 사용하여 차폐시설(가림막)설치. 단, 지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시설(가림막) 제외 - 건축물 외벽:외벽 전체의 불투명 반사유리 또는 원색계열의 도료사용 지양, 외벽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벽돌, 자연석재 등 친환경 재질 사용 권장 - 담장 및 대문:담장설치 시 투시형 담장 또는 식재(생울타리)담장으로 조성을 권장하며 자연석 또는 조경석,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 권장 1층부에 주거용도이외의 건축물 용도가 입지할 경우에는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 및 투시형 셔터 설치를 권장 1건축물, 1특색디자인 설치 권장(예:녹화벽, 아트월, 벽화, 옥상녹화 등) - 옥외광고물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치
		색채	- 권장색채 - 주조색 : 명도 4이상 / 채도 5이하 - 보조색·강조색 : 명도 4~9이상 / 채도 2~10이하 - 창틀색 : 건축물 외부 마감재와 유사한 톤의 무채색 계열
		건축선	- 건축한계선:중로12m이상 도로변 2m, 기타 1m (결정도 참조) ※ 존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한계선 제한을 받지 아니함 (존치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에는 건축한계선 제한 받음)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동1 ~ 공동5	공동1 ~ 공동5	용도 (A)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8호의 부대시설 「주택법」 제2조 제9호의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기타 부대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기타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200% 이하 - 허용용적률:220% 이하 ※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 신청시 허용용적률 적용
		높이	30층이하 (학교주변 40m구간 10층이하)
	배치	배치	- 공동주택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평택시 주택조례」 등을 준용 - 직각배치구간 설정 : 일조권,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대로2-2호선변 공동주택용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구간 내 주동에 적용 - 직각배치 인정기준 - 관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pm 22.5^\circ$ 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pm 22.5^\circ$ 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상형 예시> <정방형 예시>
		형태	-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될 경우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관상형 공동주택의 주동배치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 주변과 비교하여 과도한 층수변화가 없도록 계획 - 고층부 옥탑부는 복잡한 조형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경쾌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스카이라인의 다양성 도모 및 랜드마크 형성 - 지붕은 가급적 심플하게 조성하며, 건축입면과 형태, 외장과 조화되도록 설치 - 건축부속시설(실외기, 배수흡통 등)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입면 설치할 수 없음 - 담장을 설치할 경우 50%이상 투시형 담장으로써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 옥외광고물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치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색채	- 권장색채 - 주조색 : 2.5YR~5P - 보조색 : 10R~10Y / 명도 4~9이상 / 채도 1~8 - 강조색 : 10R~10Y / 명도 4~8이상 / 채도 2~8 10PR~10YR / 명도 4~8이상 / 채도 2~8 10PB~10RP / 명도 4~8이상 / 채도 2~8
		건축선	건축한계선:중로이상 도로변 10m, 보행자도로변 5m, 공공공지면 5m, 공원 및 녹지면 4m (결정도 참조)

3)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준주1 ~ 준주6	준주1 ~ 준주6	용도 (SC)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고시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종교집회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의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의 야외음악당, 나목의 야외극장, 다목의 어린이회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보행의 주출입구는 전면도로를 향하게 하고 차량의 출입구는 이면도로로 향하도록 배치 - 건축물의 전면은 당해 도로를 향하도록 하며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위계가 높은 도로를 전면으로 배치
		형태	- 지붕형태: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옥상녹화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평지붕으로 한다 - 담장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 또는 50%이상 투시되는 재료 사용(높이 1.2m 이하) - 건축물 외벽:단순하고 일률적인 형태보다는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한 건축물 외관경관 창출, 2층이하 저층부는 개방감있는 가로조성을 위해 투명감 있는 재료 사용 권장, 외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벽(맞벽) 건축 권장 - 건축부속시설(실외기, 배수홈통 등)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입면에 설치할 수 없음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 및 투시형 셔터 설치를 권장 1건축물, 1특색디자인 설치 권장(예:녹화벽, 아트월, 벽화, 옥상녹화 등) - 옥외광고물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치
		색채	- 권장색채 - 주조색 : 명도 6이상 / 채도 4이하 - 보조색·강조색 : 명도 제한없음 / 채도 8이하 - 유리 : 투명, 저반사 유리 사용 권장, 건축물 규모에 비해 넓은 면적의 고풍택 스텐레스의 사용 제한
		건축선	건축한계선:3m (결정도 참조)

4)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가. 학교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학교1 ~ 학교3	학교1	용도 (S)	허용용도(S1)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2 ~ 학교3	용도 (S)	허용용도(S2)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 「유아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1 ~ 학교3	학교1 ~ 학교3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지붕형태: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옥상녹화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평지붕으로 한다
			색채	• 평택시 경관계획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3m (결정도 참조)

나. 유치원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유치1	유치1	용도 (K)	허용용도	• 「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지붕형태: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옥상녹화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평지붕으로 한다	
		색채	• 평택시 경관계획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2m (결정도 참조)	

다.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청1 ~ 공청2	공청1 ~ 공청2	용도 (O)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 (교정 시설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지붕형태 :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옥상녹화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평지붕으로 한다	
		색채	• 평택시 경관계획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2m (결정도 참조)	

라.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1, 주차4	주차1, 주차4	용도 (P)	허용용도 (P1)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 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최상층 옥상은 주차장으로 사용) -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이어야 한다. -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자전거보관소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주차2	주차2	용도 (P)	허용용도 (P2)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단, 폐차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제외)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최상층 옥상은 주차장으로 사용) -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이어야 한다. -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자전거보관소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시설
주차1 주차2 주차4	주차1 주차2 주차4	건 폐 율	P1	• 80% 이하
			P2	• 90% 이하
		용 적 륜	P1	• 320% 이하
			P2	• 630% 이하
		높 이	P1	• 최고 : 4층 이하, 최저 : 2층 이상
			P2	• 최고 : 7층 이하, 최저 : 2층 이상
		배 치		—
		형 태		—
		새 채		• 평택시 경관계획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2m (결정도 참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II.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당 초	변 경
제4장 경관부문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07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관한 사항) 본 지구단위계획 건축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관한 사항은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하였던 건축법 시행령 [별표1](2013. 05. 31) 기준을 따른다.	제4장 경관부문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07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관한 사항) 본 지구단위계획 건축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관한 사항은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하였던 건축법 시행령 [별표1](2013. 05. 31) 기준을 따른다. (신설) ※ 향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시행령을 따른다.

② 서재지구

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서재지구	동작동 663번지 일원	497,799.1	—	497,799.1	경고제53호 (2000.3.3.)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7,799.1	—	497,799.1	100.0	
주거 지역	계	492,910.0	—	492,910.0	99.0	
	제1종일반주거지역	353,193.1	—	353,193.1	71.0	
	제2종일반주거지역	74,713.8	—	74,713.8	15.0	
	준주거지역	65,003.1	—	65,003.1	13.0	
녹지 지역	계	4,889.1	—	4,889.1	1.0	
	자연녹지지역	4,889.1	—	4,889.1	1.0	

3.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가.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98	12,050	146,387.9	6	1,060	20,978	49	8,114	85,274	43	2,876	40,135.9
대로	1	673	17,984	—	—	—	—	—	—	1	673	17,984
중로	21	4,225	68,830.9	2	788	18,173	12	2,203	35,111	7	1,234	15,546.9
소로	76	7,152	59,573	4	272	2,805	37	5,911	50,163	35	969	6,605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0	25	보조 간선	1,291 (673)	비전동 대로 3-22	동작동 746	일반 도로	-	경고제53호 (2000.3.3)	()는 구역내
기정	중로	1	54	23	보조 간선	457	동작동 737도 대로 3-20	동작동 735도 대로 3-14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1	55	20	보조 간선	331	동작동 769도 대로 3-20	동작동 769도 지구계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64	15	보조 간선	148	동작동 755도 대로 3-20	동작동 755도 중로 3-5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72	15	집산 도로	244	동작동 763도 중로 2-75	동작동 763도 소로 2-647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73	15	집산 도로	259	동작동 777도 중로 2-72	동작동 777도 대로 1-3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74	15	집산 도로	66	동작동 780도 중로 2-73	동작동 780도 지구계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75	15	집산 도로	368	동작동 764도 중로 1-55	동작동 758도 소로 3-413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76	15	집산 도로	225	동작동 722도 중로 1-55	동작동 722도 공공공지 2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77	16	집산 도로	27	동작동 757도 대로 3-20	동작동 757도 중로 2-78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78	15	집산 도로	240	동작동 756도 중로 2-64	동작동 756도 소로 3-418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79	15	집산 도로	154	동작동 745도 중로 3-56	동작동 745도 소로 1-139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80	15	집산 도로	245	동작동 738도 중로 3-54	동작동 740도 어린이공원 76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2	81	16	집산 도로	27	동작동 763도 대로 3-20	동작동 763도 중로 2-75	일반 도로	-	경고제43호 (2007.2.20.)	
기정	중로	2	82	15	집산 도로	200	동작동 778도 중로 2-72	동작동 778도 중로 1-55	일반 도로	-	경고제43호 (2007.2.20.)	
기정	중로	3	54	13	집산 도로	111	동작동 740도 중로 1-54	동작동 740도 유수지 2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3	55	12	집산 도로	416	동작동 750도 중로 3-56	동작동 750도 중로 3-58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3	56	12	집산 도로	649	동작동 741도 대로 3-20	동작동 731도 중로 1-54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3	57	12	집산 도로	101	동작동 752도 중로 2-78	동작동 752도 중로 3-5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8	12	특수 도로	19	동작동 716-2도 중로 3-55	동작동 716-2도 지구계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3	59	12	집산 도로	76	동작동 749도 중로 3-55	동작동 749도 소로 2-629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중로	3	73	13~ 16	집산 도로	145	동작동 742도 중로 1-54	동작동 742도 중로 3-56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1	137	10	집산 도로	121	동작동 734도 중로 3-56	동작동 734도 공공청사3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1	138	10	집산 도로	81	동작동 724도 중로 3-56	동작동 724도 원충녹지 33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1	140	11	집산 도로	32	동작동774-1도 대로 3-20	동작동774-1도 중로 2-76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1	141	11	집산 도로	31	동작동 740도 대로 3-20	동작동 740도 중로 2-80	일반 도로	-	경고제43호 (2007.2.20.)	
기정	소로	2	615	8	국지 도로	154	동작동 740도 중로 2-80	동작동 740도 중로 3-54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16	8	국지 도로	154	동작동 739도 중로 3-54	동작동 739도 중로2 -80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17	8	국지 도로	528	동작동 725도 중로 3-56	동작동 724도 소로 1-138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18	8	국지 도로	147	동작동 727도 소로 2-619	동작동 727도 소로 2-617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19	8	국지 도로	76	동작동 728도 중로 3-56	동작동 728도 소로 2-617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20	8	국지 도로	137	동작동 732도 소로 1-137	동작동 732도 중로 3-56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21	8	국지 도로	116	동작동 733도 소로 1-137	동작동 733도 소로 2-620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22	8	국지 도로	138	동작동 743도 중로 2-79	동작동 743도 소로 1-139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23	8	국지 도로	74	동작동 744도 소로 2-622	동작동 744도 소로 1-139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24	8	국지 도로	103	동작동 754도 중로 2-78	동작동 754도 중로 3-5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25	8	국지 도로	102	동작동 753도 중로 2-78	동작동 753도 중로 3-5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26	8	국지 도로	100	동작동 751도 중로 2-78	동작동 751도 중로 3-5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27	8	국지 도로	100	동작동 756도 중로 2-78	동작동 756도 중로 3-5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28	8	국지 도로	91	동작동 748도 중로 3-55	동작동 748도 소로 2-629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29	8	국지 도로	297	동작동 747도 중로 3-55	동작동 747도 중로 3-5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30	8	국지 도로	144	동작동 773도 소로 2-648	동작동 773도 소로 2-633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32	8	국지 도로	25	동작동 770도 중로 1-55	동작동 770도 소로 2-633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33	8	국지 도로	237	동작동 771도 중로 2-76	동작동 771도 소로 2-648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34	8	국지 도로	163	동작동 768도 중로 2-75	동작동 768도 중로 2-82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35	8	국지 도로	167	동작동 776도 중로 2-72	동작동 776도 소로 2-634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36	8	국지 도로	132	동작동 767도 중로 2-75	동작동 767도 소로 2-63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37	8	국지 도로	132	동작동 766도 중로 2-75	동작동 766도 소로 2-63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38	8	국지 도로	133	동작동 765도 중로 2-75	동작동 765도 소로 2-63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39	8	국지 도로	135	동작동 786도 중로 2-82	동작동 786도 중로 2-651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40	8	국지 도로	167	동작동 783도 중로 2-72	동작동 783도 소로 2-639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41	8	국지 도로	36	동작동 784도 소로 2-640	동작동 784도 소로 2-647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42	8	국지 도로	134	동작동 762도 중로 2-75	동작동 762도 소로 2-64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43	8	국지 도로	135	동작동 761도 중로 2-75	동작동 761도 소로 2-64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44	8	국지 도로	127	동작동 760도 소로 2-645	동작동 760도 소로 2-643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45	8	국지 도로	357	동작동 775도 중로 2-72	동작동 759 중로 2-75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46	8	국지 도로	131	동작동 781도 중로 2-72	동작동 781도 소로 2-74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47	8	국지 도로	598	동작동 779도 중로 2-74	동작동 782도 소로 2-639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48	8	국지 도로	282	동작동 774도 중로 1-55	동작동 774도 중로 2-76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49	8	특수 도로	24	동작동 679-8도 중로 1-54	동작동 679-8도 소로 1-137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2	650	8	국지 도로	22	동작동 760도 중로 2-73	동작동 760도 소로 2-645	일반 도로	-	경고제43호 (2007.2.20.)	
기정	소로	2	651	8	국지 도로	171	동작동 785도 중로 1-55	동작동 785도 소로 2-647	일반 도로	-	경고제43호 (2007.2.20.)	
기정	소로	2	652	8	국지 도로	142	동작동 730도 소로 1-138	동작동 730도 소로 2-619	일반 도로	-	경고제43호 (2007.2.20.)	
기정	소로	3	384	6	국지 도로	22	동작동 726도 소로 2-617	동작동 726도 북동측 지구계	일반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85	6	특수 도로	18	동작동 721-2도 북동측지구계	동작동 721-2도 소로 2-617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86	6	특수 도로	19	동작동 721-4도 동측지구계	동작동 721-4도 소로 2-617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87	6	특수 도로	32	동작동 637-18도 소로 2-618	동작동 637-18도 소로 2-617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88	6	특수 도로	34	동작동 672-19도 소로 2-617	동작동 672-19도 소로 2-618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89	6	특수 도로	16	동작동 670-9도 소로 2-617	동작동 670-9도 근린공원 74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90	6	특수 도로	35	동작동 679-11도 소로 2-621	동작동 679-11도 소로 2-620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91	6	특수 도로	32	동작동 676-17도 소로 2-620	동작동 676-17도 중로 3-56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92	6	특수 도로	32	동작동 675-15도 중로 3-56	동작동 675-15도 소로 2-652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93	6	특수 도로	32	동작동 674-19도 소로 2-652	동작동 674-19도 소로 2-617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94	6	특수 도로	18	동작동 721-6 동측지구계	동작동 721-6 소로 2-617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95	6	특수 도로	24	동작동 711-17도 중로 2-80	동작동 711-17도 중로 1-54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96	6	특수 도로	34	동작동 711-18도 중로 2-80	동작동 711-18도 중로 1-54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97	6	특수 도로	27	동작동 667-9도 중로 1-54	동작동 667-9도 중로 2-79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98	6	특수 도로	30	동작동 705-12도 대로 3-20	동작동 705-12도 중로 2-76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399	6	특수 도로	30	동작동 705-13도 대로 3-20	동작동 705-13도 중로 2-76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00	6	특수 도로	47	동작동 707-20도 중로 2-76	동작동 707-20도 소로 2-630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01	6	특수 도로	25	동작동 709-9도 소로 2-630	동작동 709-9도 근린공원 77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04	6	특수 도로	25	동작동 708-10도 소로 2-633	동작동 708-10도 중로 1-55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05	6	특수 도로	25	동작동 697-11도 중로 1-55	동작동 697-11도 소로 2-634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06	6	특수 도로	40	동작동 696-17도 소로 2-634	동작동 696-17도 소로 2-636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07	6	특수 도로	39	동작동 694-13도 소로 2-637	동작동 694-13도 소로 2-638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08	6	특수 도로	25	동작동 693-9도 중로 2-72	동작동 693-9도 소로 2-638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09	6	특수 도로	25	동작동 685-10도 중로 2-72	동작동 685-10도 소로 2-642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10	6	특수 도로	42	동작동 684-17도 소로 2-642	동작동 684-17도 소로 2-643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11	6	특수 도로	40	동작동 682-23도 소로 2-644	동작동 682-23도 소로 2-645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12	6	특수 도로	16	동작동 717-4도 소로 2-645	동작동 717-4도 서측 지구계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13	6	특수 도로	18	동작동 717-2도 중로 2-75	동작동 717-2도 서측 지구계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14	6	특수 도로	17	동작동 717-6도 소로 2-645	동작동 717-6도 서측 지구계	보행자 도로	-	2011.12.30	
기정	소로	3	415	6	특수 도로	22	동작동 698-13도 중로 2-82	동작동 698-13도 소로 2-635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16	6	특수 도로	22	동작동 699-14도 중로 2-82	동작동 699-14도 소로 2-640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17	6	특수 도로	30	동작동 692-12도 대로 3-20	동작동 692-12도 중로 2-75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18	6	특수 도로	17	동작동 716-4도 중로 2-78	동작동 716-4도 서측 지구계	보행자 도로	-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소로	3	419	6	국지 도로	42	동작동 733도 소로 2-621	동작동 733도 주차장8	일반 도로	-	2011.12.30	
기정	소로	3	420	6	특수 도로	17	동작동 718-2도 소로 2-647	동작동 718-2도 서측 지구계	보행자 도로	-	2011.12.30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주차장	8개소	-	10,954.9	-	10,954.9	-	
기정	8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작동 668-4차 일원	4,567.0	-	4,567.0	평고제529호 (2025.12.22.)	
기정	25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작동 712-12차 일원	743.9	-	743.9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26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작동 666-6차 일원	903.0	-	903.0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27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작동 655-8차 일원	1,178.3	-	1,178.3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28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작동 707-1차 일원	857.4	-	857.4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29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작동 658-5차 일원	902.8	-	902.8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30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작동 133-1차 일원	1,131.5	-	1,131.5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31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작동 675-4차 일원	671.0	-	671.0	경고제43호 (2007.2.20.)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공 원	7개소	-	32,149.8	-	32,149.8	-	
기정	74	공 원	근린공원	동작동 719공 일원	11,658.8	-	11,658.8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75	공 원	어린이공원	동작동 678-3공 일원	2,102.2	-	2,102.2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76	공 원	어린이공원	동작동 714공 일원	2,294.0	-	2,294.0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77	공 원	근린공원	동작동 710공 일원	10,702.1	-	10,702.1	경고제428호 (2005.1.5.)	유수지3 포함 (2,100㎡)
기정	78	공 원	어린이공원	동작동 695-8공 일원	2,319.5	-	2,319.5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79	공 원	어린이공원	동작동 657-1공 일원	1,546.4	-	1,546.4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80	공 원	어린이공원	동작동 683-1공 일원	1,526.8	-	1,526.8	경고제428호 (2005.1.5.)	

나.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녹 지	13개소	-	17,691.6	-	17,691.6	-	
기정	23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15-3공 일원	2,164.0	-	2,164.0	2003.3.3	
기정	33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21-7공 일원	1,435.7	-	1,435.7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34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21-5공 일원	2,694.6	-	2,694.6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35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21-3공 일원	1,790.5	-	1,790.5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36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21-1공 일원	409.6	-	409.6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37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18-3공 일원	1,282.7	-	1,282.7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38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17-5공 일원	1,791.4	-	1,791.4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39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17-3공 일원	1,121.9	-	1,121.9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40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17-1공 일원	443.4	-	443.4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41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16-5공 일원	462.3	-	462.3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42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16-3공 일원	1,834.7	-	1,834.7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43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16-1공 일원	1,876.6	-	1,876.6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45	녹 지	완충녹지	동작동 715-2공 일원	384.2	-	384.2	경고제43호 (2007.2.20.)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공공공지	3개소	2,004.6	-	2,004.6	-	
기정	2	공공공지	동삭동 723-1공 일원	1,244.0	-	1,244.0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3	공공공지	동삭동 722-1공 일원	326.0	-	326.0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14	공공공지	동삭동 668-3학 일원	434.6	-	434.6	평고제529호 (2025.12.22.)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공공 청사	2개소	-	32,889.1	-	32,889.1	-	
기정	3	공공 청사	평생학습관	동삭동 668-1학 일원	6,162.8	-	6,162.8	평고제529호 (2025.12.22.)	
기정	6	공공 청사	법원·검찰지청	동삭동 663대 일원	26,726.3	-	26,726.3	경고제490호 (1992.11.21.)	

4) 방재시설 : 변경없음

가. 유수지 :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유수지	2개소	-	6,666.1	-	6,666.1	-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동삭동 714공 일원	4,566.1	-	4,566.1	경고제428호 (2005.1.5.)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동삭동 710공 일원	2,100.0	-	2,100.0	경고제428호 (2005.1.5.)	근린공원77 중복결정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적(m ²)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적(m ²)	비고
도면1	단1	-	3,644.6		도면1	단37	-	1,766.2	
	단2	-	3,373.6			단38	-	3,855.9	
	단3	-	1,992.4			단39	-	4,646.1	
	단4	-	3,820.4			단40	-	2,764.4	
	단5	-	4,961.9			단41	-	2,869.9	
	단6	-	2,836.5			단42	-	2,781.5	
	단7	-	2,112.2			단43	-	3,499.4	
	단8	-	3,034.1			단44	-	2,603.8	
	단9	-	3,087.6			단45	-	1,170.6	
	단10	-	4,050.6			단46	-	1,277.0	
	단11	-	3,139.4			단47	-	2,905.6	
	단12	-	1,836.1			단48	-	3,246.8	
	단13	-	1,827.6			단49	-	1,528.7	
	단14	-	1,739.7			단50	-	1,715.4	
	단15	-	2,850.7			단51	-	1,779.8	
	단16	-	2,873.5			단52	-	5,935.3	
	단17	-	1,822.3			단53	-	1,756.8	
	단18	-	1,830.5			단54	-	2,000.1	
	단19	-	2,435.9			단55	-	3,440.2	
	단20	-	4,039.9			단56	-	2,514.4	
	단21	-	3,235.7			단57	-	1,938.7	
	단22	-	2,474.7			단58	-	2,913.0	
	단23	-	2,224.6			단59	-	855.8	
	단24	-	1,317.9			단60	-	1,755.6	
	단25	-	1,320.1			단61	-	1,606.1	
	단26	-	2,062.5			단62	-	1,615.4	
	단27	-	2,084.1			단63	-	1,757.3	
	단28	-	2,050.5			단64	-	2,599.6	
	단29	-	2,124.5			단65	-	1,925.2	
	단30	-	1,861.4			단66	-	1,844.2	
	단31	-	2,910.9			단67	-	5,440.5	
	단32	-	1,731.2			단68	-	6,206.5	
	단33	-	1,766.8			단69	-	1,545.0	
	단34	-	2,168.7			단70	-	1,569.2	
	단35	-	2,831.1			단71	-	565.0	
	단36	-	1,726.8			총 계		179,396.0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비고
도면 1	아 1	36,566.1	
	소계	36,566.1	

3)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적(m ²)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적(m ²)	비고
도면1	준1	-	3,640.4		도면1	준8	-	2,159.8	
	준2	-	2,776.4			준9	-	1,541.2	
	준3	-	4,182.9			준10	-	2,579.9	
	준4	-	2,928.8			준11	-	2,539.4	
	준5	-	2,433.7			준12	-	2,189.2	
	준6	-	1,811.4			-	-	-	
	준7	-	2,340.3			총 계		31,123.4	

4)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적(㎡)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적(㎡)	비고
도면1	공공청사1	－	26,726.3		도면1	주1	－	743.9	
						주2	－	903.0	
						주3	－	1,178.3	
	공공청사3	－	6,162.8			주4	－	857.4	
						주5	－	902.8	
						주6	－	1,131.5	
	소계	－	32,889.1			주7	－	671.0	
						주8	－	4,567.0	
						소계	－	10,954.9	

5) 단독주택용지 획지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도면1	단 1	3,644.6	1	652-1	428.2	
			2	652-2	268.7	
			3	652-4	324.9	
			4	652-5	325.0	
			5	652-6	246.0	
			6	652-7	411.2	
			7	652-8	302.6	
			8	652-9	300.5	
			9	652-10	284.6	
			10	652-11	270.5	
			11	652-12	214.5	
			12	652-3	267.9	
	단 2	3,373.6	1	653-1	376.8	
			2	653-2	286.4	
			3	653-3	353.0	
			4	653-4	302.3	
			5	653-6	462.5	
			6	653-7	422.1	
			7	653-9	274.0	
			8	653-10	320.2	
			9	653-5	302.3	
			10	653-8	274.0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m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²)	
	단 3	1,992.4	1	654-1	353.6	
			2	654-2	244.1	
			3	654-3	299.1	
			4	654-4	361.3	
			5	654-5	340.2	
			6	654-6	185.8	
			7	654-7	208.3	
	단 4	3,820.4	1	655-1	383.8	
			2	655-2	368.4	
			3	655-3	368.0	
			4	655-4	480.0	
			5	655-5	1,554.9	
			6	655-6	334.8	
			7	655-7	330.5	
	단 5	4,961.9	1	656-1	420.5	
			2	656-2	556.9	
			3	656-3	422.3	
			4	656-4	403.4	
			5	656-5	406.2	
			6	656-6	221.9	
			7	656-8	290.6	
			8	656-9	300.0	
			9	656-10	479.8	
			10	656-11	462.1	
			11	656-13	404.9	
			12	656-7	188.1	
			13	656-12	405.2	
	단 6	2,836.5	2	657-2	313.9	
			3	657-3	309.0	
			4	657-4	433.6	
			5	657-5	259.7	
			6	657-6	315.7	
			7	657-7	335.4	
			8	657-8	242.3	
			9	657-9	319.9	
			10	657-10	307.0	
	단 7	2,112.2	1	658-1	234.3	
			2	658-2	422.8	
			3	658-3	264.1	
			4	658-4	310.2	
			6	658-6	353.9	
			7	658-7	291.3	
			8	658-8	235.6	
	단 8	3,034.1	1	659-1	220.4	
			2	659-2	292.8	
			3	659-3	258.8	
			4	659-4	198.7	
			5	659-5	212.7	
			6	659-6	252.1	
			7	659-7	304.7	
			8	659-8	300.3	
			9	659-9	232.7	
			10	659-10	232.4	
			11	659-11	301.1	
			12	659-12	227.4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단 9	3,087.6	1	660-1	297.1	
			2	660-2	347.7	
			3	660-3	293.3	
			4	660-4	280.3	
			5	660-5	348.6	
			6	660-6	374.0	
			7	660-7	322.9	
			8	660-8	309.7	
			9	660-9	249.3	
			10	660-10	264.7	
	단 10	4,050.6	1	682-19	360.2	
			2	682-20	293.6	
			3	682-21	293.7	
			4	682-22	357.4	
			5	682-1	299.8	
			6	682-2	311.4	
			7	682-3	244.8	
			8	682-4	261.5	
			9	682-5	241.0	
			10	682-7	585.9	
			11	682-8	269.8	
			12	682-9	281.0	
			14	682-6	250.5	
	단 11	3,139.4	1	684-1	242.6	
			2	684-2	386.2	
			3	684-3	275.7	
			4	684-5	326.3	
			5	684-6	303.2	
			6	684-13	303.1	
			7	684-14	326.0	
			8	684-15	469.7	
			9	684-16	230.9	
			11	684-4	275.7	
	단 12	1,836.1	1	685-1	278.7	
			2	685-2	381.3	
			3	685-3	334.2	
			4	685-4	392.0	
			5	685-6	224.8	
			7	685-5	225.1	
	단 13	1,827.6	1	693-1	478.1	
			2	693-2	333.8	
			3	693-3	337.6	
			4	693-4	330.0	
			5	693-5	348.1	
	단 14	1,739.7	1	694-2	474.7	
			2	694-3	384.9	
			3	694-10	330.0	
			4	694-11	291.1	
			5	694-12	259.0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단 15	2,850.7	1	695-1	310.2	
			2	695-2	269.8	
			3	695-3	207.0	
			4	695-4	227.2	
			5	695-5	227.2	
			6	695-6	260.2	
			7	695-7	258.4	
			8	695-9	258.3	
			9	695-10	260.1	
			10	695-11	317.7	
			11	695-12	254.6	
	단 16	2,873.5	1	696-1	287.4	
			2	696-2	298.4	
			3	696-4	227.5	
			4	696-5	330.1	
			5	696-6	361.9	
			6	696-13	300.5	
			7	696-14	300.3	
			8	696-15	231.1	
			9	696-16	231.7	
			11	696-3	304.6	
	단 17	1,822.3	1	697-1	401.6	
			2	697-2	307.0	
			3	697-3	410.0	
			4	697-4	386.8	
			5	697-5	316.9	
	단 18	1,830.5	1	706-1	639.5	
			2	706-2	469.6	
			3	706-3	349.7	
			4	706-4	371.7	
	단 19	2,435.9	2	707-2	372.9	
			3	707-3	367.4	
			4	707-4	288.1	
			5	707-16	273.6	
			6	707-18	286.3	
			8	707-5	287.9	
			9	707-17	273.6	
			10	707-19	286.1	
	단 20	4,039.9	1	707-6	383.7	
			2	707-7	364.0	
			3	707-8	419.9	
			4	707-9	535.5	
			5	707-10	612.0	
			6	707-11	248.7	
			7	707-12	250.0	
			8	707-13	493.5	
			9	707-14	358.8	
			10	707-15	373.8	
	단 21	3,235.7	1	682-18	374.8	
			2	682-10	337.2	
			3	682-11	428.2	
			4	682-12	298.3	
			5	682-14	273.8	
			6	682-15	523.0	
			7	682-16	395.6	
			8	682-13	301.7	
			9	682-17	303.1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단 22	2,474.7	1	683-2	381.0	
			2	683-3	332.0	
			3	683-4	412.8	
			4	683-5	493.6	
			5	683-6	400.6	
			6	683-7	454.7	
	단 23	2,224.6	1	684-12	366.0	
			2	684-7	321.3	
			3	684-8	397.4	
			4	684-9	392.4	
			5	684-10	391.4	
			6	684-11	356.1	
	단 24	1,317.9	1	685-7	445.2	
			2	685-8	357.5	
			3	685-9	515.2	
	단 25	1,320.1	1	693-6	351.3	
			2	693-7	446.2	
			3	693-8	522.6	
	단 26	2,062.5	1	694-9	374.4	
			2	694-4	347.6	
			3	694-5	302.0	
			4	694-6	425.6	
			5	694-7	304.3	
			6	694-8	308.6	
	단 27	2,084.1	1	696-12	326.5	
			2	696-7	394.5	
			3	696-8	214.7	
			4	696-9	420.2	
			5	696-10	395.0	
			6	696-11	333.2	
	단 28	2,050.5	1	697-6	274.9	
			2	697-7	380.4	
			3	697-8	496.7	
			4	697-9	438.9	
			5	697-10	459.6	
	단 29	2,124.5	1	708-1	297.9	
			2	708-2	424.2	
			3	708-3	346.2	
			4	708-4	346.4	
			5	708-5	274.8	
			6	708-6	435.0	
	단 30	1,861.4	1	686-2	297.2	
			2	686-3	318.0	
			3	686-4	277.5	
			4	686-6	259.6	
			5	686-1	436.6	
			6	686-5	272.5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단 31	2,910.9	1	687-1	399.1	
			2	687-2	278.2	
			3	687-4	304.3	
			4	687-5	303.8	
			5	687-6	313.6	
			6	687-7	313.3	
			7	687-9	407.0	
			8	687-3	278.3	
			9	687-8	313.3	
	단 32	1,731.2	1	698-1	511.4	
			2	698-2	219.5	
			3	698-4	208.3	
			4	698-6	364.4	
			6	698-3	219.5	
			7	698-5	208.1	
	단 33	1,766.8	1	698-7	312.9	
			2	698-8	312.6	
			3	698-10	240.2	
			4	698-11	240.2	
			5	698-12	347.1	
			6	698-9	313.8	
	단 34	2,168.7	1	688-1	394.8	
			2	688-2	390.8	
			3	688-3	349.5	
			4	688-4	349.4	
			5	688-5	279.9	
			6	688-6	404.3	
	단 35	2,831.1	1	689-1	363.5	
			2	689-3	239.8	
			3	689-4	220.7	
			4	689-7	216.9	
			5	689-8	300.7	
			6	689-10	247.6	
			7	689-2	279.2	
			8	689-5	220.5	
			9	689-6	216.8	
			10	689-9	300.5	
			11	689-11	224.9	
	단 36	1,726.8	1	699-1	244.4	
			2	699-3	245.4	
			3	699-4	266.0	
			4	699-6	219.8	
			6	699-2	265.5	
			7	699-5	265.8	
			8	699-7	219.9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단 37	1,766.2	1	699-8	252.8	
			2	699-9	247.0	
			3	699-10	247.0	
			4	699-11	381.2	
			5	699-12	325.1	
			6	699-13	313.1	
	단 38	3,855.9	1	690-1	362.3	
			2	690-2	287.6	
			3	690-3	284.8	
			4	690-4	292.7	
			5	690-5	244.1	
			6	690-6	350.8	
			7	690-7	363.2	
			8	690-8	252.5	
			9	690-9	283.8	
			10	690-10	310.6	
			11	690-11	274.5	
			12	690-12	274.5	
			13	690-13	274.5	
	단 39	4,646.1	1	691-1	424.1	
			2	691-2	272.2	
			3	691-3	366.4	
			4	691-4	185.9	
			5	691-6	320.5	
			6	691-7	206.9	
			7	691-8	363.6	
			8	691-9	308.4	
			9	691-10	213.8	
			10	691-11	195.8	
			11	691-12	193.7	
			12	691-13	346.2	
			13	691-14	351.1	
			14	691-15	286.9	
			15	691-16	425.2	
			16	691-5	185.4	
	단 40	2,764.4	1	700-1	287.8	
			2	700-3	254.4	
			3	700-4	268.7	
			4	700-5	274.4	
			5	700-7	193.3	
			6	700-8	313.2	
			7	700-9	220.0	
			8	700-10	199.0	
			9	700-11	194.0	
			10	700-2	291.3	
			11	700-6	268.3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단 41	2,869.9	1	701-1	322.5	
			2	701-2	352.3	
			3	701-3	288.4	
			4	701-4	327.4	
			5	701-5	232.4	
			6	701-6	296.7	
			7	701-7	266.2	
			8	701-8	219.5	
			9	701-9	281.7	
			10	701-10	282.8	
	단 42	2,781.5	1	703-1	504.6	
			2	703-2	379.4	
			3	703-3	181.4	
			4	703-4	181.4	
			5	703-5	396.1	
			6	703-6	344.0	
			7	703-7	324.9	
			8	703-8	469.7	
	단 43	3,499.4	1	704-1	317.3	
			2	704-2	279.0	
			3	704-3	635.7	
			4	704-4	442.2	
			5	704-5	554.0	
			6	704-6	413.1	
			7	704-7	858.1	
	단 44	2,603.8	1	708-7	659.8	
			2	708-8	475.5	
			3	708-9	1,468.5	
	단 45	1,170.6	1	671-1	306.1	
			2	671-2	225.5	
			3	671-3	309.2	
			4	671-4	329.8	
	단 46	1,277.0	1	670-1	298.6	
			2	670-2	478.6	
			3	670-3	249.8	
			4	670-4	250.0	
	단 47	2,905.6	1	672-18	248.3	
			2	672-1	219.7	
			3	672-2	229.2	
			4	672-3	226.7	
			5	672-4	210.3	
			6	672-5	210.0	
			7	672-6	279.8	
			8	672-14	209.2	
			9	672-15	425.5	
			10	672-16	272.0	
			11	672-17	199.4	
			12	672-13	175.5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단 48	3,246.8	1	673-17	341.2	
			2	673-1	397.5	
			3	673-2	328.9	
			4	673-3	231.4	
			5	673-4	231.5	
			6	673-5	230.5	
			7	673-6	230.2	
			8	673-13	349.8	
			9	673-14	251.6	
			10	673-15	281.6	
			11	673-16	372.6	
	단 49	1,528.7	1	670-5	255.3	
			2	670-6	443.0	
			3	670-7	349.7	
			4	670-8	480.7	
	단 50	1,715.4	1	672-12	369.8	
			2	672-7	300.4	
			3	672-8	332.6	
			4	672-9	325.8	
			5	672-10	189.8	
			6	672-11	197.0	
	단 51	1,779.8	1	673-12	298.6	
			2	673-7	332.2	
			3	673-8	294.4	
			4	673-9	282.2	
			5	673-10	331.1	
			6	673-11	241.3	
	단 52	5,935.3	1	664-1	239.5	
			2	664-2	330.5	
			3	664-3	309.9	
			4	664-4	316.2	
			5	664-5	365.4	
			6	664-6	278.5	
			7	664-7	213.4	
			8	664-8	223.0	
			9	664-9	222.9	
			10	664-10	288.5	
			11	664-11	326.0	
			12	664-12	268.3	
			13	664-13	268.5	
			14	664-14	233.2	
			15	664-15	253.6	
			16	664-16	251.4	
			17	664-17	481.3	
			18	664-18	401.5	
			19	664-19	289.7	
			20	664-20	374.0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단 53	1,756.8	1	665-6	294.2	
			2	665-7	225.9	
			3	665-1	230.2	
			4	665-2	293.6	
			5	665-3	204.9	
			6	665-5	303.2	
			7	665-4	204.8	
	단 54	2,000.1	1	666-7	343.9	
			2	666-8	237.3	
			3	666-1	290.5	
			4	666-2	278.3	
			5	666-3	198.0	
			6	666-4	198.0	
			7	666-5	454.1	
	단 55	3,440.2	1	669-6	312.6	
			2	669-7	238.9	
			3	669-8	418.6	
			4	669-9	307.7	
			5	669-1	361.8	
			6	669-2	258.3	
			7	669-3	297.2	
			8	669-4	338.5	
			9	678-2	345.5	
			13	669-5	239.9	
			14	678-1	321.2	
	단 56	2,514.4	1	676-16	309.1	
			2	676-1	347.5	
			3	676-2	334.0	
			4	676-3	250.0	
			5	676-4	197.4	
			6	676-5	196.8	
			7	676-12	176.9	
			8	676-13	174.0	
			9	676-14	303.6	
			10	676-15	225.1	
	단 57	1,938.7	1	675-14	408.7	
			2	675-1	209.9	
			3	675-2	294.9	
			4	675-3	294.2	
			5	675-11	296.4	
			6	675-12	203.8	
			7	675-13	230.8	
	단 58	2,913.0	1	674-18	235.9	
			2	674-1	408.1	
			3	674-2	271.3	
			4	674-3	271.3	
			5	674-4	283.0	
			6	674-5	229.9	
			7	674-12	200.7	
			8	674-13	200.6	
			9	674-14	193.1	
			10	674-15	190.2	
			11	674-16	190.4	
			13	674-17	238.5	
	단 59	855.8	1	677-10	415.6	
			2	677-1	238.5	
			3	677-2	201.7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단 60	1,755.6	1	677-9	321.6	
			2	677-3	254.8	
			3	677-4	190.3	
			4	677-5	218.9	
			5	677-6	213.1	
			6	677-7	362.8	
			7	677-8	194.1	
	단 61	1,606.1	1	676-11	198.9	
			2	676-6	219.3	
			3	676-7	219.3	
			4	676-8	404.7	
			5	676-9	364.9	
			6	676-10	199.0	
	단 62	1,615.4	1	675-10	351.7	
			2	675-5	328.8	
			3	675-6	209.5	
			4	675-7	203.0	
			5	675-8	300.0	
			6	675-9	222.4	
	단 63	1,757.3	1	674-11	286.9	
			2	674-6	299.8	
			3	674-7	252.1	
			4	674-8	311.4	
			5	674-9	319.8	
			6	674-10	287.3	
	단 64	2,599.6	1	679-1	452.1	
			2	679-2	303.1	
			3	679-3	417.9	
			4	679-4	291.0	
			5	679-5	263.7	
			6	679-6	449.5	
			7	679-7	422.3	
	단 65	1,925.2	1	680-1	340.6	
			2	680-2	318.0	
			3	680-3	329.5	
			4	680-4	324.2	
			5	680-5	323.9	
			6	680-6	289.0	
	단 66	1,844.2	1	711-7	265.7	
			2	711-6	265.6	
			3	711-5	349.0	
			4	711-4	252.4	
			5	711-3	230.3	
			6	711-2	227.2	
			7	711-1	254.0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단 67	5,440.5	1	712-13	404.8	
			2	712-14	319.4	
			3	712-15	343.9	
			4	712-16	525.0	
			5	712-17	359.8	
			6	712-18	347.5	
			7	712-19	288.5	
			8	712-1	266.0	
			9	712-3	301.9	
			10	712-4	195.7	
			11	712-5	396.2	
			12	712-6	259.3	
			13	712-7	301.1	
			14	712-8	256.5	
			15	712-9	195.7	
			16	712-10	246.5	
			17	712-11	249.5	
			19	712-2	183.2	
	단 68	6,206.5	1	713-12	255.0	
			2	713-13	243.1	
			3	713-14	317.3	
			4	713-15	310.5	
			5	713-16	434.3	
			6	713-17	388.4	
			7	713-18	369.3	
			8	713-19	421.3	
			9	713-1	455.7	
			10	713-2	245.9	
			11	713-4	330.2	
			12	713-5	336.8	
			13	713-6	336.2	
			14	713-7	299.9	
			15	713-8	300.0	
			16	713-9	410.8	
			17	713-10	203.7	
			18	713-11	298.0	
			19	713-3	250.1	
	단 69	1,545.0	1	709-1	383.0	
			2	709-2	387.5	
			3	709-3	384.3	
			4	709-4	390.2	
	단 70	1,569.2	1	709-5	482.8	
			2	709-6	471.3	
			3	709-7	307.4	
			4	709-8	307.7	
	단 71	565.0	1	702	565.0	
	소 계	179,396.0	-	-	179,396.0	

6) 공동주택용지 획지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도면1	아 1	36,566.1	-	715-1	36,566.1	
	소계	36,566.1	-	-	36,566.1	

7) 준주거용지 획지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도면1	준 1	3,640.4	1	661-1	633.8	
			2	661-2	353.3	
			3	661-3	458.0	
			4	661-4	559.0	
			5	661-5	576.2	
			6	661-6	459.0	
			7	661-7	601.1	
	준 2	2,776.4	1	662-1	377.7	
			2	662-2	395.5	
			3	662-3	679.4	
			4	662-4	667.6	
			5	662-5	656.2	
	준 3	4,182.9	1	681-1	728.0	
			2	681-2	778.6	
			3	681-3	346.6	
			4	681-4	346.6	
			5	681-5	346.1	
			6	681-6	347.5	
			7	681-7	586.3	
			8	681-8	371.5	
			9	681-9	331.7	
	준 4	2,928.8	1	692-1	583.6	
			2	692-2	528.0	
			3	692-3	410.2	
			4	692-4	411.2	
			5	692-5	330.2	
			6	692-6	330.2	
			7	692-7	335.4	
	준 5	2,433.7	1	692-8	840.1	
			2	692-9	417.5	
			3	692-10	671.5	
			4	692-11	504.6	
	준 6	1,811.4	1	705-1	436.7	
			2	705-3	306.9	
			3	705-4	309.6	
			4	705-5	451.7	
			5	705-2	306.5	
	준 7	2,340.3	1	705-6	410.6	
			2	705-7	597.1	
			3	705-8	1,332.6	
	준 8	2,159.8	1	705-9	772.3	
			2	705-10	606.1	
			3	705-11	781.4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준 9	1,541.2	1	667-1	779.1	
			2	667-2	329.9	
			3	667-3	432.2	
	준 10	2,579.9	1	667-4	658.8	
			2	667-5	636.2	
			3	667-6	328.8	
			4	667-7	398.7	
			5	667-8	557.4	
	준 11	2,539.4	1	711-13	527.6	
			2	711-12	619.9	
			3	711-11	385.8	
			4	711-10	346.5	
			5	711-9	329.8	
			6	711-8	329.8	
	준 12	2,189.2	1	711-16	651.2	
			2	711-15	658.9	
			3	711-14	879.1	
	소 계	31,123.4	-	-	31,123.4	

8)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획지조서 :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도면1	공청1	26,726.3	-	663	26,726.3	
	공청3	6,162.8	-	668-1	6,162.8	
	소 계	32,889.1	-	-	32,889.1	
	주 1	743.9	-	712-12	743.9	
	주 2	903.0	-	666-6	903.0	
	주 3	1,178.3	-	655-8	1,178.3	
	주 4	857.4	-	707-1	857.4	
	주 5	902.8	-	658-5	902.8	
	주 6	1,131.5	-	694-1	1,131.5	
	주 7	671.0	-	675-4	671.0	
	주8	4,567.0	-	668-1	4,567.0	
	소 계	10,954.9	-	-	10,954.9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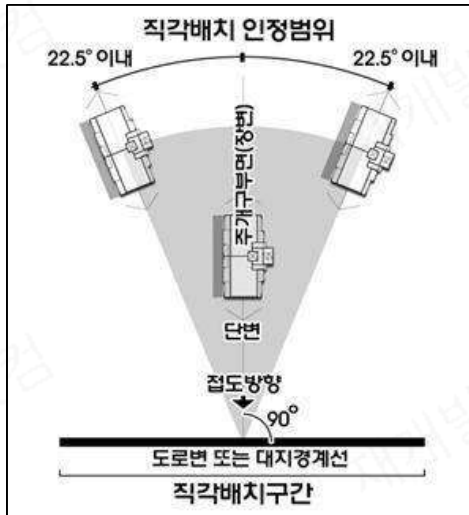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면1	단 17,18 28,29 43,44 64,65 66	용 도	R1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가목의 단독주택 - 다목의 다가구주택 중 3가구 이하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소매점(500㎡미만) - 나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300㎡미만) - 다목의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목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 마목의 탁구장 및 체육도장(500㎡미만) - 바목의 공공시설(바닥면적 1천㎡미만) - 사목의 마을회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일반음식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전면방향 : 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로 중 폭이 넓은 도로변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로12m이상 도로변(2m), 소로이하 도로변(1m)	결정도 참조
		기 타	-	
도면1	단 1, 2, 3 4, 5, 6 7, 8, 9 10,11,12, 13,14,15, 16,19,20, 21,22,23, 24,25,26, 27,30,31, 32,33,34, 35,36,37, 38,39,40, 41,42,45, 46,47,48, 49,50,51, 52,53,54, 55,56,57, 58,59,60, 61,62,63, 67,68,69, 70,71	용 도	R2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용도 - 가목의 소매점(500㎡미만) - 사목의 마을회관 ※ 준지된 건축물은 기승인 용도로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비주거용 지의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 하지 못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전면방향 : 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로 중 폭이 넓은 도로변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로12m이상 도로변(2m), 소로이하 도로변(1m)	
		색 채	-	
		기 타	-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면1	아1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200% 이하 • 허용용적률 220% 이하 ※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 신청시 허용용적률 적용	
		높 이	• 23층 이하	평균층수: 18층
		배 치	○ 대로3-14호선변 건물은 직각배치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구간 내 주동에 적용한다. - 직각배치 인정기준: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 (또는 주개구부면) 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pm 22.5^\circ$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단, 원형 또는 정방형은 직각배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판상형, 절곡형, 타원형 예시도>	결정도 참조
		형 태	• 경사지붕 (판상형) 또는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한 평지붕 (탑상형)	
		색 채	•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8m, 중로1-54호선 (3m), 대로3-14호선변 (8m)	결정도 참조
		기 타	• 세대수 변경없음 (개발기본계획의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에 따른다.)	



3) 준주거용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면1	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용 도 (RC) 기정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가목의 단독주택 (단 필지별 1가구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의 안마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다.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마. 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아.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자. 사진관·표구점·학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직업 훈련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동물병원·독서실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 영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다. 노래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라목 검사장, 마목 매매장, 바목 정비공장, 사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가목 야외음악당, 나목 야외극장, 다목 어린이회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금지시설	
		변경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가목의 단독주택 (단 필지별 1가구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의 안마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다.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마. 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사. 제조업소·수리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아.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무도학원·원격교습제외)·교습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 교습·무도교습·원격교습제외), 직업훈련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제외)·동물병원·독서실 카. 자동차 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다. 노래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1	공공 청사3	용 도	Z2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나.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면1	주1 ~ 주8	용 도	Z3	○ 허용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단, 골프장 제외),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불허용도 — 당해 용도지역내의 인접 유사용지의 불허용도 적용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		
		용적률	• 400%(용적률 전체를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만 사용시 450%)		
		높 이	• 최고층수 : 5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12m 이상 도로변 (2m), 소로이하 도로변 (1m)		
		기 타	• 차폐조경 : 인접 주택지(2m)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위치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면1	단1 ~ 단71	차량의 진출입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지침 내용 참조
		주차장 설치기준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평택시 주차장조례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며 기계식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옥외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자갈박기나 잔디 블록 등 친환경적 소재의 이용을 권장한다. - 단독주택의 개별차고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지 않으며, 주 건축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녹지로 조성한다. 다만 차량 진출입 및 보행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대지 내 조정 및 옥외마당	-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으며, 설치시 투시형(1.5m) 담장 설치를 권장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위치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면1	아1	차 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지침 내용 참조
		단지내 도 로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행자통로	단지 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등 보행유발 요소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공동주택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 포장은 잔디블록 등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5대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 단, 중로1-54호선변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지엽이 치밀하고 잎이 넓은 상록, 낙엽교목 군식으로 식재하며 주요 식재 수종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조성토록 한다.	

다. 준주거용지

도면위치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면1	준1 ~ 준12	보행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를 3cm 이하로 한다. -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30cm 전면에 점형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시행 지침 내용 참조
		차량 출입구	-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차량 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좁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준주거 용지내 부설주차장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도로에 접한 건축물 전면부에 배치를 금지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또는 벽면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녹지 또는 보도로 조성한다. 다만 차량 또는 보행자의 진출입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교차점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용지

도면위치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면1	주1~ 주8	차량출입구	-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 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 유효 폭을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시행 지침 내용 참조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총면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경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정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분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부분은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위치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도면1	공공 청사 1, 3	차량 출입구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 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청사, 주차장 등의 공공 및 기타시설 용지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 유효 폭을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주차장 등의 공공 및 기타시설 용지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주차장 등의 공공 및 기타시설 용지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행 지침 내용 참조
		주차장 설치기준	- 공공 및 기타시설 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공공 및 기타시설 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퍼센트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II.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당 초	변 경
제3장 준주거용지 제2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가. 일반음식점·기원 2.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3. 다.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4.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타 골프연습장(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5. 마. 공연장·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6.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7.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8. 아.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9. 자. 사진관·표구점·학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직업훈련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동물병원·독서실 10.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11. 타. 노래연습장	제3장 준주거용지 제2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다.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타 골프연습장(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마. 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사. 제조업소·수리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아.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무도학원·원격교습제외)·교습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교습·무도교습·원격교습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제외)·동물병원·독서실 카. 자동차 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타. 노래연습장

③ 신촌지구

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2	신촌지구	평택시 칠원동 559번지 일원	526,100.3	-	526,100.3	경고 제2009-89호 (2009.03.10)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6,100.3	-	526,100.3	100.0	
주거지역	소계	450,250.0	-	450,250.0	85.6	
	제1종일반주거지역	49,680.2	-	49,680.2	9.4	경기도고시 제2009-500호 (09.12.16)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569.8	-	400,569.8	76.2	
녹지지역	소계	75,850.3	-	75,850.3	14.4	
	자연녹지지역	75,850.3	-	75,850.3	14.4	경기도고시 제2009-500호 (09.12.16)

3.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가.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40	6,453	114,522.8	8	1,655	34,133.5	9	2,499	38,587.8	23	2,299	41,801.5
대로	2	1,851	38,482.2	-	-	-	-	-	-	2	1,851	38,482.2
중로	10	3,408	66,020.9	3	1,383	30,802.2	5	1,971	34,320.5	2	54	898.2
소로	28	1,194	10,019.7	5	272	3,331.3	4	528	4,267.3	19	394	2,421.1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	30~33	주간선 도로	5,721	칠원동13호광장	지산동29호광장	일반도로	평고152호 (72.8.23)	구역외
기정	대로	3	31	25	보조간선 도로	1,231	대로2-7호선	칠원동 534도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대로	3	15	25~30	주간선 도로	6,135 (620)	청룡동 산10-1도	지제동 983-1도 1호 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평고292호 (09.12.30)	
기정	중로	1	71	20	집산도로	372	대로3-31호선	칠원동 570도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중로	1	72	20	집산도로	776	완충녹지51호 (칠원동 572도)	중로1-71호선 (칠원동 572도)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중로	1	73	20	집산도로	235	대로3-31호선	중로1-72호선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중로	2	81	16	집산도로	221	대로3-31호선	중로1-72호선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중로	2	82	16	집산도로	1,099	중로1-72호선	중로1-71호선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중로	2	83	15	집산도로	246	중로1-72호선	중로2-82호선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중로	2	84	16	집산도로	179	대로3-31호선	중로1-72호선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중로	2	85	16	집산도로	226	중로1-72호선	중로2-82호선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7	중로2-84호선 (칠원동 404-31도)	소로3-538호선 (칠원동 404-31도)	일반도로	평고240호 (18.08.13)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27	중로2-85호선 (칠원동 367-12도)	소로3-539호선 (칠원동 367-12도)	일반도로	평고240호 (18.08.13)	
기정	소로	1	141	11	국지도로	127	중로1-72호선	중로1-73호선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소로	1	142	11	국지도로	127	중로1-72호선	중로1-73호선	일반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소로	1	143	11.9	국지도로	6	학교 62 (칠원동 579도)	중로 2-83호선 (칠원동 579도)	일반도로	평고263호 (15.9.25)	
기정	소로	1	144	11.9	국지도로	6	중로 2-83호선 (칠원동 586도)	학교 61 (칠원동 586도)	일반도로	평고263호 (15.9.25)	
기정	소로	1	145	10	국지도로	6	중로 2-85호선 (칠원동 598도)	학교 63 (칠원동 598도)	일반도로	평고263호 (15.9.25)	
기정	소로	2	651	8	특수도로	25	대로2-7호선	중로1-72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소로	2	652	8	특수도로	10	칠원동 616도	대로3-31호선 (칠원동 616도)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소로	2	653	8	국지도로	233	중로3-1호선 (칠원동 402도)	중로3-1호선 (칠원동 402도)	일반도로	평고240호 (18.08.13)	
기정	소로	2	654	8	국지도로	260	중로3-2호선 (칠원동 367-15도)	중로3-2호선 (칠원동 367-15도)	일반도로	평고240호 (18.08.13)	
기정	소로	3	401	6.5	특수도로	26	중로2-82호선	칠원동 607도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소로	3	402	6	특수도로	29	소로2-653호선 (칠원동 402-8도)	중로1-71호선 (칠원동 402-8도)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소로	3	403	6	특수도로	26	소로2-654호선 (칠원동 367-36도)	중로1-71호선 (칠원동 388-26도)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500호 (09.12.1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04	6.5	특수도로	25	중로1-71호선	칠원동 609도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500호 (09.12.16)	
기정	소로	3	405	6	특수도로	97	중로 2-85호선 (칠원동 600도)	중로 1-71호선 (칠원동 600도)	보행자 전용도로	평고263호 (15.9.25)	
기정	소로	3	406	6	특수도로	16	소로2-653호선 (칠원동 402-14도)	칠원동 402-14도	보행자 전용도로	평고240호 (18.08.13)	
기정	소로	3	407	6	특수도로	19	소로2-654호선 (칠원동 367-31도)	칠원동 367-31도	보행자 전용도로	평고240호 (18.08.13)	
기정	소로	3	538	6	특수도로	30	중로3-1호선 (칠원동 384-25도)	소로2-653호선 (칠원동 384-25도)	보행자 전용도로	평고240호 (18.08.13)	
기정	소로	3	539	6	특수도로	31	중로3-2호선 (칠원동 367-20도)	소로2-654호선 (칠원동 367-20도)	보행자 전용도로	평고240호 (18.08.13)	
기정	소로	3	545	6	국지도로	18	칠원동 566-9도	소로2-653호선 (칠원동 566-9도)	일반도로	평고122호 (20.03.23.)	
기정	소로	3	546	6	국지도로	9	칠원동 403-14도	소로2-653호선 (칠원동 403-14도)	일반도로	평고122호 (20.03.23.)	
기정	소로	3	547	6	국지도로	9	소로2-653호선 (칠원동 402-19도)	칠원동 402-19도	일반도로	평고122호 (20.03.23.)	
기정	소로	3	548	6	국지도로	9	소로2-653호선 (칠원동 402-15도)	칠원동 402-15도	일반도로	평고122호 (20.03.23.)	
기정	소로	3	549	6	국지도로	9	소로3-553호선 (칠원동 382-22도)	소로2-654호선 (칠원동 382-22도)	일반도로	평고122호 (20.03.23.)	
기정	소로	3	550	5	국지도로	9	소로3-554호선 (칠원동 387-14도)	소로2-654호선 (칠원동 387-14도)	일반도로	평고122호 (20.03.23.)	
기정	소로	3	551	6	국지도로	9	칠원동 368-12도	소로2-654호선 (칠원동 368-12도)	일반도로	평고122호 (20.03.23.)	
기정	소로	3	552	6	국지도로	8	칠원동 367-30도	소로2-654호선 (칠원동 367-30도)	일반도로	평고122호 (20.03.23.)	
기정	소로	3	553	6	특수도로	8	소로3-405호선 (칠원동 382-21도)	소로3-549호선 (칠원동 382-21도)	보행자 전용도로	평고122호 (20.03.23.)	
기정	소로	3	554	5	특수도로	7	소로3-405호선 (칠원동 387-13도)	소로3-550호선 (칠원동 387-13도)	보행자 전용도로	평고122호 (20.03.23.)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41	주차장	칠원동 546차	1,569.4	경고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42	주차장	칠원동 552차	1,570.6	경고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59	주차장	칠원동 384-22차	707.8	평고2018-240호 (2018.08.13)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광장 : 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1	광장	교통광장	칠원동 산51-5번지 일원	91,678.1	-	신촌지구 내 578.1㎡ 포함

나.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01	공원	신촌새말 근린공원	칠원동 589공	12,302.9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유수지2 포함
기정	102	공원	신촌쇠물뿌리 체육공원	칠원동 581공	10,873.3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유수지3 포함
기정	103	공원	신촌새마담 어린이공원	칠원동 543공	3,637.6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104	공원	신촌장자울 어린이공원	칠원동 551공	4,046.8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105	공원	신촌새빛 어린이공원	칠원동 393-3번지 일원	4,065.2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106	공원	신촌새봄 어린이공원	칠원동 388-4번지 일원	5,100.6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다.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1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536공	5,499.0	-	5,499.0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52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573공	18,181.3	-	18,181.3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53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608공	12,634.8	-	12,634.8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54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365-16답 일원	7,313.0	-	7,313.0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55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538공	2,006.7	-	2,006.7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56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558공	2,803.1	-	2,803.1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57	녹지	완충녹지	칠원동 566공	915.9	-	915.9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59	녹지	경관녹지	칠원동 562공	1,031.9	-	1,031.9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60	녹지	경관녹지	칠원동 592공	1,153.5	-	1,153.5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공지	칠원동 539공 일원	4,308.5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2	공공공지	칠원동 576공 일원	8,553.5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3	공공공지	칠원동 544공	367.1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4	공공공지	칠원동 553공	368.9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5	공공공지	칠원동 560공 일원	708.1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6	공공공지	칠원동 563공 일원	1,826.1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7	공공공지	칠원동 585공 일원	2,902.4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8	공공공지	칠원동 593공 일원	3,543.8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9	공공공지	칠원동 568공 일원	1,449.2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10	공공공지	칠원동 567공	588.8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11	공공공지	칠원동 596공 일원	2,158.5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12	공공공지	칠원동 603공 일원	1,399.5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시설 :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수도공급설비	칠원동 566공	29.9	-	29.9	경고 제2019-154호 (2019.05)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61	학교	초등학교	칠원동 588학	13,192.3	경고 2009-500호 (2009.12.16)	
기정	62	학교	중학교	칠원동 578학	12,272.0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기정	63	학교	유치원	칠원동 597학	3,401.5	경고 제2015-263호 (2015.09.25)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1	공공청사	-	칠원동 545대	1,511.4	경고 2009-500호 (2009.12.16)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가. 유수지 :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칠원동 582유	3,517.8	경고 2009-500호 (2009.12.16)	체육공원 102 중복결정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칠원동 590유	4,390.5	경고 제2009-500호 (2009.12.16)	근린공원 101 중복결정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위 치	획지면적(m ²)	비고
R1	R1	3,933.9	합계	3,933.9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하여 150m ² 이상으로 분할가능
			①	303.7	
			②	276.2	
			③	276.3	
			④	260.5	
			⑤	260.1	
			⑥	276.2	
			⑦	294.4	
			⑧	296.6	
			⑨	298.1	
			⑩	295.3	
			⑪	296.2	
			⑫	251.4	
			⑬	273.2	
			⑭	275.7	
R2	R2	12,605.0	합계	12,605.0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하여 150m ² 이상으로 분할가능
			①	462.7	
			②	387.5	
			③	300.8	
			④	283.6	
			⑤	227.2	
			⑥	227.3	
			⑦	227.3	
			⑧	227.3	
			⑨	254.3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위 치	획지면적(m ²)	비 고
			⑩	254.4	
			⑪	261.9	
			⑫	262.0	
			⑬	262.4	
			⑭	262.4	
			⑮	221.0	
			⑯	217.8	
			⑰	217.7	
			⑱	217.7	
			⑲	217.8	
			㉔	276.7	
			㉕	276.3	
			㉖	398.0	
			㉗	301.4	
			㉘	297.9	
			㉙	298.9	
			㉚	265.6	
			㉛	261.5	
			㉜	261.4	
			㉝	260.9	
			㉞	279.4	
			㉟	238.1	
			㊱	266.8	
			㊲	254.7	
			㊳	258.0	
			㊴	252.0	
			㊵	284.8	
			㊶	291.5	
			㊷	276.3	
			㊸	281.2	
			㊹	274.5	
			㊺	274.4	
			㊻	274.3	
			㊼	274.5	
			㊽	286.8	
			㊾	286.6	
			㊿	359.4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위 치	획지면적(m ²)	비 고
A1	A1	42,389.0	A1	42,389.0	
A2	A2	49,825.0	A2	49,825.0	
A3	A3	53,773.2	A3	53,773.2	
A4	A4	44,349.6	A4	44,349.6	
A5	A5	41,935.6	A5	41,935.6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위 치	획지면적(m ²)	비 고
D1	D1	3,342.0	①	1,705.0	
			②	1,637.0	
D2	D2	3,342.0	①	1,642.7	
			②	1,699.3	

4)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가. 학교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획지면적(㎡)	비고
초1	초1	13,192.3	초1	13,192.3	
중1	중1	12,272.0	중1	12,272.0	
유1	유1	3,401.5	유1	3,401.5	

나.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획지면적(㎡)	비고
공1	공1	1,511.4	공1	1,511.4	-

다.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획지면적(㎡)	비고
종1	종1	1,509.4	종1	1,509.4	-

라.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획지면적(㎡)	비고
P1	P1	1,569.4	P1	1,569.4	-
P2	P2	1,570.6	P2	1,570.6	-
P3	P3	707.8	P3	707.8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R1 ~ R2	R1 ~ R2	용 도	■ R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지하층 주거용도 사용제한 및 옥상 다락방 설치제한)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일반업무시설 ※ 단,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만 허용 ■ R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지하층 주거용도 사용제한 및 옥상 다락방 설치제한)	-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80% 이하	-
		높 이	○ 최고 : 4층이하 ○ 최저 : -	-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 2m ○ 소로(보행자도로 포함) 및 공공공지, 완충녹지변 : 1m	결정도 참조
		배 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 권장	-
		형태 및 외관 등		○ 지붕의 형태 - 인접 건축물 지붕의 경사여부, 경사방향, 경사도를 고려하여 계획(단, 경사지붕 적용 시 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내에서 설치) -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 옥상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고 옥상녹화를 권장 - 옥상의 계단실, 실외기, 물탱크 등의 노출 설비는 자연소재의 가림막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차폐 ○ 외벽 -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권장 - 외벽재료는 자연재 사용을 권장하며 발코니, 창문 등의 개성적 처리로 변화감 유도 ○ 담장 또는 울타리 - 주택간 경계구분을 위한 담장 설치를 불허하며, 필요한 경우 0.6m 이하의 생울타리, 목책 등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권장 - 중로2~84, 중로2~85호선변 담장 및 대문 설치시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
		색 채		○ 외벽·지붕 : - 시각적 지루함을 피하기 위하여 각 호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동일계열 색상으로 유도 - 도장색채를 절제하고 소재, 질감의 차이에서 오는 변화감 추구 권장 - 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의 색상은 외벽의 유사색 범위 내에서 적용 ○ 담장 : 건물 외장색과 동일하거나 돌출되지 않는 색 권장	-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 A5	A1 ~ A5	용 도	허용용도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마을공동구관장, 건강보험공단사무소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제과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마을공동구관장, 건강보험공단사무소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제과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교습소	-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권장용도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상한용적률 : 200% 이하.	-
		높 이	○ 최고 : 27층 이하 ○ 최저 : -	-
		건축선	○ 소로1-141, 1-142호선변 : 6m ○ 103, 104, 105, 106호 어린이공원변 : 6m ○ 102호 체육공원 및 101호 근린공원변 : 6m ○ 54호 완충녹지변 - 국도 45호선 우회도로 인접구간 : 20m - 105호 및 106호 어린이공원변 : 6m - 대로3-31호선 인접구간 : 6m ○ 55, 56호 완충녹지변 : 6m ○ 1, 2, 3, 4, 5, 6, 7, 8호 공공공지변 : 6m ○ 초등학교 및 중학교변 : 6m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여 적용함	결정도 참조
		배 치	○ ㄷ자 및 ㄱ자 형태의 클러스터 및 일체형 배치는 가급적 지양 ○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열린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탑상형 아파트' 배치 권장	-
		형태 및 외관 등	○ 지붕 및 옥탑 - 아치형 또는 파라펫 형태의 옥탑과 조화되는 지붕설치 권장 ○ 1동의 길이 : 4호 연립 이내로 설치 ○ 부대복리시설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경사지붕 설치 권장 -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제외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구조물에 의한 담장 설치 불허 (단,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허구간 길이의 50% 이내 구간에서 0.5m 이하의 생울타리 설치 가능) - 공원녹지 및 보행통로와 면한 구간 중 담장설치불허구간 이외 구간은 1.2m 이하의 생울타리 및 목책 등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 다양한 디자인과 환경성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결과에 의거 조성	-
		색 채	○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저층부 색채로 구분 - 랜드마크 기능 및 단지 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색 사용 지양, 저채도 위주의 차분한 색조 계열사용 - 주조색 : 위압감이 들지 않도록 밝은高明도의 색상을 사용하고 주변 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돌출이 적은 저채도의 색상 권장 - 보조색 : 주조색이 차지하는 거대면적을 적절히 분절하여 입체감을 주고 위압감을 해소하는 역할로 주조색보다 한두단계 어두운 중명도의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과 차별될 수 있도록 중채도의 색상 사용 권장 - 강조색 : 건축물의 엑센트가 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역할로 무채색을 사용하고 명도는 중명도를 적용하여 조화되도록 권장 - 저층부 색채는 다른 색채와 조화될 수 있도록 동일계열 색상을 사용하고 저층부의 무게감을 강조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중명도 색상 사용권장	-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D1 ~ D2	D1 ~ D2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실내), 놀이형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수리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자동차영업소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놀이형시설, 체육관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권장용도	○ 1, 2층 권장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250% 이하	-
		높 이		○ 최고 : 5층 이하 ○ 최저 :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1-72, 1-73호선변 : 2m ○ 소로1-141, 1-142호선변 : 2m ○ 획지경계선 양측변 : 2m	결정도 참조
		배 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권장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단, 보행자전용도로를 접한 필지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전면으로 할 수 있음)	-
		형태 및 외관 등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의 구배는 4/10 이상 - 경사지붕 설치 시 계단실, 물탱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옥탑구조물과의 조화 고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 재료로 건축 권장 ○ 중로 1-72호선, 1-73호선변에 접한 1층부는 벽 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투시형 서터 설치 권장 ○ 1층에 여러개 점포가 있는 경우 점포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1개소로 설치 ○ 건축물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인접보도와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건축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 등 획지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 불허	-
		색 채		○ 외벽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권장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중 택일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 강조색 :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변화를 창출	-

4)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가. 학교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초1 중1 유1	초1 중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 이		○ 5층 이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배 치		○ 남향배치 권장	-
		형태 및 외관 등		○ 외벽 :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설치 불허구간 지정(공동주택용지변) - 담장 또는 울타리 등 획지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운동장 인접 구간은) 안전망 설치 권장	-
		색 채		-	-
	유 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80% 이하	-
		높이		○ 최고 : 3층 이하 ○ 최저 :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배 치		○ 남향배치 권장	-
		형태 및 외관 등		○ 외벽 :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 등 획지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색 채		-	-

나.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1	공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용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 이	○ 최고 : 5층이하 ○ 최저 :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1-73호선변 : 2m ○ 3호 공공공지변 : 2m	결정도 참조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형태 및 외관 등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가능한 한 옥상조경 등을 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외벽 :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조성	-
		색 채		○ 외벽 : 원색 금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 담장 : 건물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 사용	-

다.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종1	종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 이		○ 최고 : 5층이하 ○ 최저 :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1-73호선변 : 2m ○ 4호 공공공지변 : 2m	결정도 참조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형태 및 외관 등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가능한 한 옥상조경 등을 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건축물 외벽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 어린이공원변 담장설치불허구간 지정 - 가급적 담장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
		색 채		○ 외벽 : 원색 금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그래픽, 현란한 색채 등의 사용 금지) ○ 담장 : 건물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 사용	-

라.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1 ~ P3	P1 ~ P3	용도	허용용도	■ P1, P2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 다만, 건축연면적 30% 미만에 한해 타용도 사용가능 -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에 한함) ■ P3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 다만, 건축연면적 30% 미만에 한해 타용도 사용가능 -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일반업무시설))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P1 ,P2 : 350% 이하 ○ P3 : 280% 이하	-	
		높 이	최고층수	○ P1 ,P2 : 5층 이하 ○ P3 : 4층 이하	-	
			최저층수	-	-	
		건축선	건축한계선	○ P1,P2 - 중로1-73호선변 : 2m - 소로1-141, 1-142호선변 : 2m - 3, 4호 공공공지변 : 2m ○ P3 - 일반도로변 : 1m	결정도 참조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형태 및 외관 등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설치 권장	-	
		색 채		-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R1 ~ R2	R1 ~ R2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라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공지 : 보도로 조성하여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 설치 및 적치 금지 - 인접한 전면보도와 높이를 동일하게 조성 ○ 대지안의 조경 - 건축한계선을 제외한 부지에 조경 설치(5㎡ 이상)	결정도 참조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 A5	A1 ~ A5	○ 전면공지 -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공원, 근린공원변 전면공지 :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 설치 및 적치 금지 - 1~8호 공공공지변 전면공지 : : 인접 공공공지와 동일하게 이용가능도록 보행, 휴식공간을 포함한 완충 및 경관기능의 조경녹지대로 조성 : 단지 진출입구 및 보행공간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 차량동선 교차구간은 보행·자전거 우선통행 원칙 : 차량속도저감을 고려한 포장재료 선정 - 소로 1-141, 1-142호선변 전면공지 :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접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 설치 및 적치 금지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전면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 - 54~57호 완충녹지변 전면공지 : 식재하여 완충 및 경관기능의 조경녹지대로 조성 - 103~106호 어린이공원변 전면공지 :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인접 어린이공원과 단지내 조경이 집적할 수 있도록 유도 ※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승인권자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 ○ 공공조경 - 「건축법」 제42조의 규정 및 「평택시 건축조례」 적용 - 단지 주요결절부의 인접 공원 및 녹지와 연계 조성하여 대중이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 - 최소 1,000㎡이상 규모로 인접한 공원 및 녹지, 대지안의 조경과 연계하여 조성토록 권장 - 「평택시 건축조례」 상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 준수	결정도 참조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D1 ~ D2	D1 ~ D2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 : 보도로 조성하여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 설치 및 적치 금지 - 인접한 전면보도와 높이를 동일하게 조성 ○ 대지안의 조경 -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조성 - 인접대지의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과 연계조성토록 권장 ○ 공개공지 - 「건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조성하며 「평택시 건축조례」 의 조성 방식 및 식재기준 적용 -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또는 인접 대지의 공개공지 등과 연결하여 최소 45㎡ 이상 규모로 조성	결정도 참조

라.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1 종1 P1~P3	공1 종1 P1~P3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 : 보도로 조성하여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 설치 및 적치 금지 - 인접한 전면보도와 높이를 동일하게 조성	결정도 참조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R1 ~ R2	R1 ~ R2	○ 주차장 설치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최소 1세대당 1대이상 확보 - 주차면은 잔디 또는 지피식물 식재 권장 ○ 차량진·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은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설치가능	결정도 참조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 A5	A1 ~ A5	○ 주차장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관련 법령, 「평택시 주차장 조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 설치 - 지상에 주차장 설치시 주차면에 잔디 또는 지피식물의 식재를 권장 ○ 차량진·출입구 -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단지출입구 인접에 설치하여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부분을 최소화하고 보행우주의 단지로 조성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상 지정된 차량출입구에 한해 설치 가능 - 단지 내 차량진·출입구는 단지의외곽부와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 교차로 설치 - 두개의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 가급적 진출입구의 위치가 일치하도록 설치 - 단지의 경계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 진출입구 설치 권장 ○ 단지 내 차량동선 - 단지 내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로우선구조'로 조성 - 교차구간에는 보차동선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통안전시설(험프 또는 범프 등)을 설치 - 교차구간에 대한 세부계획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변경 가능 ○ 단지 내 보행자통로 - 단지 외곽부 공공공지와 연계되도록 조성 - 인접한 open space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로 바닥 포장 - 보행자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소 6m 이상 이격하여 보행안전성 확보 - 보행자통로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상응하는 기능과 구조 포장 및 가로시설물을 조성하도록 하며 보행자통로 폭은 최소 3m 이상으로 계획	결정도 참조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D1 ~ D2	D1 ~ D2	○ 주차장 설치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 배치를 권장 - 인접한 필지와와의 공동주차장 및 공동주차통로 설치 권장 ○ 차량진·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교차로 각각부 차량진출입 불허) -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인접한 2개의 필지 중앙에 공동주차출입구 설치 권장	결정도 참조

라.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초1, 중1 유1, 공1 종1, P1~P3	초1, 중1 유1, 공1 종1, P1~P3	○ 주차장 설치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배치 권장 - 주차장용지 옥상층에 주차장 설치 권장 ○ 차량 진·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교차로 각각부 차량진출입 불허) -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다만, 비상시 차량출입이 요구되는 소방파출소 등은 결정도의 범위에서 전면출입 허용 - 인접한 공공청사는 2개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 확보를 권장(단,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경우는 예외) -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출입구로부터 20m 구간은 차량진·출입구 설치 규제 - 교차로 각각부, 가감속차로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규제	결정도 참조

3)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스카이라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적용기준
구역 전체	○ 지표동의 설치로 주변의 인공적인 경관형성에 있어서 방향성 및 중심성 확보 ○ 인접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듬감 있는 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 ○ 단지내 통경축 확보 및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붕과 옥탑부를 계획하여 개성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리듬감을 가지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단지내 연결한 아파트 동간에 층고변화를 주고 슬라브 형태의 지붕 지양

나. 주요 경관축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적용기준
도로축 경관	중심가로 (중로1-73, 2-83호선변)	○ 도로변 공공공지 및 공원을 연계 활용하여 중심 수립경관축이 형성되도록 계획 ○ 상업 건축물은 신촌지구의 중심공간으로의 식별성을 증가시키고 랜드마크적 기능 수행 부여 ○ 중심가로의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가로시설물 배치
	생활가로 (중로1-72 호선변)	○ 동서를 잇는 생활중심축으로 자연조망의 경관 및 인공적 요소가 가미된 경관 형성 ○ 공공공지를 활용한 양호한 보행환경 확보 및 가로경관 창출 ○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도로변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에 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독창적인 인공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경관 조성
녹지축 경관		○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과 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연계하여 녹지축 형성 ○ 신촌지구내 랜드마크로서의 경관 초점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공원의 상징성 확보 ○ 녹지축으로의 접근 및 연결을 위한 공공공지와 단지내 보행동선 연계체계 구축 ○ 단지내 통경축 및 조망축과 녹지축 확보 ○ 기존 수계를 고려한 단지내 수경 공간 조성 ○ 공공공지와 단지내 조경시설을 인접하여 조성하고 공동주택을 이격 배치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 형성

4)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적용기준
가로 시설물	재질	○ 시설물의 재질은 자연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사용하고 이와 함께 AL알루미늄 BAR, 강화유리, SUS PIPE, 방부목 등을 사용
	형태	○ 형태의 연출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안내체계와 일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크기	○ 보행도로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배치	○ 가로의 기능 및 이용자 형태 분석을 통해 가로공간의 유형을 분류, 각 가로공간 성격에 맞게 가로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밀도를 조절하여 실제 적용시 효율적인 가로시설물 배치
안내 체계	재질	○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레스 스틸 등을 사용하여 특색 있게 제작
	형태	○ 형태의 연출은 일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 가급적 단순한 것이 좋으며, 수록되는 정보에 따라 위계를 갖고 반복함으로써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조성 ○ 유도표지시설은 형태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위치시키고 심미적인 형태로 설계하여 장식적 효과를 얻도록 유도
	크기	○ 안내표지시설의 주요내용의 표기위치는 서있는 사람의 눈 높이 정도로 유도 ○ 보행자도로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 ○ 안내표지시설을 설치하는 높이는 가급적 서로 동일하게 조성
	표현	○ 명시도가 높은 서체, 색채를 사용, 의미전달이 분명히 되도록 표현 ○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그림문자(Pictogram)를 병행 사용 ○ 표현내용에 있어 단순한 정보만을 표현하고 복잡한 정보전달은 지양
	색채	○ 가시성이 좋은 색을 조합하여 사용하되 배색 효과에 유의하도록 하며, 가능한 각 안내표지시설의 색은 통일
	배치	○ 안내표지시설은 보행결절부에 주 도로변에는 유도사인파 단지 종합안내, 주요 시설의 입구에는 종합안내와 소재안내를 설치 ○ 이동하는 이용자에 대한 안내 내용일 때에는 정보를 읽고 대비하기에 충분한 거리에 배치 ○ 다른 구조물이나 나무들에 의해서 가려져서는 안되며, 가로수로 인하여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 ○ 안내표지시설이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도록 가로등 불빛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되, 불가능한 경우 적정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

5)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적용기준
I. 위치 및 면적	○ 위치 : 평택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칠원동 533번지 일원) ○ 면적 : 528,794.3㎡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 포함)} ※ 공동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포함
II.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설치함. 1. 광고물의 수량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써 3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광고물 2. 연립 지주이용광고물 및 건물 최상단에 표시하는 광고물 2.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추가 제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색상과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주변의 건물이나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순도가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고,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옥상광고물 및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게시대·게시판)은 설치·표시 금지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도로에 현수막게시시설(자동식)은 협의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1층에 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범위 이내로 광고 내용을 표시한다. · 네온·전광판 등의 표시, 설치금지. 다만, 가로형(문자 주각형) 간판은 예외로 하되, 점멸방식은 금지 · 세로형간판은 설치금지 하되, 건물의 주출입구 좌·우 벽면을 이용한 현판은 제외 3. 광고물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가로형광고물 · 가로형광고물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문자 주각형(입체형)으로 5층 까지 설치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 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1층에 한하여 광고판을 활용한 문자주각형은 가능하나 광고판에 내부 조명기구 설치하는 불가 하고, 2~5층의 경우 벽면보호 및 광고물 고정을 위한 바 형태의 지지대(비조명)를 높이 50cm 이하로 설치 가능함.) · 건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단,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 가능) ○ 돌출광고물 · 광고물의 세로길이는 4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동일한 층수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수를 감안하여 상·하 균형 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건물의 전면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전면 폭이 1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면의 가장 우측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광고물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4층이상 건물에 한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 (중합 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설치할 수 있다.

구 분	적용기준
	· 광고물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미터 이내로, 가로폭은 1.5미터 이내로 총 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형태는 일면형 또는 이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 미관향상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원색도안,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현수막(접철식)게시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도로 구간에 평택시 현수막게시시설 표준안에 맞는 자동식 게시시설을 신설한다.
Ⅲ.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 이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은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주)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당 초	변 경
제3장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제20조 (건축물의 용도)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불허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건강보험공단사무소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제과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수리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제3장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제20조 (건축물의 용도)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불허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건강보험공단사무소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제과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교습소

4 안정지구

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안정지구	안정리 360번지 일원	93,711.1	-	93,711.1	-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3,711.1	-	93,711.1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8,589.3	-	78,589.3	8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준주거지역	6,738.0	-	6,738.0	7.2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383.8	-	8,383.8	8.9	-

3.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가.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9	4,010 (635)	14,555.4	-	-	-	2	2,017 (490)	9,918.2	7	1,993 (145)	4,637.2
대로	1	1,597 (100)	257.9	-	-	-	-	-	-	1	1,597 (100)	257.9
중로	5	2,346 (535)	14,085.4	-	-	-	2	2,017 (490)	9,918.2	3	329 (45)	4,167.2
소로	3	67	212.1	-	-	-	-	-	-	3	67	212.1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	25 ~28	주간선 도로	1,597 (100)	남사구역계 산60-1임	안정리구역계 산38-1임	일반 도로	-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
기정	중로	2	1	15 ~18	보조 간선 도로	1,527 (490)	안정리128-8도 1호광장	안정리58-1답 대로3-3	일반 도로	-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
기정	중로	2	9	15	집산 도로	490	안정리41-470전 중로3-4	안정리13-7답 중로3-3	일반 도로	-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
기정	중로	3	4	12 ~15	집산 도로	460 (45)	안정리 대로3-1호선	안정리 중로2-1호선	일반 도로	-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
기정	중로	3	11	12 ~14	국지 도로	132	안정리65-5답 어린이공원15	안정리46-2전 중로2-9	일반 도로	-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
기정	중로	3	12	12	국지 도로	197	안정리44-1답 중로3-11	안정리48-12대 중로3-11	일반 도로	-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
기정	소로	3	105	3	특수 도로	31	안정리41-468대 중로3-4	안정리45-4전 중로3-12	보행자 도로	-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
기정	소로	3	106	5	특수 도로	5	안정리산30-3임 중로2-1	안정리산90-3임 공동주택	보행자 도로	-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
기정	소로	3	107	3	특수 도로	31	안정리42답 중로3-4	안정리44-2답 중로3-12	보행자 도로	-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

주) 면적은 구역내 포함됨 면적이며, 연장중 ()안은 구역내 포함된 연장임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주차장	안정리 369-5번지	687.0	-	687.0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5	제15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안정리 362번지	4,858.3	-	4,858.3	평택시고시 제2010-211 (2010.12.09)	

나.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16.1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안정리 354번지	466.6	-	466.6	평택시고시 제2010-211호 (2010.12.09.)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안정리 355번지	365.2	-	365.2	평택시고시 제2010-211호 (2010.12.09.)	-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안정리 357번지	831.7	-	831.7	평택시고시 제2010-211호 (2010.12.09.)	-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안정리 358번지	1,652.6	-	1,652.6	평택시고시 제2010-211호 (2010.12.09.)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²)	
A1	A1	62,1205.0	A1	62,105.0	공동주택용지는 가구단위로 원칙적으로 분할을 불허함 (단, 「주택법」 제2조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예외이며, 집단체비지 지정을 위한 분할은 환지계획을 따르고 이 경우 분할된 공동주택용지는 공동개발이 가능함

2)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²)	
소계	2개 가구	5120.1		5,120.1	
B1	B1	3113.0	①	442.0	준주거용지의 필지분할은 환지계획을 따르되 아래 항목을 준수함 - 필지의 규모는 250m ² 이상으로 함 - 환지계획으로 결정된 필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승인권자(건축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환지계획에 의해 분할된 필지의 합병을 허용하며, 합병시 각 대지에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함
			②	442.0	
			③	442.0	
			④	442.0	
			⑤	442.0	
			⑥	526.2	
			⑦	376.8	
B2	B2	2007.1	①	1,119.0	
			②	354.6	
			③	533.5	
			④	-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²)	
C1	C1	3,069.2	①	442.0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분할은 환지계획을 따르되 아래 항목을 준수함 - 필지의 규모는 250m ² 이상으로 함 - 환지계획으로 결정된 필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 승인권자 (건축 허가권자) 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환지계획에 의해 분할된 필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합병시 각 대지에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함
			②	442.0	
			③	442.0	
			④	442.0	
			⑤	442.0	
			⑥	526.2	
			⑦	376.8	
			⑧	285.2	
			⑨	290.0	

4)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가. 주차장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²)	
4	-	687	-	687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용 도	허용용도	기정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마을공동구관장, 지역건강보험조합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제과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불당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수리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
			변경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마을공동구관장, 건강보험공단사무소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제과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불당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교습소
		불 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상한 2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15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결정도 참조) - 대로3-3호선 : 4m - 중로2-1호선 : 4m - 중로2-9호선, 중로3-11호선 : 4m
	배 치	• 주변 녹지 및 어린이 공원의 연계성을 고려 • 단지 내 보행 및 녹지축을 형성 •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열린 시야를 제공 • 단지 내 출입구는 보행자와 출입을 분리하는 방안 권장
	형 태	• 지붕 및 옥탑 - 파라펫 형태의 옥탑과 조화되는 지붕설치 권장 • 주동의 길이는 5호 연립 이내 또는 주동길이 50m 이내 • 부대복리시설은 주동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설치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는 구조물에 의한 담장 설치 불허(단,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0.6m이하의 생울타리 설치 가능) - 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공원·녹지 및 보행통로와 면한 구간 중 담장설치불허구간이외 구간은 1.0m 이하의 낮은 담장이나 생울타리 및 목책 등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지붕색, 강조색으로 구분 - 랜드마크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색 사용 지양,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 - 주조색 : 밝은 색으로 하되 2차색 이내의 혼합색 사용, 채도 4미만의 색 권장 - 보조색 : 2가지 이내로 하되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으로 채도 6정도의 색 권장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 사용 권장 - 지붕의 색과 담장은 동일계통 색채 권장
	기타	• 평택시 경관 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준용

2)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B2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의 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도매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15층 이하
	불 허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결정도 참조) - 중로3-12호선 : 1m - 중로3-4호선, 중로2-9호선 : 2m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 재료로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 1층에 여러개 점포가 있는 경우 점포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1개소로 설치 1층 바닥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건축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이상, 7/10 이하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옥탑구조물과의 조화 고려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 등 획지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은 가능한 설치를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
	색 채	- 외벽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권장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중 택일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 강조색 :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변화를 창출
	기타	- 평택시 경관 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준용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용 도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결정도 참조) - 중로3-11호선, 중로3-12호선 : 1m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 재료로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 1층에 여러개 점포가 있는 경우 점포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1개소로 설치 1층 바닥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건축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이상, 7/10 이하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옥탑구조물과의 조화 고려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 등 획지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은 가능한 설치를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
	색 채		- 외벽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권장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중 택일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 강조색 :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변화를 창출
	기타		- 평택시 경관 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준용

4) 기타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차장4	용 도	허 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장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하며, 옥외골프연습장은 제외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결정도 참조) - 중로3-12호선 : 1m 이상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설치시 높이 1.2m이하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설치	
	색 채		-	
	기타		- 평택시 경관 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준용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A1	대지내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조정시설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 설치 및 적치금지 (조정시설은 예외)

나.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B1,B2	대지내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조정시설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 설치 및 적치금지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전면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 - 대지안의 조정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조성 - 인접대지의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과 연계조성토록 권장 - 공개공지 「건축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조성 -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도는 인접 대지의 공개공지 등과 연결하여 최소 45m'이상 규모로 조성 「평택시 관련조례」의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 적용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1	대지내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조정시설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 설치 및 적치금지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전면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 • 대지안의 조정 -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조성 - 인접대지의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과 연계조성토록 권장 • 공개공지 - 「건축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조성 -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도는 인접 대지의 공개공지 등과 연결하여 최소 45m²이상 규모로 조성 - 「평택시 관련조례」의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 적용

라.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4	대지내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접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 설치 및 적치금지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전면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A1	교통처리	• 교통처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함 • 차량진·출입구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차량진출입구가 지정된 위치에 차량출입구 설치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관련 법령, 「평택시 주차장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 설치 - 단지내 주차장은 계획 주차산정대수의 80%이상을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 주차는 비상용, 장애자용주차에 한해 허용 - 지상에 주차장 설치시 주차면에 잔디 또는 지피식물의 식재를 권장

나.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B1,B2	교통처리	• 차량진·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함 -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C1	교통처리	- 차량진·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 -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다만, 비상시 차량출입이 요구되는 소방/파출소 등은 결정도의 범위에서 전면출입 허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와 면한 경우 그 폭은 7m를 초과할 수 없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라.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4	교통처리	- 차량진·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 -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다만, 비상시 차량출입이 요구되는 소방/파출소 등은 결정도의 범위에서 전면출입 허용 - 차량출·입구 분리 설치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변경없음(계재생략)

II.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당 초	변 경
제2장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제7조 (건축물의 용도) ② 필지에 지정되는 기호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으며 불허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마을공동구관장, 지역건강보험조합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제과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 출판사, 수리점, 세탁소 , 사진관, 표구점, 학원	제2장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제7조 (건축물의 용도) ② 필지에 지정되는 기호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으며 불허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파트 및 부대시설 ○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체육도장,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마을공동구관장, 건강보험공단사무소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제과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 출판사,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교습소

5 안정리로데오거리

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안정리 로데오거리	팽성읍 안정리 112-1 일원 (로데오거리 일원)	46,765	-	46,765	-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6,765	-	46,765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765	-	46,765	100.0	

3.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가.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3	1,600 (51)	9,330	2	539	6,532	7	871 (51)	1,888	4	190	1,648
중로	1	83	963	-	-	-	-	-	-	1	83	963
소로	12	1,517 (54)	9,105	2	539	6,532	7	871 (51)	1,888	3	107	685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470 (83)	안정리 169-1 대로 3-1	안정리 115-6 중로2-1	일반 도로	-	경고 제94-83호 (‘94.04.04)	
기정	소로	1	101	12	특수 도로	323	안정리 352 중로 2-1	안정리 중로3-4	보행자 전용도로	-	평고 제01-131호 (‘01.10.15)	
기정	소로	1	102	10 -12	국지 도로	216	안정리148-2 중로3-6	안정리335 중로3-4	일반 도로		경고 제88-116호 (‘88.5.4)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92	안정리 43-132 소로 1-101	안정리 115-5 소로 2-7	일반 도로	-	경고 제94-83호 (‘94.04.04)	지구 외
기정	소로	2	140	8	특수 도로	47	안정리 43-132 소로 1-101	안정리 115-5 소로 2-7	보행자 전용도로	-	평고 제21-245호 (‘21.05.26)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54	안정리 112-2 소로 1-101	안정리 115-60 소로 2-13	일반 도로	-	경고 제94-83호 (‘94.04.04)	지구 외
기정	소로	2	181	8	특수 도로	46	안정리 112-2 소로 1-101	안정리 115-60 소로 2-13	보행자 전용도로	-	평고 제21-245호 (‘21.05.26)	-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84 (11)	안정리 140 대로 3-1	안정리 136-4 소로 1-101	일반 도로	-	경고 제88-116호 (‘88.05.04)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174 (16)	안정리 153-9 대로 3-1	안정리 137-13 소로 1-102	일반 도로	-	경고 제88-116호 (‘88.05.04)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39	안정리 134-64 중로 3-7	안정리 134-35 소로 1-101	일반 도로	-	경고 제88-116호 (‘88.05.04)	
기정	소로	3	13	5~6	국지 도로	179 (18)	안정리 169-3 대로 3-1	안정리 111-2 소로 1-101	일반 도로	-	경고제 1976-306호 (76.10.15)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50	안정리 37-8 소로 1-102	안정리 38-1 소로3-12	일반 도로	-	경고 제88-116호 (‘88.05.04)	
기정	소로	2	126	8	국지 도로	74 (24)	소로 3-16 안정리32-31	소로 1-102 안정리 36-4	일반 도로	-	평고 제17-78호 (‘17.04.05)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광장 : 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근린광장)	안정리 113-1번지	3,291	-	3,291	평고92호 (‘01.6.11)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구번호	구분	면적(m ²)	획지계획(공동개발 권장)		비고
			위치	면적(m ²)	
A1	기정	2,203	안정리 113-224, 113-276	1,290	-
			안정리 113-134, 113-135	297	-
			안정리 113-132, 113-133	323	-
A2	기정	1,834	안정리 113-144, 113-283, 113-305	160	-
			안정리 113-139, 113-174	618	-
			안정리 113-126, 113-136, 113-137, 113-348	537	-
B	기정	3,034	안정리 134-11, 134-12, 134-14, 134-40, 134-50, 135-51, 134-52, 134-53, 134-98	829	-
			안정리 127-31, 127-32, 134-13	260	-
			안정리 134-9, 134-24, 134-39, 134-46, 134-48	162	-
			안정리 134-7, 134-61, 134-80	241	-
			안정리 127-62, 134-10, 134-22, 134-27, 134-86	770	-
C1	기정	2,494	안정리 112-18, 112-19, 112-23	390	-
			안정리 112-17, 112-21	406	-
			안정리 112-9, 112-15, 112-16, 112-20	575	-
			안정리 112-8, 112-13, 112-28, 112-29	551	-
C2	기정	1,096	안정리 111-69, 112-30	278	-
C3	기정	3,291	-	3,291	광장시설
D	기정	2,924	안정리 134-3, 134-5, 134-34, 134-35, 134-60	249	-
			안정리 134-4, 134-6, 134-69	249	-
			안정리 134-20, 134-72, 134-102	277	-
			안정리 134-2, 134-31, 134-32, 134-33, 134-45, 134-59	273	-
			안정리 135-9, 135-12, 135-15, 135-16, 135-28	433	-
			안정리 135-24, 135-38	278	-
			안정리 134-1, 134-30, 135-4, 135-6, 135-8	376	-
			안정리 135-3, 135-5, 136-16, 135-22	270	-
E1	기정	1,824	안정리 135-13, 136-6, 136-26	416	-
			안정리 112-6, 112-10, 112-11	315	-
			안정리 111-27, 111-28, 111-33, 111-44	528	-
			안정리 41-306, 41-313, 41-314, 111-49	777	-
			안정리 41-308, 41-309, 41-310, 41-312	256	-
E2	기정	1,904	안정리 111-30, 111-55	492	-
			안정리 112-1, 112-34	539	-
			안정리 111-26, 111-32, 111-89, 111-90	637	-
			안정리 111-47, 111-48	206	-
E3	기정	435	안정리 41-303, 41-304	233	-
			안정리 41-305, 41-307	192	-
F	기정	1,030	안정리 136-2, 136-4, 136-21	195	-
			안정리 112-24, 112-25, 112-31, 352-5	198	-
			안정리 111-29, 111-50, 111-51	267	-
G	기정	1,154	안정리 146-3, 146-12, 146-13, 146-18	328	-
			안정리 146-1, 146-9, 146-10, 146-15	324	-
			안정리 146-7, 146-8, 146-11, 148-7	185	-
			안정리 147-2, 147-53, 148-30, 148-47	358	-
H1	기정	2,244	안정리 148-1, 148-8, 148-9, 148-10, 148-11, 148-37	306	-
			안정리 38-8, 38-10, 38-19, 38-21, 38-41, 39-21, 39-24, 39-25	784	-
			안정리 37-8, 38-9, 38-38	734	-
H2	기정	1,872	안정리 39-22, 39-35	203	-
			안정리 38-18, 39-20, 39-29, 39-33	308	-
			안정리 38-16, 38-22	521	-
H3	기정	793	안정리 41-292, 41-293, 41-294, 41-371, 41-440, 41-610	297	-
			안정리 39-23, 39-26, 39-27, 41-295, 41-296, 41-297	466	-

가구번호	구분	면적(m ²)	획지계획(공동개발 권장)		비고
			위치	면적(m ²)	
I	기정	1,289	안정리 148-5, 148-27	277	-
			안정리 148-18, 148-20, 148-31	342	-
			안정리 38-3, 148-3	162	-
			안정리 37-14, 37-15, 37-38, 38-11, 38-14, 38-36, 148-13	485	-
J1	기정	2,308	안정리 37-20, 37-25, 37-27, 37-46	353	-
			안정리 37-1, 37-5, 37-17, 37-49, 37-50, 37-51, 37-52, 37-53	356	-
			안정리 41-93, 41-94	234	-
			안정리 41-89, 41-91, 41-92	288	-
			안정리 41-78, 41-79, 41-80, 41-90	443	-
			안정리 41-68, 41-76, 41-455	291	-
J2	기정	2,200	안정리 37-45, 38-28	784	-
			안정리 40-4, 41-96, 41-97	1,036	-
			안정리 41-98, 41-99	234	-
J3	기정	1,730	안정리 41-72, 41-75, 41-81, 41-88, 41-454, 41-463, 41-464, 41-465	1,762	-
K	기정	1,066	안정리 37-10, 37-11	264	-
			안정리 37-21, 37-23	238	-
			안정리 37-9, 37-22	218	-
L	기정	935	안정리 36-10, 36-11, 36-22, 36-23	358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C1, C2, E	기정	용도	허 용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별표8)에서 허용하는 용도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A1, C1, E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당구장, 볼링장, 게임제공업시설
			권장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 의원, 탁구장,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학원 -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 의원, 탁구장,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 사무소, 학원, 교습소 -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불 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1층에 한함), 공동주택(1층에 한함), 공장, 창고,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층, 2층 권장용도	• 1,2층 연면적의 50% 이상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A1,C1,E1,E3	• 기준 / 허용 : 700% 이하 / 900% 이하
			A2,C2,E2	• 기준 / 허용 : 500% 이하 / 650% 이하
		높 이	A1,C1,E1	• 최저높이 : 6m(2층) 이상 • 최고높이 : 비행안전구역 최고높이 범위 내
			A2,C2,E2,E3	• 최저높이 : - • 최고높이 : 비행안전구역 최고높이 범위 내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전면가로와 일치 • 2개 노선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설치
		색 채		• 주조색 : R-YR계열로高明도 저채도 색상적용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로 조화를 고려 • 강조색 : 건축물에 입체감을 줄 수 있도록 포인트로 적용 • 지붕색 : R-YR계열로 저명도 저채도 색상적용
		기타		• 가로경관은 평택시 경관 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3	기정	용도	허 용	•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시설의 설치 － 지역문화예술 창작실, 공연실, 전시실, 다목적실 및 그 밖의 숙소 등 편의시설	
			불 허	• 허용용도의 불허(영구구조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불허)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500% 이하 / 650% 이하	
		높 이		• 최저높이 : － • 최고높이 : 16m(4층) 이하(기존건축물 리모델링에 의한 수직증축 불허)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전면가로와 일치 • 2개 노선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설치	
		색 채		• 주조색 : R-YR계열로高明도 저채도 색상적용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로 조화를 고려 • 강조색 : 건축물에 입체감을 줄 수 있도록 포인트로 적용 • 지붕색 : R-YR계열로 저명도 저채도 색상적용	
		기타		• 가로경관은 평택시 경관 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B, D, F, G	기정	용도	허 용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별표8)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권 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당구장, 볼링장, 게임제공업시설	
			불 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1층에 한함), 공동주택(1층에 한함), 공장, 창고,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층,2층 권장용도	• 1,2층 연면적의 50% 이상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700%이하 / 900% 이하	
		높 이		• 최저높이 : 6m(2층) 이상 • 최고높이 : 비행안전구역 최고높이 범위 내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전면가로와 일치 • 2개 노선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설치	
		색 채		• 주조색 : R-Y계열로高明도 저채도 색상적용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로 조화를 고려 • 강조색 : 활기있는 가로이미지가 되도록 엑센트로 활용 • 지붕색 : R-YR계열로 저명도 저채도 색상적용	
		기타		• 가로경관은 평택시 경관 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H, J	기정	허 용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별표8)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용도	권장	H1, J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기정 변경	H2, H3, J2, J3
			불 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1층에 한함), 공동주택(1층에 한함), 공장, 창고,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층, 2층 권장용도		• 1,2층 연면적의 50% 이상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H1,H3,J1,J3	• 기준 / 허용 : 700% 이하 / 900% 이하	
			H2, J2	• 기준 / 허용 : 500% 이하 / 650% 이하	

		높이	H1, J1	• 최저높이 : 6m(2층) 이상 • 최고높이 : 비행안전구역 최고높이 범위 내
			H2,H3,J2,J3	• 최저높이 : - • 최고높이 : 비행안전구역 최고높이 범위 내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전면가로와 일치 • 2개 노선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설치
		색 채		• 주조색 : R-Y계열로高明도 저채도 색상적용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로 조화를 고려 • 강조색 : 쾌적한 분위기를 위하여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입체감을 줄 수 있도록 입면분할 • 지붕색 : R-Y계열로 저명도 저채도 색상적용
		기 타		• 가로경관은 평택시 경관 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I, K, L	기정	용도	허 용	• 평택시 도시계획조례(별표8)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권 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1층에 한함), 공동주택(1층에 한함), 공장, 창고,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층,2층권장용도	• 1,2층 연면적의 50% 이상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700%이하 / 900% 이하
		높 이		• 최저높이 : 6m(2층) 이상 • 최고높이 : 비행안전구역 최고높이 범위 내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전면가로와 일치 • 2개 노선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로 설치
		형태		• 간선도로에 접하는 건물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 간선 및 이면도로변에 접한 외벽에 대한 유리창의 비율을 제한하여 창 규격 최소화
		색 채		• 주조색 : R-Y계열로高明도 저채도 색상적용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로 조화를 고려 • 강조색 :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변화감 창출 • 지붕색 : R-YR계열로 저명도 저채도 색상적용
		기타		• 가로경관은 평택시 경관 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A2, C2, E2, E3 가구의 허용용도 중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평고제2021-245호」(2021.05.26.) 고시에서 누락된 사항 반영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전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지	전면공지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3m 이상	
	공개공지	• 주요 보행 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에 설치 권장 • 개별 건축행위 시 평택시 건축조례 제30조(공개 공지 등에 확보)에 따른 공개공지 확보		
통로	보차 혼용통로	• 맹지형필지 및 도로 폭원이 협소한 지역에 대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보차혼용통로 조성	4m 이상	
	공공 보행통로	• 보행공간 확보하고 가로보행환경 개선	2m 이상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첨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K	차량진입 금지구간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안정 쇼펍로 소로 1-101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대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 주차장 설치비용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납부	안정 쇼펍로 소로 1-101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경관 계획	옥외광고물	• 평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평택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야간조명	•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택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공공시설물	•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준수	
친환경 요소	옥상녹화	• 옥상녹화 유도를 통한 녹지공간 권장	
	녹색주차장	• 지상 주차장 신규 조성 시 녹지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해, 잔디, 투수성 블록 등을 활용한 녹색주차장 권장	

7. 인센티브계획 : 변경없음

－ 적용기준 : 기준용적률 + $\sum$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기반시설 공공기여 항목 제외) $\leq$ 허용용적률

구 분	완 화 기 준			비고
	완화조건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 ²⁾	
공동개발 ¹⁾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전면부	120	차등 적용
		이면부	80	
용도	권장용도 준수	전면부	70	
		이면부	50	
건축물 외관/형태	통합간판		20	
대지내 공지/통로	공개공지		20	
	대지 내 조경	전면부	84	차등 적용
		이면부	60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전면부	84	차등 적용
		이면부	60	
환경친화(녹색도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10	
기반시설 공공기여 ³⁾	$1.5 \times (\text{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times \text{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div \text{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1)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이후 분할된 필지간 재합병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각 항목별 용적률인센티브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 합산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II.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당 초		변 경	
제2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2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5조 (권장용도)		제5조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A1, C1, E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당구장, 볼링장, 게임제공업시설	A1, C1, E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당구장, 볼링장, 게임제공업시설
A2, C2, E2, E3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 의원, 탁구장,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소, 학원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A2, C2, E2, E3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 의원, 탁구장,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소, 학원, 교습소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B, D, F, G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당구장, 볼링장, 게임제공업시설	B, D, F, G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당구장, 볼링장, 게임제공업시설
H1, J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H1, J1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H2, H3, J2, J3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 의원, 탁구장,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학원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H2, H3, J2, J3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 의원, 탁구장,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학원, 교습소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I, K, L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I, K, L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6 안중송담지구

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안중송담지구	안중읍 송담리 850번지 일원	662,363.9	-	662,363.9	경고제55호 (2006.2.6.)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62,363.9	-	662,363.9	100.0	
주거지역	소계	651,048	-	651,048	98.3	
	일반주거지역	589,055	-	589,055	88.9	
	제1종일반주거지역	470,154	-	470,154	71.0	
	제2종일반주거지역	9,997	-	9,997	1.5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904	-	108,904	16.4	
	준주거지역	61,993	-	61,993	9.4	
녹지지역	소계	11,315.9	-	11,315.9	1.7	
	생산녹지지역	1,939	-	1,939	0.3	
	자연녹지지역	9,376.9	-	9,376.9	1.4	

3.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가.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96 (96)	23,852 (15,233)	511,880.8 (201,428.8)	35 (35)	16,118 (7,619)	399,064.5 (117,601.5)	35	4,744	47,622.7	26 (26)	3,463 (2,870)	65,193.6 (36,204.6)
대로	4 (4)	11,147 (2,055)	354,563.5 (44,111.5)	2 (2)	8,953 (454)	298,426.0 (16,963.0)	-	-	-	2 (2)	2,194 (1,601)	56,137.5 (27,148.5)
중로	9	3,969	74,265.1	5	2,321	50,572.3	3	1,208	18,380.1	1	440	5,312.7
소로	83	9,209	83,052.2	28	4,844	50,066.2	32	3,536	29,242.6	23	829	3,743.4

※가각 및 가·감속 차로면적 포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	35~38	주간선 도로	5,107 (-)	도시계획구역계 도대리 71전	안중리151-1답 2호광장	일반 도로		건·고 제779호 (1991.12.16)	()구역 내
기정	대로	1	4	35~38	주간선 도로	3,846 (454)	송담리 555답 대로 1-2	송담리 902도 대로 1-1	일반 도로		경·고 제1992-595호 (2000.3.3)	
기정	대로	3	6	25~34	주간선 도로	1,510 (917)	송담리 903도 대로 1-4	안중리 229-1도 1호광장	일반 도로		건·고 제364호 (1972.8.25)	
기정	대로	3	8	25~35	주간선 도로	684	송담리 871도 대로 1-2	송담리 871도 대로 3-6	일반 도로		평·고 제1993-32호 (1993.7.9)	
기정	중로	1	7	20~23	집산 도로	362	송담리 885도 중로 1-8	송담리 885도 대로 3-6	일반 도로		평·고 제2001-91호 (2001.6.18)	
기정	중로	1	8	20~28	집산 도로	811	송담리 904도 대로 1-4	송담리 904도 대로 3-8	일반 도로		평·고 제2001-91호 (2001.6.18)	
기정	중로	1	9	20~23	집산 도로	798	안중리 524도 대로 3-8	안중리 524도 대로 3-6	일반 도로		평·고 제2001-91호 (2001.6.18)	
기정	중로	1	10	20	집산 도로	90	안중리 542도 소로1-34	안중리 542도 소로2-127, 128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중로	1	11	20	집산 도로	260	안중리 529도 대로 1-2	안중리 529도 중로 1-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중로	2	9	15	집산 도로	432	안중리 526도 대로 3-8	안중리 526도 중로 1-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중로	2	10	15~18	집산 도로	307	송담리 878도 중로 1-7	송담리 878도 대로 3-8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중로	2	11	15~18	집산 도로	469	송담리 890도 대로 1-4	송담리 890도 중로 1-7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440	안중리 536도 대로 3-8	안중리 536도 중로 1-11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472	안중리 556도 중로 2-9	안중리 556도 중로 2-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70	안중리 555도 중로 1-9	안중리 555도 중로 2-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9	10	국지 도로	132	안중리 550도 소로 1-10	안중리 550도 중로 2-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121	안중리 554도 소로 2-119	안중리 554도 소로 1-8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132	안중리 573도 소로 1-12	안중리 573도 중로 2-9	일반 도로		경·고제2006-55호 (2006.2.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271	송담리 229전 중로 2-9	안중리 산133임 소로 2-120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25	안중리 531도 소로 1-14	안중리 531도 중로 1-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14	10	국지 도로	306	안중리 532도 소로 2-125	안중리 532도 중로 3-4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78	안중리 535도 중로 3-4	안중리 535도 소로 1-14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255	안중리 537도 중로 3-4	안중리 537도 중로 3-4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17	10	국지 도로	215	안중리 581도 중로 3-4	안중리 581도 소로 2-126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78	안중리 582도 중로 3-4	안중리 582도 소로 1-17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19	10	국지 도로	446	송담리 산109-4임 중로 3-4	송담리 266-1임 중로 3-4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480	송담리 687전 중로 2-10	송담리 747전 중로 2-10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114	송담리 880도 중로 2-10	송담리 880도 소로 1-20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199	송담리 산164임 중로 2-10	송담리 749-2답 중로 2-10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475	송담리 887도 중로 2-11	송담리 887도 중로 2-11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120	송담리 892도 중로 2-11	송담리 892도 소로1-23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25	11~13	국지 도로	170	송담리 897도 중로 2-11	송담리 897도 대로 3-6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26	11	국지 도로	255	송담리 899도 중로 2-11	송담리 899도 소로 1-25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27	11	국지 도로	132	송담리 898도 중로 2-11	송담리 898도 소로 1-26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28	10	국지 도로	25	안중리 557도 소로 1-7	안중리 557도 대로 3-6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33	송담리 881도 소로 1-20	송담리 881도 대로 3-6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0	10	특수 도로	32	송담리 893도 소로 1-23	송담리 893도 대로 3-6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31	10	국지 도로	23	송담리 884도 중로 1-7	송담리 884도 소로 1-20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32	10	국지 도로	26	송담리 886도 소로 1-23	송담리 886도 중로 1-7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33	10	국지 도로	39	송담리 896도 소로 1-25	송담리 896도 소로 1-23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11	8	국지 도로	130	안중리 560도 소로 2-112	안중리 560도 소로 1-7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12	8	국지 도로	123	안중리 562도 중로 2-9	안중리 562도 소로 1-7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13	8	국지 도로	78	안중리 569도 소로 1-7	안중리 569도 소로 2-112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14	8	국지 도로	97	안중리 568도 소로 1-7	안중리 568도 소로 2-112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15	8	국지 도로	118	안중리 561도 소로2-112	안중리 561도 소로1-7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238	안중리 527도 소로 1-8	안중리 527도 소로 1-8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17	8	국지 도로	81	안중리 551도 소로 1-9	안중리 551도 소로 1-8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18	8	국지 도로	88	안중리 553도 소로 1-9	안중리 553도 소로 1-8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19	8	국지 도로	169	안중리 547도 중로1-9	안중리 547도 중로2-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20	8	국지 도로	169	안중리 548도 중로1-9	안중리 548도 중로2-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21	8	국지 도로	93	안중리 576도 소로 1-12	안중리 576도 소로 1-11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22	8	국지 도로	84	안중리 574도 소로 1-12	안중리 574도 소로 1-11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23	8	국지 도로	181	안중리 534도 소로 1-15	안중리 534도 소로 1-14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24	8	국지 도로	208	안중리 539도 소로 1-16	안중리 539도 소로 1-16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5	8	국지 도로	113	안중리 545도 중로 3-4	안중리 545도 중로 1-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26	8	국지 도로	113	안중리 546도 중로 3-4	안중리 546도 중로 1-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27	8	국지 도로	69	안중리 543도 중로 1-10	안중리 543도 중로 3-4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28	8	국지 도로	74	안중리 544도 중로 1-10	안중리 544도 중로 3-4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29	8	국지 도로	90	안중리 583도 소로 1-17	안중리 583도 소로 1-18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30	8	국지 도로	89	안중리 586도 소로 1-19	안중리 586도 소로 1-1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31	8	국지 도로	106	안중리 587도 소로 1-19	안중리 587도 소로 1-1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32	8	국지 도로	111	안중리 588도 소로 1-19	안중리 588도 소로 1-19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33	8	국지 도로	128	송담리 876도 소로 1-21	송담리 876도 소로 1-20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34	8	국지 도로	127	송담리 877도 소로 1-21	송담리 877도 소로 1-20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35	8	국지 도로	91	송담리 882도 소로 1-20	송담리 882도 소로 1-21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36	8	국지 도로	92	송담리 883도 소로 1-20	송담리 883도 소로 1-21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37	8	국지 도로	37	안중리 525도 중로 2-9	안중리 525도 공공청사 7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39	8	국지 도로	109	송담리 888도 소로 1-24	송담리 888도 소로 1-23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40	8	국지 도로	109	송담리 889도 소로 1-24	송담리 889도 소로 1-23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41	8	국지 도로	98	송담리 894도 소로 1-23	송담리 894도 소로 1-24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42	8	국지 도로	98	송담리 895도 소로 1-23	송담리 895도 소로 1-24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2	144	8	국지 도로	25	안중리 563도 소로 1-7	안중리 563도 대로 3-6	일반 도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1	4	특수 도로	13	안중리 570도 소로 1-7	안중리 570도 대로 3-6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62	4	특수 도로	36	안중리 571도 대로 3-8	안중리 571도 소로 1-7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63	4	특수 도로	17	안중리 528도 중로 1-9	안중리 528도 소로 2-116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64	4	특수 도로	84	안중리 552도 소로 1-9	안중리 552도 소로 1-8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65	4	특수 도로	23	안중리 549도 소로 2-119	안중리 549도 소로 1-9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66	4	특수 도로	23	안중리 572도 소로 1-11	안중리 572도 소로 2-120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67	4	특수 도로	54	안중리 575도 소로 1-12	안중리 575도 어린이공원15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68	4	특수 도로	32	안중리 578도 대로 3-8	안중리 578도 소로 1-12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69	4	특수 도로	17	안중리 579도 중로 1-9	안중리 579도 소로 1-12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70	4	특수 도로	15	안중리 530도 소로 1-14	안중리 530도 중로 1-9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71	4	특수 도로	35	안중리 533도 소로 2-123	안중리 533도 소로 1-14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72	4	특수 도로	15	안중리 580도 소로 1-17	안중리 580도 중로 1-9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73	4	특수 도로	35	안중리 538도 소로 1-16	안중리 538도 중로 3-4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74	4	특수 도로	18	안중리 540도 대로 1-2	안중리 540도 소로 2-124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75	4	특수 도로	35	안중리 584도 소로 1-19	안중리 584도 중로1-10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76	4	특수 도로	18	안중리 589도 대로 1-2	안중리 589도 소로 1-19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77	4	특수 도로	35	안중리 592도 대로 3-8	안중리 592도 소로 1-19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78	4	특수 도로	15	안중리 590도 대로 1-2	안중리 590도 소로 1-19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79	4	특수 도로	20	송담리 874도 소로 1-20	송담리 874도 대로 3-6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80	4	특수 도로	32	송담리 873도 소로 1-20	송담리 873도 대로 3-8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84	4	특수 도로	21	송담리 900도 소로 1-26	송담리 900도 대로 3-6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85	4	특수 도로	35	송담리 901도 대로 1-4	송담리 901도 소로 1-26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3	86	6	특수 도로	206	송담리 891도 중로 1-8	송담리 891도 중로 2-11	보행자 도 로		경·고 제2006-55호 (2006.2.6)	
기정	소로	1	34	10	특수 도로	67 (20)	송담리 208-1전	안중리 541도 중로 1-10	고 가 도 로		경·고 제2008-158호 (2008.6.3)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주차장	안중리 463-5차	994.3	-	994.3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8	주차장	안중리 489-1차	993.1	-	993.1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9	주차장	송담리 834-1차	1,074.2	-	1,074.2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0	주차장	송담리 843-6차	1,004.4	-	1,004.4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1	주차장	송담리 853-7차	1,474.5	-	1,474.5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2	주차장	안중리 471-8차	661.6	-	661.6	경·고제2006-55호 (2006.2.6)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공 원	근린공원	송담리 869공	13,893.9	-	13,893.9	경·고제2006-55호 (2006.2.6)	유수지 중복결정 (6,163㎡)
기정	13	공 원	근린공원	송담리 861공	22,439.3	-	22,439.3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4	공 원	근린공원	안중리 499공	11,642.3	-	11,642.3	경·고제2006-55호 (2006.2.6)	유수지 중복결정 (6,727㎡)
기정	15	공 원	어린이공원	안중리 502공	1,503.5	-	1,503.5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6	공 원	어린이공원	안중리 500공	1,535.5	-	1,535.5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7	공 원	어린이공원	안중리 501공	1,513.6	-	1,513.6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8	공 원	어린이공원	송담리 862공	1,522.3	-	1,522.3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9	공 원	어린이공원	송담리 868공	1,520.3	-	1,520.3	경·고제2006-55호 (2006.2.6)	

나.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안중리 506공 일원	2,929.2	-	2,929.2	경·고제1991-493호 (1991.12.31)	()구역내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안중리 513공 일원	935.9	-	935.9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송담리 870공 일원	1,471.9	-	1,471.9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안중리 503공 일원	3,102.5	-	3,102.5	경·고제2015-123호 (2015.5.28)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공공공지	-	안중리 521공	269.7	-	269.7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5	공공공지	-	안중리 520공	289.0	-	289.0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6	공공공지	-	안중리 517공	509.1	-	509.1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7	공공공지	-	안중리 566도 일원	387.4	-	387.4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8	공공공지	-	안중리 564도	87.7	-	87.7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0	공공공지	-	송담리 863공	492.5	-	492.5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1	공공공지	-	송담리 865공 일원	1,059.4	-	1,059.4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2	공공공지	-	안중리 518공	84.2	-	84.2	경·고제2008-158호 (2008.6.3)	
기정	13	공공공지	-	안중리 519공	76.3	-	76.3	경·고제2008-158호 (2008.6.3)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2	학교	초등학교	송담리 838학	11,085.2	-	11,085.2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13	학교	중학교	송담리 839학	12,114.8	-	12,114.8	경·고제2006-55호 (2006.2.6)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	공공청사	안중읍 사무소	안중리 445-16대	6,741.9	-	6,741.9	경·고제2006-55호 (2006.02.06)	청소년 수련시설7 중복결정

다.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	청소년 수련시설	서부 청소년시설	안중리 445-16대	6,741.9	-	6,741.9	광·고제2022-196호 (2022.06.22)	공공청사7 중복결정

라.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안중리 492-7대	2,505.9	-	2,505.9	경·고제2006-55호 (2006.2.6)	

4) 방재시설 : 변경없음

가. 유수지 :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안중리 522유	2,311.4	-	2,311.4	경·고제2006-55호 (2006.2.6)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송담리 861공	9,744.0	-	9,744.0	경·고제1980-55호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1	13,112.2	1 안중리 445-1	763.5	
			2 안중리 445-2	351.1	
			3 안중리 445-3	599.9	
			4 안중리 445-4	407.7	
			5 안중리 445-5	402.6	
			7 안중리 445-7	623.2	
			8 안중리 445-8	411.1	
			9 안중리 445-9	505.5	
			10 안중리 445-10	828.6	
			11 안중리 445-11	319.9	
			12 안중리 445-12	319.8	
			13 안중리 445-13	432.3	
			14 안중리 445-14	435.3	
			15 안중리 445-15	6711.7	
	2	1,958.0	1 안중리 446-1	464.0	
			2 안중리 446-2	464.0	
			3 안중리 446-3	403.2	
			4 안중리 446-4	626.8	
	3	3,477.3	1 안중리 447-1	339.0	
			2 안중리 447-2	282.4	
			3 안중리 447-3	282.8	
			4 안중리 447-4	312.2	
			5 안중리 447-5	454.5	
			6 안중리 447-6	402.5	
			7 안중리 447-7	400.4	
			8 안중리 447-8	221.3	
			9 안중리 447-9	232.8	
			10 안중리 447-10	210.0	
			11 안중리 447-11	339.4	
	4	2,524.0	1 안중리 448-1	435.6	
			2 안중리 448-2	382.6	
			3 안중리 448-3	463.2	
			4 안중리 448-4	749.0	
			5 안중리 448-5	493.6	
	5	2,805.2	1 안중리 449-1	607.1	
			2 안중리 449-2	358.3	
			3 안중리 449-3	357.1	
			4 안중리 449-4	393.9	
			5 안중리 449-5	356.7	
			6 안중리 449-6	355.7	
			7 안중리 449-7	376.4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6	2,318.5	1	안중리 450-1	380.6	
			2	안중리 450-2	288.7	
			3	안중리 450-3	275.6	
			4	안중리 450-4	275.7	
			5	안중리 450-5	433.1	
			6	안중리 450-6	358.4	
			7	안중리 450-7	306.4	
	7	3,103.7	1	안중리 451-1	363.0	
			2	안중리 451-2	361.3	
			3	안중리 451-3	450.8	
			4	안중리 451-4	370.4	
			5	안중리 451-5	363.4	
			6	안중리 451-6	254.6	
			7	안중리 451-7	362.6	
			8	안중리 451-8	192.4	
			9	안중리 451-9	192.7	
			10	안중리 451-10	192.5	
	8	2,331.2	1	안중리 452-1	281.7	
			2	안중리 452-2	448.2	
			3	안중리 452-3	387.4	
			4	안중리 452-4	318.7	
			5	안중리 452-5	318.7	
			6	안중리 452-6	294.9	
			7	안중리 452-7	281.6	
	9	3,203.0	1	안중리 453-1	554.4	
			2	안중리 453-2	415.0	
			3	안중리 453-3	516.2	
			4	안중리 453-4	575.5	
			5	안중리 453-5	549.7	
			6	안중리 453-6	592.2	
	10	2,817.1	1	안중리 454-1	257.5	
			2	안중리 454-2	258.4	
			3	안중리 454-3	256.5	
			4	안중리 454-4	269.5	
			5	안중리 454-5	292.8	
			6	안중리 454-6	405.9	
			7	안중리 454-7	300.6	
			8	안중리 454-8	300.5	
			9	안중리 454-9	209.3	
			10	안중리 454-10	266.1	
	11	3,008.0	1	안중리 455-1	311.5	
			2	안중리 455-2	215.5	
			3	안중리 455-3	265.8	
			4	안중리 455-4	266.2	
			5	안중리 455-5	250.3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6	안중리 455-6	186.7	
			7	안중리 455-7	271.9	
			8	안중리 455-8	292.2	
			9	안중리 455-9	289.3	
			10	안중리 455-10	333.9	
			11	안중리 455-11	324.7	
	12	5,288.6	1	안중리 456-1	625.8	
			2	안중리 456-2	603.9	
			3	안중리 456-3	394.7	
			4	안중리 456-4	400.9	
			5	안중리 456-5	578.2	
			6	안중리 456-6	661.0	
			7	안중리 456-7	594.2	
			8	안중리 456-8	454.3	
			9	안중리 456-9	456.5	
			10	안중리 456-10	519.1	
	13	2,839.2	1	안중리 457-1	300.3	
			2	안중리 457-2	349.0	
			3	안중리 457-3	200.8	
			4	안중리 457-4	231.3	
			5	안중리 457-5	231.5	
			6	안중리 457-6	302.9	
			7	안중리 457-7	407.6	
			8	안중리 457-8	519.6	
			9	안중리 457-9	296.2	
	14	2,426.6	1	안중리 458-1	452.7	
			2	안중리 458-2	371.2	
			3	안중리 458-3	271.4	
			4	안중리 458-4	233.4	
			5	안중리 458-5	374.7	
			6	안중리 458-6	350.8	
			7	안중리 458-7	372.4	
	15	3,106.2	1	안중리459-1	358.0	
			2	안중리459-2	358.7	
			3	안중리459-3	393.2	
			4	안중리459-4	269.7	
			5	안중리459-5	269.9	
			6	안중리459-6	262.2	
			7	안중리459-7	280.0	
			8	안중리459-8	240.8	
			9	안중리459-9	241.0	
			10	안중리459-10	432.7	
	16	1,928.7	1	안중리 460-1	369.1	
			2	안중리 460-2	390.1	
			3	안중리 460-3	389.8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4	안중리 460-4	389.8	
			5	안중리 460-5	389.9	
	19	2,157.8	1	안중리 463-1	294.7	
			2	안중리 463-2	456.3	
			3	안중리 463-3	311.7	
			4	안중리 463-4	311.9	
			5	안중리 463-6	489.0	
			6	안중리 463-7	294.2	
	20	1,707.5	1	안중리 464-1	279.9	
			2	안중리 464-2	279.9	
			3	안중리 464-3	346.4	
			4	안중리 464-4	267.0	
			5	안중리 464-5	267.2	
			6	안중리 464-6	267.1	
	21	1,643.1	1	안중리 465-1	429.5	
			2	안중리 465-2	427.1	
			3	안중리 465-3	262.1	
			4	안중리 465-4	262.4	
			5	안중리 465-5	262.0	
	22	2,776.0	1	안중리 466-1	370.8	
			2	안중리 466-2	309.2	
			3	안중리 466-3	359.4	
			4	안중리 466-4	314.0	
			5	안중리 466-5	313.6	
			6	안중리 466-6	370.2	
			7	안중리 466-7	370.0	
			8	안중리 466-8	368.8	
	23	1,461.4	1	안중리 467-1	286.4	
			2	안중리 467-2	286.5	
			3	안중리 467-3	482.9	
			4	안중리 467-4	405.6	
	24	1,458.5	1	안중리 468-1	492.2	
			2	안중리 468-2	382.6	
			3	안중리 468-3	319.7	
			4	안중리 468-4	264.0	
	25	3,853.0	1	안중리 469-1	235.9	
			2	안중리 469-2	227.5	
			3	안중리 469-3	429.7	
			4	안중리 469-4	314.3	
			5	안중리 469-5	314.3	
			6	안중리 469-6	314.1	
			7	안중리 469-7	193.6	
			8	안중리 469-8	212.1	
			9	안중리 469-9	191.8	
			10	안중리 469-10	217.8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11	안중리 469-11	233.5	
			12	안중리 469-12	213.3	
			13	안중리 469-13	245.1	
			14	안중리 469-14	245.5	
			15	안중리 469-15	264.5	
	26	4,247.6	1	안중리 470-1	297.2	
			2	안중리 470-2	238.1	
			3	안중리 470-3	416.1	
			4	안중리 470-4	247.1	
			5	안중리 470-5	193.8	
			6	안중리 470-6	264.5	
			7	안중리 470-7	214.4	
			8	안중리 470-8	284.1	
			9	안중리 470-9	242.9	
			10	안중리 470-10	253.8	
			11	안중리 470-11	320.3	
			12	안중리 470-12	283.3	
			13	안중리 470-14	217.1	
			14	안중리 470-15	261.5	
			15	안중리 470-16	280.2	
			16	안중리 470-13	233.2	
	27	3,883.0	1	안중리 471-1	295.7	
			2	안중리 471-2	338.8	
			3	안중리 471-3	233.0	
			4	안중리 471-4	278.5	
			5	안중리 471-5	290.1	
			6	안중리 471-6	289.9	
			7	안중리 471-7	504.1	
			8	안중리 471-8	-	
			9	안중리 471-8	-	
			10	안중리 471-9	503.9	
			11	안중리 471-10	288.9	
			12	안중리 471-11	289.0	
			13	안중리 471-12	277.5	
			14	안중리 471-13	293.6	
	28	3,499.2	1	안중리 472-1	293.4	
			2	안중리 472-2	456.7	
			3	안중리 472-3	445.5	
			4	안중리 472-4	257.9	
			5	안중리 472-5	482.4	
			6	안중리 472-6	409.8	
			7	안중리 472-7	316.1	
			8	안중리 472-8	272.7	
			9	안중리 472-9	564.7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29	1,297.1	1	안중리 473-1	527.6	
			2	안중리 473-2	260.0	
			3	안중리 473-3	509.5	
	30	2,194.6	1	안중리 474-8	285.1	
			2	안중리 474-3	285.1	
			3	안중리 474-4	245.6	
			4	안중리 474-5	341.5	
			5	안중리 474-6	261.7	
			6	안중리 474-7	285.2	
			7	안중리 474-1	208.6	
			8	안중리 474-2	281.8	
	31	3,081.7	1	안중리 475-1	309.1	
			2	안중리 475-2	282.8	
			3	안중리 475-3	282.7	
			4	안중리 475-4	394.8	
			5	안중리 475-5	390.7	
			6	안중리 475-6	264.2	
			7	안중리 475-7	231.7	
			8	안중리 475-8	308.5	
			9	안중리 475-9	308.5	
			10	안중리 475-10	308.7	
	32	3,378.6	1	안중리 476-1	378.0	
			2	안중리 476-2	290.2	
			3	안중리 476-3	223.9	
			4	안중리 476-4	269.2	
			5	안중리 476-5	324.6	
			6	안중리 476-6	331.6	
			7	안중리 476-7	374.5	
			8	안중리 476-8	300.0	
			9	안중리 476-9	305.2	
			10	안중리 476-10	200.4	
			11	안중리 476-11	378.0	
	33	1,575.6	1	안중리 477-1	511.5	
			2	안중리 477-2	320.0	
			3	안중리 477-3	319.8	
			4	안중리 477-4	424.3	
	34	2,038.3	1	안중리 478-1	424.5	
			2	안중리 478-2	566.6	
			3	안중리 478-3	429.5	
			4	안중리 478-4	281.3	
			5	안중리 478-5	336.4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35	1,456.8	1	안중리 479-1	504.4	
			2	안중리 479-2	526.0	
			3	안중리 479-3	426.4	
	36	1,458.0	1	안중리 480-1	283.2	
			2	안중리 480-2	364.0	
			3	안중리 480-3	420.8	
			4	안중리 480-4	390.0	
	37	2,851.6	1	안중리 481-1	330.7	
			2	안중리 481-2	263.7	
			3	안중리 481-3	296.3	
			4	안중리 481-4	296.3	
			5	안중리 481-5	440.4	
			6	안중리 481-6	412.1	
			7	안중리 481-7	440.3	
			8	안중리 481-8	371.8	
	38	2,138.6	1	안중리 482-1	398.1	
			2	안중리 482-2	398.2	
			3	안중리 482-3	355.1	
			4	안중리 482-4	355.3	
			5	안중리 482-5	336.4	
			6	안중리 482-6	295.5	
	39	3,365.8	1	안중리 483-1	279.9	
			2	안중리 483-2	271.9	
			3	안중리 483-3	256.0	
			4	안중리 483-4	255.7	
			5	안중리 483-5	332.9	
			6	안중리 483-6	268.8	
			7	안중리 483-7	413.3	
			8	안중리 483-8	270.0	
			9	안중리 483-9	271.3	
			10	안중리 483-10	467.0	
			11	안중리 483-11	279.0	
	41	1,629.3	1	안중리 485-1	365.9	
			2	안중리 485-2	417.3	
			3	안중리 485-3	417.7	
			4	안중리 485-4	428.4	
	42	2,503.0	1	안중리 486-1	368.5	
			2	안중리 486-2	327.1	
			3	안중리 486-3	327.1	
			4	안중리 486-4	519.6	
			5	안중리 486-5	300.3	
			6	안중리 486-6	660.4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44	1,922.8	1	안중리 488-1	360.8	
			2	안중리 488-2	358.7	
			3	안중리 488-3	570.4	
			4	안중리 488-4	274.9	
			5	안중리 488-5	358.0	
	45	2,162.8	1	안중리 489-8	270.1	
			2	안중리 489-2	198.0	
			3	안중리 489-3	498.0	
			4	안중리 489-4	412.9	
			5	안중리 489-5	244.4	
			6	안중리 489-6	269.3	
			7	안중리 489-7	270.1	
	46	3,114.5	1	안중리 490-1	302.7	
			2	안중리 490-2	322.6	
			3	안중리 490-3	322.0	
			4	안중리 490-4	320.7	
			5	안중리 490-5	321.4	
			6	안중리 490-6	312.6	
			7	안중리 490-7	303.3	
			8	안중리 490-8	302.7	
			9	안중리 490-9	303.5	
	47	2,686.4	1	안중리 491-1	658.0	
			2	안중리 491-2	262.4	
			3	안중리 491-3	260.4	
			4	안중리 491-4	340.3	
			5	안중리 491-5	646.3	
			6	안중리 491-6	519.0	
	48	2,889.0	1	안중리 492-1	339.6	
			2	안중리 492-2	574.9	
			3	안중리 492-3	452.9	
			4	안중리 492-4	486.5	
			5	안중리 492-5	508.0	
			6	안중리 492-6	537.1	
	49	1,374.5	1	안중리 493-1	312.1	
			2	안중리 493-2	341.4	
			3	안중리 493-3	220.6	
			4	안중리 493-4	188.3	
			5	안중리 493-5	312.1	
	50	2,709.0	1	안중리 494-1	296.5	
			3	안중리 494-3	514.6	
			4	안중리 494-4	381.0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5	안중리 494-5	316.5	
			6	안중리 494-6	228.9	
			7	안중리 494-7	291.1	
			8	안중리 494-8	383.5	
			9	안중리 494-9	296.9	
	51	3,439.4	1	안중리 495-1	223.0	
			2	안중리 495-2	271.5	
			3	안중리 495-3	278.8	
			4	안중리 495-4	326.1	
			5	안중리 495-5	175.9	
			6	안중리 495-6	319.1	
			7	안중리 495-7	344.6	
			8	안중리 495-8	351.1	
			9	안중리 495-9	211.2	
			10	안중리 495-10	467.4	
			11	안중리 495-11	176.0	
			12	안중리 495-12	294.7	
	52	3,538.2	1	안중리 496-1	366.9	
			2	안중리 496-2	407.7	
			3	안중리 496-3	270.3	
			4	안중리 496-4	270.2	
			5	안중리 496-5	302.1	
			6	안중리 496-6	322.0	
			7	안중리 496-7	321.7	
			8	안중리 496-8	274.8	
			9	안중리 496-9	274.5	
			10	안중리 496-10	364.1	
			11	안중리 496-11	363.9	
	53	1,892.2	1	안중리 497-1	505.9	
			2	안중리 497-2	379.9	
			3	안중리 497-3	423.1	
			4	안중리 497-4	279.2	
			5	안중리 497-5	304.1	
	54	2,283.2	1	안중리 498-1	345.1	
			2	안중리 498-2	345.1	
			3	안중리 498-3	804.3	
			4	안중리 498-4	788.7	
	55	1,885.9	1	송담리 825-1	646.5	
			2	송담리 825-2	419.2	
			3	송담리 825-3	417.6	
			4	송담리 825-4	402.6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56	1,886.3	1	송담리 826-1	342.7	
			2	송담리 826-2	620.9	
			3	송담리 826-3	464.1	
			4	송담리 826-4	458.6	
	57	998.0	1	송담리 827-1	425.0	
			2	송담리 827-2	573.0	
	58	3,621.5	1	송담리 828-1	341.8	
			2	송담리 828-2	326.1	
			3	송담리 828-3	343.7	
			4	송담리 828-4	243.2	
			5	송담리 828-5	282.6	
			6	송담리 828-6	277.1	
			7	송담리 828-7	322.2	
			8	송담리 828-8	338.0	
			9	송담리 828-9	277.3	
			10	송담리 828-10	282.7	
			11	송담리 828-11	243.1	
			12	송담리 828-12	343.7	
	59	3,993.1	1	송담리 829-1	259.6	
			2	송담리 829-2	196.9	
			3	송담리 829-3	281.2	
			4	송담리 829-4	249.5	
			5	송담리 829-5	249.7	
			6	송담리 829-6	342.2	
			7	송담리 829-7	190.0	
			8	송담리 829-8	243.8	
			9	송담리 829-9	243.7	
			10	송담리 829-10	224.9	
			11	송담리 829-11	246.8	
			12	송담리 829-12	247.0	
			13	송담리 829-13	246.8	
			14	송담리 829-14	397.6	
			15	송담리 829-15	373.4	
	60	2,498.9	1	송담리 830-1	246.1	
			2	송담리 830-2	190.7	
			3	송담리 830-3	198.0	
			4	송담리 830-4	435.2	
			5	송담리 830-5	181.6	
			6	송담리 830-6	278.5	
			7	송담리 830-7	361.5	
			8	송담리 830-8	361.2	
			9	송담리 830-9	246.1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61	4,679.3	1	송담리 831-1	328.9	
			2	송담리 831-2	298.8	
			3	송담리 831-3	328.4	
			4	송담리 831-4	343.8	
			5	송담리 831-5	246.1	
			6	송담리 831-6	394.9	
			7	송담리 831-7	192.8	
			8	송담리 831-8	212.6	
			9	송담리 831-9	273.6	
			10	송담리 831-10	262.9	
			11	송담리 831-11	252.8	
			12	송담리 831-12	266.0	
			13	송담리 831-13	264.3	
			14	송담리 831-14	303.8	
			15	송담리 831-15	486.4	
			16	송담리 831-16	223.2	
	62	4,279.9	1	송담리 832-1	367.0	
			2	송담리 832-2	254.9	
			3	송담리 832-3	389.9	
			4	송담리 832-4	407.9	
			5	송담리 832-5	495.8	
			6	송담리 832-6	470.4	
			7	송담리 832-7	420.0	
			8	송담리 832-8	498.0	
			9	송담리 832-9	493.3	
			10	송담리 832-10	482.7	
	63	3,925.6	1	송담리 833-1	1,897.9	
			2	송담리 833-2	802.1	
			3	송담리 833-3	612.4	
			4	송담리 833-4	613.2	
	64	2,088.2	1	송담리 834-7	306.1	
			2	송담리 834-2	228.0	
			3	송담리 834-3	384.8	
			4	송담리 834-4	419.0	
			5	송담리 834-5	434.3	
			6	송담리 834-6	316.0	
	65	2,767.9	1	송담리 835-1	364.6	
			2	송담리 835-2	371.6	
			3	송담리 835-3	220.9	
			4	송담리 835-4	292.7	
			5	송담리 835-5	489.5	
			6	송담리 835-6	254.4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7	송담리 835-7	233.4	
			8	송담리 835-8	270.6	
			9	송담리 835-9	270.2	
	66	2,791.8	1	송담리 836-1	416.1	
			2	송담리 836-2	261.8	
			3	송담리 836-3	176.0	
			4	송담리 836-4	224.7	
			5	송담리 836-5	266.6	
			6	송담리 836-6	266.6	
			7	송담리 836-7	266.7	
			8	송담리 836-8	453.1	
			9	송담리 836-9	253.9	
			10	송담리 836-10	206.3	
	67	2,698.1	1	송담리 837-1	431.0	
			2	송담리 837-2	505.8	
			3	송담리 837-3	315.3	
			4	송담리 837-4	349.4	
			5	송담리 837-5	349.1	
			6	송담리 837-6	384.3	
			7	송담리 837-7	363.2	
	69	2,821.3	1	송담리 840-1	353.5	
			2	송담리 840-2	378.3	
			3	송담리 840-3	509.2	
			4	송담리 840-4	509.0	
			5	송담리 840-5	527.3	
			6	송담리 840-6	544.0	
	70	3,645.6	1	송담리 841-1	235.3	
			2	송담리 841-2	306.1	
			3	송담리 841-3	306.1	
			4	송담리 841-4	340.0	
			5	송담리 841-5	311.5	
			6	송담리 841-6	311.8	
			7	송담리 841-7	310.7	
			8	송담리 841-8	281.6	
			9	송담리 841-9	281.9	
			10	송담리 841-10	261.7	
			11	송담리 841-11	232.3	
			12	송담리 841-12	466.0	
	71	3,636.8	1	송담리 842-1	355.9	
			2	송담리 842-2	296.3	
			3	송담리 842-3	266.7	
			4	송담리 842-4	266.8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5	송담리 842-5	266.6	
			6	송담리 842-6	282.2	
			7	송담리 842-7	443.1	
			8	송담리 842-8	383.2	
			9	송담리 842-9	387.2	
			10	송담리 842-10	268.6	
			11	송담리 842-11	232.4	
			12	송담리 842-12	187.8	
	72	2,619.7	1	송담리 843-1	292.8	
			2	송담리 843-2	388.4	
			3	송담리 843-3	200.4	
			4	송담리 843-4	365.7	
			5	송담리 843-5	333.8	
			6	송담리 843-7	396.3	
			7	송담리 843-8	332.3	
			8	송담리 843-9	310.0	
	73	4,325.7	1	송담리 844-1	551.7	
			2	송담리 844-2	314.2	
			3	송담리 844-3	283.1	
			4	송담리 844-4	337.7	
			5	송담리 844-5	339.6	
			6	송담리 844-6	702.8	
			7	송담리 844-7	697.0	
			8	송담리 844-8	711.2	
			9	송담리 844-9	388.4	
	74	4,413.7	1	송담리 845-1	367.0	
			2	송담리 845-2	339.7	
			3	송담리 845-3	340.0	
			4	송담리 845-4	372.0	
			5	송담리 845-5	397.8	
			6	송담리 845-6	317.6	
			7	송담리 845-7	368.3	
			8	송담리 845-8	473.4	
			9	송담리 845-9	473.3	
			10	송담리 845-10	424.5	
			11	송담리 845-11	540.1	
	75	3,445.3	1	송담리 846-1	389.1	
			2	송담리 846-2	240.7	
			3	송담리 846-3	271.6	
			4	송담리 846-4	294.3	
			5	송담리 846-5	266.6	
			6	송담리 846-6	298.7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7	송담리 846-7	325.8	
			8	송담리 846-8	322.2	
			9	송담리 846-9	300.5	
			10	송담리 846-10	346.5	
			11	송담리 846-11	389.3	
	76	1,935.9	1	송담리 847-1	331.5	
			2	송담리 847-2	330.9	
			3	송담리 847-3	334.4	
			4	송담리 847-4	303.1	
			5	송담리 653	312.1	
			6	송담리 847-6	324.0	
	77	3,476.9	1	송담리 848-1	381.1	
			2	송담리 848-2	270.8	
			3	송담리 848-3	313.7	
			4	송담리 848-4	205.3	
			5	송담리 848-5	198.5	
			6	송담리 848-6	218.3	
			7	송담리 848-7	245.6	
			8	송담리 848-8	413.0	
			9	송담리 848-9	445.1	
			10	송담리 848-10	483.5	
			11	송담리 848-11	302.0	
	78	4,999.7	1	송담리 849-1	435.0	
			2	송담리 849-2	286.5	
			3	송담리 849-3	286.4	
			4	송담리 849-4	432.3	
			5	송담리 849-5	309.7	
			6	송담리 849-6	366.9	
			7	송담리 849-7	366.9	
			8	송담리 849-8	261.8	
			9	송담리 849-9	535.1	
			10	송담리 849-10	318.8	
			11	송담리 849-11	318.8	
			12	송담리 849-12	353.0	
			13	송담리 849-13	293.0	
			14	송담리 849-14	435.5	
	소 계		-	-	231,357.7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1	79	30,837.6	1	송담리 850 일원	30,837.6	
	80	52,038.7	1	송담리 851 일원	37,809.5	
			2	송담리 852 일원	14,229.2	
소계		82,876.3	—	—	82,876.3	

3)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17	2,935.7	1	안중리 461-1	673.2	
			2	안중리 461-2	673.2	
			3	안중리 461-3	329.7	
			4	안중리 461-4	500.6	
			5	안중리 461-5	354.6	
			6	안중리 461-6	404.4	
	18	3,136.9	1	안중리 462-1	424.8	
			2	안중리 462-2	426.9	
			3	안중리 462-3	389.0	
			4	안중리 462-4	409.1	
			5	안중리 462-5	474.0	
			6	안중리 462-6	481.7	
			7	안중리 462-7	531.4	
	40	3,556.4	1	안중리 484-1	398.9	
			2	안중리 484-2	411.6	
			3	안중리 484-3	411.4	
			4	안중리 484-4	411.2	
			5	안중리 484-5	411.0	
			6	안중리 484-6	346.9	
			7	안중리 484-7	497.9	
			8	안중리 484-8	337.4	
			9	안중리 484-9	330.1	
	43	3,348.7	1	안중리 487-1	339.4	
			2	안중리 487-2	338.5	
			3	안중리 487-3	378.8	
			4	안중리 487-4	378.6	
			5	안중리 487-5	343.5	
			6	안중리 487-6	392.6	
			7	안중리 487-7	392.7	
			8	안중리 487-8	392.9	
			9	안중리 487-9	391.7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 1	81	4,907.9	1	송담리 853-1	432.0	
			2	송담리 853-2	335.5	
			3	송담리 853-3	392.3	
			4	송담리 853-4	392.4	
			5	송담리 853-5	392.8	
			6	송담리 853-6	491.2	
			8	송담리 853-8	372.3	
			9	송담리 853-9	372.1	
			10	송담리 853-10	372.1	
			11	송담리 853-11	367.3	
			12	송담리 853-12	490.1	
			13	송담리 853-13	497.8	
			82	6,539.7	1	송담리 854-1
	2	송담리 854-2			398.6	
	3	송담리 854-3			395.0	
	4	송담리 854-4			408.9	
	5	송담리 854-5			409.0	
	6	송담리 854-6			453.8	
	7	송담리 854-7			330.6	
	8	송담리 854-8			428.8	
	9	송담리 854-9			345.8	
	10	송담리 854-10			441.4	
	11	송담리 854-11			331.4	
	12	송담리 854-12			336.3	
	13	송담리 854-13			336.3	
	14	송담리 854-14			389.6	
	15	송담리 854-15			368.5	
	16	송담리 854-16			405.7	
	17	송담리 854-17			330.9	
	83	3,497.8	1	송담리 855-1	496.4	
			2	송담리 855-2	559.8	
			3	송담리 855-3	981.4	
			4	송담리 855-4	564.2	
5			송담리 855-5	448.0		
6			송담리 855-6	448.0		
84	2,473.7	1	송담리 856-1	1,461.0		
		2	송담리 856-2	1,012.7		
85	3,242.5	1	송담리 857-1	1,085.4		
		2	송담리 857-2	1,084.0		
		3	송담리 857-3	1,073.1		
소계			-	-	33,639.3	

4) 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1	12	8,987.2	11	안중리 456-11	8,987.2	

5)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1	1	1,592.3	6	안중리 456-11	1,592.3	
	50	479.8	2		479.8	
소계			-	-	2,072.1	

6)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도면1	68	23,200.0	1	송담리 838	11,085.2	초1
			2	송담리 839	12,114.8	중1
	소계		—	—	23,200.0	
	1	6,741.9	16	안중리 445-16	6,741.9	
	48	2,505.9	7	안중리 492-7	2,505.9	
	소계		—	—	9,247.8	
	19	993.8	7	안중리 463-5	994.3	
	27	666.6	8	안중리 471-8	661.6	
	45	993.0	8	안중리 489-1	993.1	
	64	1,075.2	7	송담리 834-1	1,074.2	
	72	1,010.4	9	송담리 843-6	1,004.4	
	81	1,475.0	7	송담리 853-7	1,474.5	
	소계			—	—	6,202.1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1	<R1> 1BL(1, 15), 4BL, 6BL, 28~29BL, 33BL(1), 55BL(1), 62~63BL, 73~74BL	R1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가구이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일반음식점), 타목(기원), 하목(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존치된 건축물은 기승인 용도로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2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불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은 기존의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한 대상에 한함 • 비주거용도는 1층에 한함 •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존치된 건물은 기승인 용도로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2> 1BL(2~5, 7~14), 2~3BL, 5BL, 7~11BL, 12BL(1~10), 13~16BL, 19BL(1~6), 20~26BL, 27BL(1~7,10~ 14) 30~32BL, 33BL(2~4), 34~39BL, 41~42BL, 44~47BL, 48BL(1~6), 49BL, 50BL(1,3~9), 51BL~54BL, 55BL(2~4), 56~61BL, 64~67BL, 69~72BL, 75~78BL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로 중 폭이 넓은 도로변을 전면방향으로 권장
		형태	• 외관 :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요소인 지붕, 담장, 대문의 형태와 색채는 통일감을 부여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지붕 : 박공 및 모임 등으로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색채	• -
		건축선	• 중로(12m이상)이상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2m 지정 • 소로(8m~12m미만)이상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1.5m 지정
		기타	• 공동개발 권장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1	79BL, 80BL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20% 이하 - 허용용적률 : 242% 이하 ※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 신청시 허용
		높이	27층 이하
		배치	- 일조, 채광확보를 위한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 권장 - 폭 20m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은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깝도록 배치 권장 - 부대시설/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은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집단배치 권장 - 분산상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에 의해 단지 내에 설치하는 분산상가 등은 단지 내 도로의 진출입구변에 배치되도록 권장
		형태	- 주동길이 : 주동길이는 기준층의 4호 규모 또는 50m 이내로 제한하여 위압감 해소 및 개방감 확보 - 피로티 - 저층부 보행통로 연결 및 휴게공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조성 - 통경확보, 보행통로 연결 등을 위하여 최소 2개층 이상을 설치 - 지붕 - 지붕은 형태는 통일감 형성을 위해 적절히 적용한다. - 담장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채	-
		건축선	중로 1-7호선과 중로 1-8호선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5m 지정
		기타	- 세대수 변경없음, 공동개발 가능 - 경기도 주택조례에 적합하도록 계획함을 원칙으로 함. (단, 단지의 입지여건 및 지역특 성 등으로 경기도 주택조례를 따르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공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 결과에 따른다.)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다.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1	17~18BL, 40BL, 43BL, 81~85BL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1가구이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바닥면적 1,000㎡이상),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라목 검사장, 마목 매매장, 바목 정비공장, 사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포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최저층수 3층)
		배치	- 주변 건물과의 조화 및 보행의 주출입구는 전면도로 방향, 차량의 출입구는 이면도로 방향으로 설치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계획
		형태	- 외관 - 입체감 증진을 위해 돌출 또는 후퇴 디자인을 권장 1층 개구부와 1층 층고를 가급적 주변의 건축물과 일치 - 외장재는 3종류 이내로 하며 3면에 동일 재료를 사용 - 지붕 : 경사형 지붕 설치를 권장 -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별도의 설치공간 확보)
		색채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선택
		건축선	- 중로(12m이상)이상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2m 지정 - 소로(8m~12m미만)이상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1.5m 지정
		기타	• 공동개발 및 공동차량 출입구 설치 권장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라.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1	68BL	용도	■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학교 배치시 남측에 운동장을 설치토록 계획
		형태	-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처리 - 지붕 : 옥상녹화 또는 옥상조경을 권장 함 - 담장 :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체육 활동 시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함 -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채	• -
		건축선	• 중로1-7호선에 건축한계선 3m 지정, 중로1-8호선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5m 지정
		기타	• -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마. 공공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용지(중복결정)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7	1BL (16),	공공청사 용도	■ 허용용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목(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목(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 허용용도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공통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이	• 5층 이하
		배치	• -
		형태	•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처리 • 지붕 : 옥상녹화 또는 옥상조경을 권장 함 • 담장 : 담장 설치는 금지 •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채	• -
		건축선	• -
		기타	• -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바.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1	48BL(7)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
		형태	•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처리 • 지붕 : 옥상녹화 또는 옥상조경을 권장 함 • 담장 : 담장 설치는 금지 •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채	• -
		건축선	• -
		기타	• -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사. 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1	12BL(11)	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일반업무) 및 부속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
		형태	-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처리 - 지붕 : 옥상녹화 또는 옥상조경을 권장함 -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채	• -
		건축선	•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1.5m 지정
		기타	• -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아.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1	48BL(7)	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부속시설, 노유자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
		형태	• -
		색채	• -
		건축선	•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2m 지정
		기타	• -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자. 주차장용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1	19BL(7), 27BL(8), 45BL(8), 64BL(7), 72BL(7)	용도	P	■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사무소 등 주차장 관련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처리 - 지붕 : 옥상녹화 또는 옥상조경을 권장 함 - 담장 : 담장 설치는 금지 -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채		-
		건축선		-
		기타		-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1	81BL(7)	용도	Pa	■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용용도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 서점,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 사진판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사무소 등 주차장 관련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용용도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 서점,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사진판표구점·학원, 교습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사무소 등 주차장 관련시설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	
		형태	●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처리 ● 지붕 : 옥상녹화 또는 옥상조경을 권장 함 ● 담장 : 담장 설치 금지 ●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채	● -	
		건축선	● -	
		기타	● -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도면1	단독 주택 용지	■ 차량의 출입구 • 간선도로변으로부터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공공용지 및 간선가로 외에 다른 집한 도로가 없는 경우는 예외) •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와 면한 경우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 주차장 설치기준 •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평택시 주차장조례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며 기계식 주차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옥외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자갈박기나 잔디 블록 등 친환경적 소재의 이용을 권장한다. • 단독주택의 개별차고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지 않으며, 주 건축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인접대지와 공동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 대하여는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보도의 높이와 일치하고 보도와 같은 형태로 조성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대지 내 공지 및 옥외마당은 가급적 인접한 필지와 마주보도록 하고 전면도로변에 공지가 조성되도록 권장한다. • 대지 내 조경을 하는 경우는 가급적 전면도로변에 조성하여 보행가로변의 쾌적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또는 보행자의 진출입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 대지 내 조정 및 옥외마당 •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으며, 설치시 투시형(1.5m) 담장 설치를 권장 ■ 공동개발 • 간선도로 각각부 블록 내부에 위치한 필지로서 차량진출입이 곤란한 필지 및 부정형(요철형, 세장비 과다,파소형)필지 등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예상되는 경우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별표4]의 옥외 광고물에 관한계획 참조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도면 1	79BL 80BL	■ 차량의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하며, 중로이상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한다. •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공지를 해제할 경우 차량이 보행에 지장이 주지 않도록 교차부에 험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4]의 옥외 광고물에 관한계획 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단지내 도로 •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보행자 통로 • 단지 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등 보행유발요소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공동주택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5대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지엽이 치밀하고 잎이 넓은 상록, 낙엽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며, 주요 식재 수종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조성토록 한다. ■ 공동개발 • 공동주택의 특성상 토지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3) 준주거/업무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도면1	준주거 용지 17BL 18BL 40BL 43BL 81BL ~ 85BL 업무 용지 12BL (12)	■ 보행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를 3cm이하로 한다. •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30cm 전면에 점형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 •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차량 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좁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공동출입구를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준주거 용지내 부설주차장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도로에 접한 건축물 전면부에 배치를 금지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옥외 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 각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또는 벽면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녹지 또는 보도로 조성한다. 다만 차량 또는 보행자의 진출입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별표4]의 옥외 광고물에 관한계획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교차점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개발 · 간선도로 가각부 블록 내부에 위치한 필지로서 차량진출입이 곤란한 필지 및 부정형(요철형, 세장비 과다·과소형)필지 등 토지이용의 비효율이 예상되는 경우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4)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도면1	주차장 19BL(7) 30BL(7) 45BL(8) 64BL(7) 72BL(9) 81BL(7) 학교 68BL 공공 청사 1BL (16) 48BL (7) 종교 시설 1BL(6) 50BL(2)	■ 차량 출입구 ·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 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 유효 폭을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총면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 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에 2m의 차폐조경을 설치해 환경을 보호 하여야 한다. ■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부분은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II.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당 초	변 경
제4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② 주차장 1. 허용용도 12. (2) 준주거지역내 주차장 용지 : 제1종근린 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 서점,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 사진관·표구점·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제4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2조 (건축물의 용도) ② 주차장 1. 허용용도 13. (2) 준주거지역내 주차장 용지 : 제1종근린 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 서점,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사진관·표구점·학원, 교습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illegible]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38	주간선 도로	14,615 (2,007)	합정동 46-4도 1호광장	신리 290-1도 도시지역계	일반 도로		경고제2000-53호 (2000.3.3)	
기정	대로	1	5	41	주간선 도로	3,609 (1,548)	용이동394-3 대로1-2	죽백동553-3 15호광장	일반 도로		경고제2000-53호 (2000.3.3)	
기정	대로	1	26	38	주간선 도로	40	죽백동650-15 대로1-5	죽백동6234-4	일반 도로		평고제2020-578호 (2020.10.15.)	
기정	대로	2	1	34	보조간선 도로	1,122	대로1-2	대로2-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대로	2	2	34	보조간선 도로	2,910 (1,870)	대로1-6	대로1-3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대로	2	3	30	보조간선 도로	2,780 (469)	대로2-2	대로3-30	일반 도로		경고제2000-53호 (2000.3.3)	
기정	대로	2	4	30	보조간선 도로	1,003	대로3-3	대로2-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대로	2	5	30	보조간선 도로	1,003	대로1-7	대로3-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대로	3	1	27	보조간선 도로	513	대로2-1	대로3-20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대로	3	2	27	보조간선 도로	785	대로1-2	대로3-3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대로	3	3	27	보조간선 도로	889	대로1-2	대로2-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대로	3	4	27	보조간선 도로	1,196	중로1-9	대로2-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대로	3	5	27	보조간선 도로	370	대로3-2	대로2-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대로	3	41	25	보조간선 도로	76	동삭동168-4 중로1-55	비전동380-16 중로1-1	일반 도로		평고제2020-578호 (2020.10.15.)	
기정	중로	1	1	24	집산도로	462	대로2-1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1	2	24	집산도로	321	대로3-3	대로2-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1	3	24	집산도로	545	대로3-2	대로3-3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1	4	23	집산도로	423	대로2-2	대로3-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1	5	23	집산도로	126	중로1-4	대로3-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1	6	24	집산도로	511	대로2-2	대로3-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1	7	24	집산도로	614	대로3-4	대로2-3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1	8	24	집산도로	623	대로2-5	중로1-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1	10	23	집산도로	56	중로1-4	중로2-31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680	대로1-2	중로1-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3	중로2-1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332	중로1-1	대로3-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431	대로3-1	대로2-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9	대로3-1	비전동 968대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6	16	국지도로	29	중로3-16	대로2-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7	16	국지도로	30	중로3-16	대로2-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8	16	국지도로	40	주차장4	중로3-1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9	18	국지도로	7	대로3-3	비전동 1011대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10	18	국지도로	27	대로3-3	비전동 1081대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8	대로3-3	학교3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12	18	국지도로	27	죽백동 737대	대로3-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13	18	국지도로	7	대로3-4	죽백동 820도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14	15	국지도로	128	중로1-7	죽백동 727중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15	15	국지도로	10	대로3-2	학교9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17	15	국지도로	10	중로1-6	학교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19	18	국지도로	150	중로1-4	중로1-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20	18	국지도로	277	중로1-4	중로1-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21	18	국지도로	37	중로2-20	대로3-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22	18	국지도로	385	중로1-8	중로1-8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23	15	국지도로	493	중로1-8	대로2-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24	15	국지도로	7	대로2-5	죽백동 814대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25	18	국지도로	182	대로3-4	중로3-24	일반 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중로	2	26	18	국지도로	7	대로2-5	죽백동 817대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27	18	국지도로	7	대로2-5	죽백동 816대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28	18	국지도로	7	대로2-5	죽백동 815대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29	18	국지도로	7	대로2-4	비전동 1011대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2	30	18	국지도로	440	대로3-4	중로2-25	일반 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중로	2	31	18	국지도로	206	중로2-33	중로2-33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중로	2	32	18	국지도로	60	중로2-31	중로2-33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중로	2	33	18	국지도로	310	중로2-31	비전동 1104대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중로	2	34	15	국지도로	27	중로1-8	중로3-20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5	17	국지도로	60	중로1-1	중로3-22	일반 도로		경고제2015-70호 (2015.05.04)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0	학교1	중로1-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87	대로2-1	소로2-1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3	13	국지도로	29	소로2-11	대로3-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4	13	국지도로	134	중로1-2	소로3-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5	13	국지도로	130	중로1-3	소로3-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6	12~ 15.8	국지도로	156	대로3-3	비전동 1029-1종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15	학교7	대로3-3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8	13	국지도로	164	중로1-6	중로1-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9	13	국지도로	142	중로1-8	중로2-23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10	12	국지도로	76	중로3-20	소로1-20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73	대로1-2	대로2-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15	13	국지도로	71	중로1-1	수변공원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16	13	국지도로	86	중로2-6	중로2-7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17	13	국지도로	81	중로3-16	중로3-1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중로	3	18	13	국지도로	33	대로3-5	소로2-20	일반 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중로	3	19	13	국지도로	63	소로1-9	중로3-8	일반 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중로	3	20	13	국지도로	152	중로2-23	소로2-58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중로	3	21	12	국지도로	92	소로1-21	소로3-100(99)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중로	3	22	12	국지도로	37	중로2-35	사회복지1	일반 도로		경고제2015-70호 (2015.05.04)	
기정	중로	3	23	13	국지도로	176	대로3-4	중로2-30	일반 도로		경고제2015-70호 (2015.05.04)	
기정	중로	3	24	13	국지도로	82	중로2-25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경고제2015-70호 (2015.05.04)	
기정	중로	3	25	13.5	국지도로	216	대로3-4	중로2-25	일반 도로		경고제2015-70호 (2015.05.04)	
기정	중로	3	26	14	국지도로	54	중로2-25	중로3-25	일반 도로		경고제2015-70호 (2015.05.04)	
기정	중로	3	27	14	국지도로	36	중로1-7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경고제2015-70호 (2015.05.04)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4	중로1-2	소로2-1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40	소로2-12	소로2-13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1	중로1-3	소로2-1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5	소로2-16	소로2-17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69	중로1-3	소로2-17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28	대로3-2	소로2-4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32	대로3-5	소로2-20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08	중로1-6	소로2-3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06	소로2-35	죽백동 745대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77	중로3-8	소로2-3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82	소로2-1	대로3-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57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94	중로3-2	소로2-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59	소로2-1	소로1-1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88	소로1-14	대로3-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72	교통광장15	대로1-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82	중로3-25	완충녹지12	일반 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125	소로2-62	소로1-21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223	중로2-23	소로3-76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1	22	11	국지도로	20	중로2-23	소로2-62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1	23	11.5	국지도로	39	대로1-2	대로3-2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1	24	10.5	국지도로	22	중로1-3	대로3-2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1	179	10	국지도로	46	대로1-6	대로2-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602	소로1-14	소로1-1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4	소로2-1	소로2-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46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224	소로1-16	소로1-1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88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1	소로1-14	소로2-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48	소로2-1	소로1-1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52	소로2-1	소로1-14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50	소로1-14	소로2-1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50	소로1-14	소로2-1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20	비전동996대	소로1-1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264	중로3-4	수변공원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203	중로3-4	소로2-1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45	중로3-4	소로2-13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30	소로2-17	중로3-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213	소로1-5	중로3-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414	소로2-18	중로3-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172	어린이공원10	소로1-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90	완충녹지9	대로3-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407	소로2-26	소로2-4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17	소로2-45	소로2-2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289	소로2-24	소로2-4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33	소로2-22	소로2-4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77	소로2-20	소로2-4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41	소로2-45	소로2-2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58	소로2-45	소로2-2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7	8	국지도로	36	소로2-28	소로2-20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155	소로2-45	소로2-20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41	소로2-20	소로2-28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248	소로1-9	소로1-10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80	소로2-35	소로2-30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32	8	국지도로	77	중로3-8	소로2-3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91	소로1-9	소로2-3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35	8	국지도로	318	소로2-30	중로3-8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361	중로2-22	중로2-2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100	소로2-36	소로2-39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8	8	국지도로	99	소로2-36	소로2-39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83	소로2-36	소로2-3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40	8	특수도로	47	중로1-5	수변공원6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41	8	특수도로	40	대로1-6	중로2-33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42	8	특수도로	71	중로1-4	중로2-20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43	8	특수도로	37	중로2-20	대로3-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44	8	일반도로	89	중로1-7	완충녹지1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45	8	국지도로	379	소로2-20	학교9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46	8	국지도로	501	소로2-45	소로2-20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2	47	8	국지도로	11	소로2-20	소로2-49	일반 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소로	2	48	8	국지도로	99	소로2-24	소로2-46	일반 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소로	2	49	8	특수도로	20	대로3-5	소로2-47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소로	2	50	8	특수도로	42	중로2-14	근린공원3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소로	2	710	8	국지도로	39	대로1-6	중로2-33	일반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52	8	특수도로	96	중로2-33	중로2-3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53	8	특수도로	42	대로2-2	중로2-33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54	8	특수도로	33	중로2-33	소로2-5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55	8	특수도로	39	소로2-52	중로2-3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56	8	특수도로	65	중로1-4	중로2-3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57	8	특수도로	33	중로2-31	수변공원6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58	8	국지도로	58	중로3-20	소로1-21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59	소로2-61	소로2-62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60	8	국지도로	194	중로3-21	소로1-21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61	8	국지도로	105	소로1-21	소로2-62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62	8	국지도로	290	중로3-20	소로1-21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64	8	국지도로	90	중로3-10	소로2-62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65	8	국지도로	49	중로3-10	소로1-21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66	8	국지도로	33	소로1-20	소로2-61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7	8	국지도로	51	소로2-59	소로2-62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68	8	국지도로	59	중로3-21	소로2-70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69	8	국지도로	35	소로2-70	소로2-60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2	70	8	국지도로	86	소로1-21	소로2-60	일반 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8	수변공원1	소로2-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20	소로2-1	완충녹지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20	완충녹지5	소로2-1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5	중로3-4	소로3-42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8	중로3-5	소로3-43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9	소로3-63	소로2-30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18	소로2-35	소로3-71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8	소로3-80	소로2-36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8	소로2-46	소로3-8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8	소로3-86	소로2-45	일반 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166	어린이공원3	중로2-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100	근린공원1	어린이공원3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235	어린이공원3	중로1-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229	대로2-1	중로1-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62	중로1-1	수변공원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18	6	특수도로	18	수변공원1	소로2-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19	6	특수도로	36	소로1-16	소로2-6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20	6	특수도로	18	소로2-1	수변공원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21	6	특수도로	31	소로2-1	어린이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22	6	특수도로	30	소로2-4	대로3-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23	6	특수도로	214	대로3-1	어린이공원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24	6	특수도로	18	수변공원1	소로2-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36	소로2-3	소로1-1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17	소로2-1	중로2-3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204	중로2-4	어린이공원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28	6	특수도로	202	어린이공원1	대로2-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29	6	특수도로	227	대로3-3	대로2-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31	6	특수도로	27	소로2-11	대로3-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32	6	특수도로	28	중로3-17	대로2-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33	6	특수도로	18	소로2-13	수변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34	6	특수도로	11	수변공원2	중로2-8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35	6	특수도로	29	중로2-8	대로2-4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36	6	특수도로	36	중로3-4	소로2-14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37	6	특수도로	21	대로3-3	중로3-4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38	6	특수도로	21	중로3-5	대로3-3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39	6	특수도로	32	소로2-17	중로3-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40	6	특수도로	19	중로1-2	중로3-4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41	6	특수도로	19	중로1-3	중로3-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42	6	특수도로	12	소로3-5	수변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43	6	특수도로	10	소로3-6	수변공원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44	6	특수도로	22	중로1-3	소로2-16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45	6	특수도로	18	소로2-17	수변공원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46	6	특수도로	98	근린공원1	중로3-6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49	6	특수도로	20	소로2-16	소로2-17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50	6	특수도로	18	소로2-17	수변공원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51	6	특수도로	28	수변공원6	소로2-4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52	6	특수도로	30	소로2-45	소로2-2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53	6	특수도로	18	소로2-46	근린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54	6	특수도로	33	소로2-22	소로2-46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55	6	특수도로	18	소로2-46	근린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56	6	특수도로	18	소로2-46	근린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61	6	특수도로	34	대로2-2	소로2-30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소로	3	62	6	특수도로	35	소로2-30	소로1-9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가정	소로	3	63	6	특수도로	6	중로1-6	소로3-8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64	6	특수도로	33	소로2-33	소로2-3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65	6	특수도로	36	중로3-8	소로2-33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66	6	특수도로	36	소로2-32	소로1-1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67	6	특수도로	20	중로1-6	중로3-8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68	6	특수도로	77	소로2-35	소로2-3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69	6	특수도로	25	중로1-6	소로2-3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70	6	특수도로	337	대로2-2	수변공원3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71	6	특수도로	115	중로1-6	소로3-70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72	6	특수도로	18	소로2-35	소로3-7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76	6	특수도로	27	중로1-8	소로1-2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77	6	특수도로	24	소로2-36	중로1-8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78	6	특수도로	6	근린공원5	소로2-36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79	6	특수도로	16	근린공원5	소로2-36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80	6	특수도로	6	근린공원5	소로3-10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81	6	특수도로	110	동측지구계	어린이공원1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82	6	특수도로	26	중로1-8	중로3-9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83	6	특수도로	57	근린공원5	중로2-2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84	6	특수도로	28	소로2-37	소로2-36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85	6	특수도로	10	소로3-11	근린공원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86	6	특수도로	20	대로3-2	소로3-1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87	6	특수도로	38	소로2-28	소로2-20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88	6	특수도로	132	어린이공원11	대로2-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89	6	특수도로	40	근린공원1	중로2-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90	6	특수도로	37	대로3-2	수변공원4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소로	3	91	6	특수도로	25	소로3-92	대로2-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가정	소로	3	92	6	국지도로	8	소로2-46	소로3-9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가정	소로	3	93	6	특수도로	19	수변공원1	소로2-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가정	소로	3	94	6	국지도로	10	소로2-60	소로3-95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가정	소로	3	95	6	특수도로	9	중로2-23	소로3-94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가정	소로	3	96	6	특수도로	20	중로2-23	소로2-62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가정	소로	3	97	6	특수도로	27	중로1-8	중로3-20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가정	소로	3	98	6	특수도로	25	대로2-5	소로2-60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가정	소로	3	99	6	특수도로	25	대로2-5	중로3-21	보행자 전용도로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가정	1	노외주차장	비전동 978주	524.9	-	524.9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2	노외주차장	비전동 987주	499.6	-	499.6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3	노외주차장	비전동 994주	849.5	-	849.5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4	노외주차장	비전동 1013-1주	2,299.3	-	2,299.3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5	노외주차장	비전동 1026-2주	899.4	-	899.4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6	노외주차장	비전동 1073주	509.0	-	509.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7	노외주차장	비전동 1083주	1,477.6	-	1,477.6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8	노외주차장	비전동 1041 차	1,137.2	-	1,137.2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9	노외주차장	비전동 1066 차	3,014.7	-	3,014.7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10	노외주차장	죽백동 752 차	873.5	-	873.5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11	노외주차장	죽백동 759 차	1,143.0	-	1,143.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12	노외주차장	비전동 1097 차	1,022.8	-	1,022.8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13	노외주차장	비전동 1092-2 차	1,775.4	-	1,775.4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14	노외주차장	비전동 1001-3차	1,983.1	-	1,983.1	경고제2015-70호 (2015.05.04)	
가정	15	노외주차장	죽백동 770 차	490.3	-	490.3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16	노외주차장	죽백동 804 차	861.4	-	861.4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17	노외주차장	비전동 1058 차	1,329.5	-	1,329.5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18	노외주차장	비전동 1106 차	1,858.0	-	1,858.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19	노외주차장	죽백동 787 차	1,143.8	-	1,143.8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20	노외주차장	죽백동 771-2 차	497.1	-	497.1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가정	21	노외주차장	죽백동 734-2 차	2,154.5	-	2,154.5	경고제2015-70호 (2015.5.4)	
가정	22	노외주차장	죽백동 799 대	-	-	3,198.6	평고제2026-217호 (2026.06.19.)	
가정	120	노외주차장	비전동 1099 공	4,500.0	-	4,500.0	평고제2021-406호 (2021.9.24)	수변공원6 중복결정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광장 : 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광장	—	8개소	6,819.1 (149.2)	—	6,819.1 (149.2)	—	
소계	—	광장	교통광장	6개소	4,573.2 (149.2)	—	4,573.2 (149.2)	—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비전동 1112도	1,863.6	—	1,863.6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비전동 1121도	85.6	—	85.6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3	광장	교통광장	비전동 1121도	482.6 (149.2)	—	482.6 (149.2)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4	광장	교통광장	비전동 1111도	322.5	—	322.5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5	광장	교통광장	죽백동 825도	1,195.0	—	1,195.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40	광장	교통광장	비전동 1111도	623.9	—	623.9	평고제2022-67호 (2022.2.23.)	
소계	—	광장	일반광장	2개소	2,245.9	—	2,245.9	—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비전동 1011-2공	1,688.9	—	1,688.9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비전동 1014공	557.0	—	557.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나.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 원	근린공원	비전동 1028-3 공	58,427.8	—	58,427.8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2	공 원	근린공원	비전동 1035 공	36,853.9	—	36,853.9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3	공 원	근린공원	죽백동 728 공	42,417.7	—	42,417.7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4	공 원	근린공원	죽백동 764 공	44,947.1	—	44,947.1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5	공 원	근린공원	죽백동 800 공	277,160.0	—	277,160.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도서관1 포함
기정	1	공 원	수변공원	비전동 999 공	39,020.4	—	39,020.4	경고제2007-382호 (2007.11.7)	유수지1 포함
기정	2	공 원	수변공원	비전동 1016 공	11,225.8	—	11,225.8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3	공 원	수변공원	죽백동 737-2 공	11,408.5	—	11,408.5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4	공 원	수변공원	비전동 1032 공	19,800.9	—	19,800.9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공 원	수변공원	비전동 1069 공	18,970.1	-	18,970.1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6	공 원	수변공원	비전동 1093 공	23,890.5	-	23,890.5	경고제2007-382호 (2007.11.7)	노외주차장120 포함
기정	7	공 원	수변공원	비전동 966 공	23,338.8	-	23,338.8	경고제2007-382호 (2007.11.7)	유수지2 포함
기정	1	공 원	어린이공원	비전동 969 공	3,344.6	-	3,344.6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2	공 원	어린이공원	비전동 981 공	1,510.4	-	1,510.4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3	공 원	어린이공원	비전동 1004-1 공	1,933.8	-	1,933.8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4	공 원	어린이공원	비전동 1020 공	1,514.6	-	1,514.6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5	공 원	어린이공원	죽백동 720-1 공	1,874.0	-	1,874.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6	공 원	어린이공원	죽백동 722-1 공	1,906.4	-	1,906.4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7	공 원	어린이공원	죽백동 748 공	1,776.1	-	1,776.1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8	공 원	어린이공원	비전동 1047 공	1,683.4	-	1,683.4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9	공 원	어린이공원	비전동 1075 공	1,525.9	-	1,525.9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10	공 원	어린이공원	비전동 1087 공	2,155.0	-	2,155.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11	공 원	어린이공원	죽백동 816-4 공	1,644.3	-	1,644.3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12	공 원	어린이공원	죽백동 778-1 공	1,562.3	-	1,562.3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다.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비전동 967-1 공	12,283.9	-	12,283.9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비전동 976-7 공	3,699.4	-	3,699.4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비전동 1008-1 공	5,141.5	-	5,141.5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비전동 1011-1 공	11,258.0	-	11,258.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5	녹 지	완충녹지	비전동 1017-7 공	1,156.0	-	1,156.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6	녹 지	완충녹지	비전동 1028-1 공	6,012.0	-	6,012.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7	녹 지	완충녹지	죽백동 721-1 공	14,848.1	-	14,848.1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8	녹 지	완충녹지	죽백동 737-1 공	7,929.3	-	7,929.3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9	녹 지	완충녹지	비전동 1057-9 공	8,002.1	-	8,002.1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1	녹 지	완충녹지	비전동 1088-1 공	4,585.1	-	4,585.1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12	녹 지	완충녹지	죽백동 725-1 공	18,114.0	-	18,114.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13	녹 지	완충녹지	죽백동 765 공	2,627.2	-	2,627.2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14	녹 지	완충녹지	죽백동 799-1 공	539.5	-	539.5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15	녹 지	완충녹지	죽백동 814-2 공	23,129.3	-	23,129.3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16	녹 지	완충녹지	비전동 1000-1 공	1,194.0	-	1,194.0	경고제2015-70호 (2015.5.4)	
기정	1	녹 지	경관녹지	비전동 1022-7 공	1,138.5	-	1,138.5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2	녹 지	경관녹지	비전동 1076-4 공	1,764.7	-	1,764.7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3	녹 지	경관녹지	죽백동 741-3 공	684.1	-	684.1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4	녹 지	경관녹지	죽백동 802-7 공	855.5	-	855.5	경고제2009-238호 (2009.6.17)	
기정	5	녹 지	경관녹지	죽백동 785-5 공	351.9	-	351.9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비전동 968-1 공	20.0	-	20.0	평고제2026-217호 (2026.06.19.)	
기정	2	공공공지	비전동 968-1 공	25.0	-	25.0	평고제2026-217호 (2026.06.19.)	
기정	3	공공공지	비전동 1011-1 공	15.0	-	15.0	평고제2026-217호 (2026.06.19.)	
기정	4	공공공지	죽백동 721-1 공	20.0	-	20.0	평고제2026-217호 (2026.06.19.)	
기정	5	공공공지	죽백동 721-1 공	10.0	-	10.0	평고제2026-217호 (2026.06.19.)	
기정	6	공공공지	죽백동 721-1 공	10.0	-	10.0	평고제2026-217호 (2026.06.19.)	
기정	7	공공공지	비전동 1089-2 공	19.5	-	19.5	평고제2026-217호 (2026.06.19.)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가.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전1	전기공급설비	죽백동730-1 잡	3,155.2	-	3,155.2	경고제2007-382호 (2007.11.7)	

나. 송전선로(관로) : 변경없음

■ 송전선로(관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연 장 k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간선1	송전선로 (관로)	소사벌 변전소	대로 2-3	북측 완충녹지	1,022	1,937.0	경고제2015-70호 (2015.5.4)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 : 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문1	문화시설	문화시설	죽백동 797 대	9,100.9	-	9,100.9	경고제2007-382호 (2007.11.7)	

나.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1	학교	초등학교	비전동 1009 학	12,046.5	-	12,046.5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학3	학교	초등학교	비전동 1034 학	13,158.8	-	13,158.8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학4	학교	초·중 통합학교	죽백동 793 학	11,898.1	-	11,898.1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학5	학교	중학교	비전동 332-1 학	13,026.0	-	13,026.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학6	학교	중학교	죽백동 738 학	12,710.0	-	12,710.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학7	학교	고등학교	비전동 1088 학	13,881.0	-	13,881.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학8	학교	고등학교	죽백동 726 학	13,983.0	-	13,983.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학9	학교	중학교	비전동 1010 학	11,859.5	-	11,859.5	경고제2007-382호 (2007.11.7)	

다.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복 1	사회복지시설	비전동 1001-1 대	3,179.7	-	3,179.7	경고제2009-238호 (2009.6.17)	

라. 체육시설 : 변경없음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체1	체육시설	죽백동 794 체	5,823.0	-	5,823.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마.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죽백동 798 대	2,652.0	-	2,652.0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3	공공청사	죽백동 795 대	9,969.8	-	9,969.8	경고제2007-382호 (2007.11.7)	
기정	4	공공청사	비전동 1001-4 대	2,293.7	-	2,293.7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기정	5	공공청사	죽백동 724	3,393.0	-	3,393.0	경고제2017-1호 (2017.1.4.)	

바. 도서관 : 변경없음

■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도서관	죽백동 800 공	13,046.0	-	13,046.0	경고제2011-409호 (2011.12.30)	근린공원5 중복결정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가. 유수지 :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비전동 998유	17,085.9	-	17,085.9	경고제2007-382호 (2007.11.7)	수변공원1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비전동 966-4유	4,163.2	-	4,163.2	경고제2007-382호 (2007.11.7)	수변공원7 중복결정

6)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가. 하수종말처리장 : 변경없음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하수종말 처리장	비전동 1000 잡	16,945.4	-	16,945.4	경고제2007-382호 (2007.11.7)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합계		184,550.5	—	—	184,550.5	
D1-1	1	931.1	1	비전동 972-3 대	233.3	
			2	비전동 972-2 대	232.2	
			3	비전동 972-1 대	232.3	
			4	비전동 972 대	233.3	
	2	681.6	1	비전동 971-2 대	227.2	
			2	비전동 971-1 대	227.1	
			3	비전동 971 대	227.3	
	3	1,518.1	1	비전동 976 대	217.1	
			2	비전동 976-1 대	216.2	
			3	비전동 976-2 대	216.2	
			4	비전동 976-3 대	217.3	
			5	비전동 976-4 대	217.5	
			6	비전동 976-5 대	217.2	
			7	비전동 976-6 대	216.6	
	4	1,418.8	1	비전동 974-4 대	236.5	
			2	비전동 974-5 대	237.4	
			3	비전동 974 대	236.4	
			4	비전동 974-1 대	240.5	
			5	비전동 974-2 대	234.5	
	5	682.6	6	비전동 974-3 대	233.5	
			1	비전동 975-2 대	227.1	
			2	비전동 975-3 대	227.3	
	6	1,427.7	3	비전동 975 대	228.2	
			1	비전동 973 대	238.1	
			2	비전동 973-1 대	238.1	
			3	비전동 973-2 대	238.2	
			4	비전동 973-3 대	238.2	
			5	비전동 973-4 대	237.1	
	7	1,832.8	6	비전동 973-5 대	238.0	
			1	비전동 977 대	228.4	
			2	비전동 977-1 대	228.5	
			3	비전동 977-2 대	228.6	
			4	비전동 977-3 대	229.4	
			5	비전동 977-4 대	229.4	
			6	비전동 977-5 대	229.6	
			7	비전동 977-6 대	229.4	
			8	비전동 977-7 대	229.5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9	1,746.7	1	비전동 979-5 대	208.9	
			2	비전동 979-6 대	210.0	
			3	비전동 979-7 대	209.8	
			4	비전동 979 대	209.0	
			5	비전동 979-1 대	228.8	
			6	비전동 979-2 대	228.7	
			7	비전동 979-3 대	228.8	
			8	비전동 979-4 대	222.7	
	10	2,002.7	1	비전동 980 대	222.3	
			2	비전동 980-1 대	222.5	
			3	비전동 980-2 대	222.4	
			4	비전동 980-3 대	222.4	
			5	비전동 980-4 대	222.4	
			6	비전동 980-5 대	222.3	
			7	비전동 980-6 대	222.4	
			8	비전동 980-7 대	222.5	
			9	비전동 980-8 대	223.5	
	11	804.2	1	비전동 981-2 대	267.1	
			2	비전동 981-3 대	269.0	
			3	비전동 981-4 대	268.1	
D1-2	1	1,592.8	1	비전동 1017-6 대	227.2	
			2	비전동 1017-5 대	227.1	
			3	비전동 1017-4 대	228.2	
			4	비전동 1017-3 대	228.0	
			5	비전동 1017-2 대	227.1	
			6	비전동 1017-1 대	228.2	
			7	비전동 1017 대	227.0	
	2	1,267.0	1	비전동 1018 대	253.0	
			2	비전동 1018-1 대	253.0	
			3	비전동 1018-2 대	254.0	
			4	비전동 1018-3 대	253.0	
			5	비전동 1018-4 대	254.0	
	3	1,866.3	1	비전동 1019 대	213.0	
			2	비전동 1019-1 대	212.8	
			3	비전동 1019-2 대	212.8	
			4	비전동 1019-3 대	212.9	
			5	비전동 1019-4 대	253.5	
			6	비전동 1019-5 대	253.5	
			7	비전동 1019-6 대	253.5	
			8	비전동 1019-7 대	254.3	
	4	1,543.6	1	비전동 1022 대	220.4	
			2	비전동 1022-1 대	220.3	
			3	비전동 1022-2 대	220.4	
			4	비전동 1022-3 대	220.4	
			5	비전동 1022-4 대	220.4	
			6	비전동 1022-5 대	220.4	
			7	비전동 1022-6 대	221.3	
	5	2,223.5	1	비전동 1025 대	222.1	
			2	비전동 1025-1 대	221.0	
			3	비전동 1025-2 대	222.1	
			4	비전동 1025-3 대	222.1	
			5	비전동 1025-4 대	222.0	
			6	비전동 1025-5 대	222.0	
			7	비전동 1025-6 대	222.0	
			8	비전동 1025-7 대	222.0	
			9	비전동 1025-8 대	223.1	
			10	비전동 1025-9 대	225.1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6	763.4	1	비전동 1021 대	253.5	
			2	비전동 1021-1 대	253.6	
			3	비전동 1021-2 대	256.3	
	7	1,339.7	1	비전동 1024 대	222.1	
			2	비전동 1024-5 대	222.2	
			3	비전동 1024-4 대	222.1	
			4	비전동 1024-3 대	229.1	
			5	비전동 1024-2 대	222.1	
			6	비전동 1024-1 대	222.1	
			1	비전동 1023 대	217.7	
	8	1,728.0	2	비전동 1023-1 대	215.8	
			3	비전동 1023-2 대	215.8	
			4	비전동 1023-3 대	215.9	
			5	비전동 1023-4 대	215.7	
			6	비전동 1023-5 대	215.7	
			7	비전동 1023-6 대	215.7	
			8	비전동 1023-7 대	215.7	
	9	499.9	1	비전동 1026 대	242.0	
			2	비전동 1026-1 대	257.9	
D1-3	1	599.6	1	비전동 1072 대	299.9	
			2	비전동 1072-1 대	299.7	
	2	1,713.3	1	비전동 1071 대	213.7	
			2	비전동 1071-1 대	213.7	
			3	비전동 1071-2 대	214.7	
			4	비전동 1071-3 대	214.7	
			5	비전동 1071-4 대	214.2	
			6	비전동 1071-5 대	214.2	
			7	비전동 1071-6 대	214.0	
			8	비전동 1071-7 대	214.1	
	3	1,798.3	1	비전동 1074 대	221.9	
			2	비전동 1074-1 대	221.9	
			3	비전동 1074-2 대	221.8	
			4	비전동 1074-3 대	221.0	
			5	비전동 1074-7 대	227.9	
			6	비전동 1074-6 대	228.6	
			7	비전동 1074-5 대	227.6	
			8	비전동 1074-4 대	227.6	
	4	899.3	1	비전동 1076 대	227.8	
			2	비전동 1076-1 대	223.8	
			3	비전동 1076-2 대	223.9	
			4	비전동 1076-3 대	223.8	
	5	2,040.1	1	비전동 1078 대	226.9	
			2	비전동 1078-1 대	226.9	
			3	비전동 1078-2 대	226.9	
			4	비전동 1078-3 대	226.9	
			5	비전동 1078-4 대	226.9	
			6	비전동 1078-5 대	225.9	
			7	비전동 1078-6 대	225.9	
			8	비전동 1078-7 대	227.9	
			9	비전동 1078-8 대	225.9	
	6	1,002.2	1	비전동 1080 대	250.8	
			2	비전동 1080-1 대	250.8	
			3	비전동 1080-2 대	250.8	
			4	비전동 1080-3 대	249.8	
	7	703.1	1	비전동 1082 대	234.4	
			2	비전동 1082-1 대	234.4	
			3	비전동 1082-2 대	234.3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D1-3	8	831.3	1	비전동 1081 대	277.0	
			2	비전동 1081-1 대	277.0	
			3	비전동 1081-2 대	277.3	
	9	3,361.5	1	비전동 1079 대	240.8	
			2	비전동 1079-1 대	240.7	
			3	비전동 1079-2 대	240.7	
			4	비전동 1079-3 대	240.7	
			5	비전동 1079-4 대	240.8	
			6	비전동 1079-5 대	239.8	
			7	비전동 1079-6 대	239.7	
			8	비전동 1079-7 대	239.7	
			9	비전동 1079-8 대	240.7	
			10	비전동 1079-9 대	239.1	
			11	비전동 1079-10 대	239.1	
			12	비전동 1079-11 대	239.1	
			13	비전동 1079-12 대	241.3	
			14	비전동 1079-13 대	239.3	
	10	3,903.1	1	비전동 1084 대	238.5	
			2	비전동 1084-1 대	238.6	
			3	비전동 1084-2 대	238.6	
			4	비전동 1084-3 대	238.5	
			5	비전동 1084-4 대	238.6	
			6	비전동 1084-5 대	237.5	
			7	비전동 1084-6 대	238.0	
			8	비전동 1084-7 대	240.6	
			9	비전동 1084-16 대	223.6	
			10	비전동 1084-15 대	221.0	
			11	비전동 1084-14 대	221.9	
			12	비전동 1084-13 대	221.0	
			13	비전동 1084-12 대	221.0	
			14	비전동 1084-11 대	221.9	
			15	비전동 1084-10 대	221.0	
			16	비전동 1084-9 대	221.9	
			17	비전동 1084-8 대	220.9	
	11	2,947.8	1	비전동 1085 대	226.7	
			2	비전동 1085-1 대	226.7	
			3	비전동 1085-2 대	226.7	
			4	비전동 1085-3 대	226.7	
			5	비전동 1085-4 대	226.7	
			6	비전동 1085-5 대	226.8	
			7	비전동 1085-6 대	226.8	
			8	비전동 1085-7 대	226.8	
			9	비전동 1085-8 대	226.7	
			10	비전동 1085-9 대	226.7	
			11	비전동 1085-10 대	226.7	
			12	비전동 1085-11 대	226.7	
			13	비전동 1085-12 대	227.1	
D1-4	1	2,201.2	1	죽백동 745 대	222.1	
			2	죽백동 745-1 대	221.5	
			3	죽백동 745-2 대	221.0	
			4	죽백동 745-3 대	220.2	
			5	죽백동 745-4 대	218.7	
			6	죽백동 745-5 대	219.7	
			7	죽백동 745-6 대	218.8	
			8	죽백동 745-7 대	219.8	
			9	죽백동 745-8 대	218.7	
			10	죽백동 745-9 대	220.7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회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D1-4	2	1,980.0	1	죽백동 761 대	220.1	
			2	죽백동 761-1 대	219.3	
			3	죽백동 761-2 대	219.2	
			4	죽백동 761-3 대	220.2	
			5	죽백동 761-4 대	220.3	
			6	죽백동 761-5 대	219.2	
			7	죽백동 761-6 대	219.2	
			8	죽백동 761-7 대	220.2	
			9	죽백동 761-8 대	222.3	
	3	3,170.9	1	죽백동 746 대	235.5	
			2	죽백동 746-1 대	235.6	
			3	죽백동 746-2 대	235.6	
			4	죽백동 746-3 대	235.5	
			5	죽백동 746-4 대	234.6	
			6	죽백동 746-5 대	234.6	
			7	죽백동 746-6 대	234.6	
			8	죽백동 746-13 대	218.6	
			9	죽백동 746-12대	218.5	
			10	죽백동 746-11대	218.6	
			11	죽백동 746-10 대	217.5	
			12	죽백동 746-9 대	217.5	
			13	죽백동 746-8 대	217.6	
			14	죽백동 746-7 대	216.6	
	4	1,314.9	1	죽백동 747 대	218.8	
			2	죽백동 747-1 대	219.8	
			3	죽백동 747-2 대	219.1	
			4	죽백동 747-3 대	219.2	
			5	죽백동 747-4 대	219.4	
			6	죽백동 747-5 대	218.6	
	5	811.9	1	죽백동 739 대	270.3	
			2	죽백동 739-1 대	271.4	
			3	죽백동 739-2 대	270.2	
	6	596.7	1	죽백동 740 대	301.9	
			2	죽백동 740-1 대	294.8	
	7	1,352.5	1	죽백동 743 대	224.5	
			2	죽백동 743-1 대	225.5	
			3	죽백동 743-2 대	225.7	
			4	죽백동 743-3 대	225.6	
			5	죽백동 743-4 대	225.6	
			6	죽백동 743-5 대	225.6	
	8	1,216.5	1	죽백동 744 대	243.5	
			2	죽백동 744-1 대	242.6	
			3	죽백동 744-2 대	243.5	
			4	죽백동 744-3 대	243.4	
			5	죽백동 744-4 대	243.5	
	9	1,644.8	1	죽백동 751 대	270.2	
			2	죽백동 751-1 대	276.2	
			3	죽백동 751-2 대	276.1	
			4	죽백동 751-5 대	270.0	
			5	죽백동 751-4 대	276.2	
			6	죽백동 751-3 대	276.1	
	10	1,094.9	1	죽백동 750 대	248.6	
			2	죽백동 750-1 대	297.2	
			3	죽백동 750-3 대	251.7	
			4	죽백동 750-2 대	297.4	
	11	1,902.6	1	죽백동 755 대	221.2	
			2	죽백동 755-7 대	219.3	
			3	죽백동 755-6 대	218.2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회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4	죽백동 755-5 대	218.2	
			5	죽백동 755-1 대	257.0	
			6	죽백동 755-2 대	255.9	
			7	죽백동 755-3 대	256.8	
			8	죽백동 755-4 대	256.0	
	12	1,017.2	1	죽백동 749 대	205.6	
			2	죽백동 749-1 대	304.7	
			3	죽백동 749-3 대	250.5	
			4	죽백동 749-2 대	256.4	
	13	1,854.6	1	죽백동 756 대	212.5	
			2	죽백동 756-7 대	212.4	
			3	죽백동 756-6 대	211.6	
			4	죽백동 756-5 대	212.3	
			5	죽백동 756-1 대	250.2	
			6	죽백동 756-2 대	251.2	
			7	죽백동 756-3 대	252.2	
			8	죽백동 756-4 대	252.2	
	14	1,250.6	1	죽백동 758-3 대	293.3	
			2	죽백동 758-2 대	323.8	
			3	죽백동 758 대	305.4	
			4	죽백동 758-1 대	328.1	
	15	801.8	1	죽백동 741 대	267.0	
			2	죽백동 741-1 대	266.9	
			3	죽백동 741-2 대	267.9	
	16	260.7	1	죽백동 742 대	260.7	
	17	614.1	1	죽백동 760-1 대	307.0	
			2	죽백동 760 대	307.1	
D1-5	1	1,006.7	1	죽백동 801 대	251.0	
			2	죽백동 801-1 대	251.9	
			3	죽백동 801-2 대	251.9	
			4	죽백동 801-3 대	251.9	
	2	1,618.7	1	죽백동 802 대	231.9	
			2	죽백동 802-1 대	231.7	
			3	죽백동 802-2 대	231.8	
			4	죽백동 802-3 대	230.8	
			5	죽백동 802-4 대	230.8	
			6	죽백동 802-5 대	230.9	
			7	죽백동 802-6 대	230.8	
	3	1,151.7	1	죽백동 803 대	229.9	
			2	죽백동 803-1 대	230.9	
			3	죽백동 803-2 대	230.0	
			4	죽백동 803-3 대	230.9	
			5	죽백동 803-4 대	230.0	
	4	1,808.9	1	죽백동 805 대	227.9	
			2	죽백동 805-1 대	228.8	
			3	죽백동 805-2 대	228.9	
			4	죽백동 805-3 대	227.7	
	5	1,463.5	1	죽백동 807 대	244.6	
			2	죽백동 807-1 대	244.5	
			3	죽백동 807-2 대	244.6	
			4	죽백동 807-3 대	244.6	
			5	죽백동 807-4 대	244.6	
			6	죽백동 807-5 대	240.6	
	6	985.7	1	죽백동 806 대	246.2	
			2	죽백동 806-1 대	246.2	
			3	죽백동 806-2 대	246.1	
			4	죽백동 806-3 대	247.2	

도면 번호	가 구 번호	면적 (㎡)	회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7	1,835.1	1	죽백동 809 대	243.1	
			2	죽백동 809-1 대	242.2	
			3	죽백동 809-2 대	242.1	
			4	죽백동 809-3 대	243.2	
			5	죽백동 809-4 대	216.2	
			6	죽백동 809-5 대	216.1	
			7	죽백동 809-6 대	216.1	
			8	죽백동 809-7 대	216.1	
	8	1,504.1	1	죽백동 811-5 대	250.7	
			2	죽백동 811-4 대	249.6	
			3	죽백동 811-3 대	250.7	
			4	죽백동 811-2 대	250.6	
			5	죽백동 811-1 대	251.3	
			6	죽백동 811 대	251.2	
	9	1,415.7	1	죽백동 810 대	236.1	
			2	죽백동 810-1 대	235.0	
			3	죽백동 810-2 대	236.2	
			4	죽백동 810-3 대	236.1	
			5	죽백동 810-4 대	236.1	
			6	죽백동 810-5 대	236.2	
D1-6	1	771.8	1	죽백동 755 대	256.9	
			2	죽백동 755-1 대	256.9	
			3	죽백동 755-2 대	258.0	
	2	3,263.0	1	죽백동 774-12 대	251.1	
			2	죽백동 774-11 대	251.0	
			3	죽백동 774-10 대	250.9	
			4	죽백동 774-9 대	251.6	
			5	죽백동 774-8 대	250.9	
			6	죽백동 774-7 대	251.0	
			7	죽백동 774-6 대	250.9	
			8	죽백동 774-5 대	250.9	
			9	죽백동 774-4 대	251.1	
			10	죽백동 774-3 대	250.8	
			11	죽백동 774-2 대	251.0	
			12	죽백동 774-1 대	250.9	
			13	죽백동 774 대	250.9	
	3	1,687.1	1	죽백동 773 대	282.0	
			2	죽백동 773-1 대	281.1	
			3	죽백동 773-2 대	281.1	
			4	죽백동 773-3 대	281.0	
			5	죽백동 773-4 대	280.9	
			6	죽백동 773-5 대	281.0	
	4	987.3	1	죽백동 776 대	328.4	
			2	죽백동 776-1 대	329.4	
			3	죽백동 776-2 대	329.5	
	5	1,542.9	1	죽백동 777 대	252.6	
			2	죽백동 777-1 대	251.8	
			3	죽백동 777-2 대	251.8	
			4	죽백동 777-5 대	261.6	
			5	죽백동 777-4 대	262.3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6	2,020.9	6	죽백동 777-3 대	262.8	
			1	죽백동 779 대	242.0	
			2	죽백동 779-1 대	244.2	
			3	죽백동 779-2 대	244.2	
			4	죽백동 779-3 대	245.1	
			5	죽백동 779-7 대	256.1	
			6	죽백동 779-6 대	263.1	
			7	죽백동 779-5 대	263.0	
			8	죽백동 779-4 대	263.2	
	7	2,558.3	1	죽백동 781 대	247.2	
			2	죽백동 781-1 대	247.1	
			3	죽백동 781-2 대	246.0	
			4	죽백동 781-3 대	245.9	
			5	죽백동 781-4 대	246.9	
			6	죽백동 781-9 대	265.0	
			7	죽백동 781-8 대	264.9	
			8	죽백동 781-7 대	265.0	
			9	죽백동 781-6 대	265.3	
			10	죽백동 781-5 대	265.0	
	8	3,019.0	1	죽백동 783 대	241.9	
			2	죽백동 783-1 대	241.8	
			3	죽백동 783-2 대	241.8	
			4	죽백동 783-3 대	241.8	
			5	죽백동 783-4 대	240.8	
			6	죽백동 783-5 대	241.8	
			7	죽백동 783-11 대	261.8	
			8	죽백동 783-10 대	260.9	
			9	죽백동 783-9 대	261.8	
			10	죽백동 783-8 대	261.9	
			11	죽백동 783-7 대	261.9	
			12	죽백동 783-6 대	260.8	
	9	1,289.5	1	죽백동 780 대	209.7	
			2	죽백동 780-1 대	209.7	
			3	죽백동 780-2 대	209.8	
			4	죽백동 780-5 대	220.7	
			5	죽백동 780-4 대	219.9	
			6	죽백동 780-3 대	219.7	
	10	1,370.6	1	죽백동 782 대	220.8	
			2	죽백동 782-1 대	222.0	
			3	죽백동 782-2 대	220.0	
			4	죽백동 782-5 대	236.0	
			5	죽백동 782-4 대	235.9	
			6	죽백동 782-3 대	235.9	
	11	1,943.2	1	죽백동 784 대	234.2	
			2	죽백동 784-1 대	233.9	
			3	죽백동 784-2 대	234.1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4	죽백동 784-3 대	233.1	
			5	죽백동 784-7 대	252.0	
			6	죽백동 784-6 대	252.0	
			7	죽백동 784-5 대	251.9	
			8	죽백동 784-4 대	252.0	
	12	1,265.9	1	죽백동 785 대	254.1	
			2	죽백동 785-1 대	252.9	
			3	죽백동 785-2 대	252.9	
			4	죽백동 785-3 대	252.9	
			5	죽백동 785-4 대	253.1	
	13	1,692.0	1	죽백동 786 대	241.8	
			2	죽백동 786-1 대	241.9	
			3	죽백동 786-2 대	241.9	
			4	죽백동 786-3 대	241.8	
			5	죽백동 786-4 대	241.9	
			6	죽백동 786-5 대	241.9	
			7	죽백동 786-6 대	240.8	
	14	2,330.7	1	죽백동 792 대	294.1	
			2	죽백동 792-7 대	294.0	
			3	죽백동 792-6 대	293.0	
			4	죽백동 792-5 대	293.2	
			5	죽백동 792-1 대	289.1	
			6	죽백동 792-2 대	289.1	
			7	죽백동 792-3 대	289.2	
			8	죽백동 792-4 대	289.0	
	15	1,496.7	1	죽백동 788 대	234.7	
			2	죽백동 788-5 대	235.8	
			3	죽백동 788-4 대	235.9	
			4	죽백동 788-1 대	263.7	
			5	죽백동 788-2 대	263.9	
			6	죽백동 788-3 대	262.7	
	16	1,979.4	1	죽백동 791 대	257.3	
			2	죽백동 791-7 대	257.2	
			3	죽백동 791-6 대	257.5	
			4	죽백동 791-5 대	257.2	
			5	죽백동 791-1 대	237.3	
			6	죽백동 791-2 대	237.3	
			7	죽백동 791-3 대	237.3	
			8	죽백동 791-4 대	238.3	
	17	1,349.6	1	죽백동 789 대	270.3	
			2	죽백동 789-1 대	270.3	
			3	죽백동 789-2 대	270.3	
			4	죽백동 789-3 대	269.4	
			5	죽백동 789-4 대	269.3	
	18	991.2	1	죽백동 790 대	248.6	
			2	죽백동 790-1 대	247.5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D2-1			3	죽백동 790-2 대	247.6	
			4	죽백동 790-3 대	247.5	
	1	1,311.5	1	비전동 1036 대	218.5	
			2	비전동 1036-1 대	218.7	
			3	비전동 1036-2 대	218.5	
			4	비전동 1036-3 대	218.6	
			5	비전동 1036-4 대	218.6	
			6	비전동 1036-5 대	218.6	
	2	2,265.2	1	비전동 1037 대	226.5	
			2	비전동 1037-1 대	225.3	
			3	비전동 1037-2 대	225.6	
			4	비전동 1037-3 대	228.6	
			5	비전동 1037-4 대	226.8	
			6	비전동 1037-9 대	226.9	
			7	비전동 1037-8 대	226.0	
			8	비전동 1037-7 대	225.6	
			9	비전동 1037-6 대	227.7	
			10	비전동 1037-5 대	226.2	
	3	1,095.3	1	비전동 1038 대	218.5	
			2	비전동 1038-1 대	218.6	
			3	비전동 1038-2 대	218.4	
			4	비전동 1038-3 대	220.5	
			5	비전동 1038-4 대	219.3	
	4	1,264.6	1	비전동 1039 대	253.5	
			2	비전동 1039-1 대	252.6	
			3	비전동 1039-2 대	252.5	
			4	비전동 1039-3 대	252.5	
			5	비전동 1039-4 대	253.5	
	5	1,155.0	1	비전동 1044 대	231.1	
			2	비전동 1044-1 대	231.0	
			3	비전동 1044-2 대	231.1	
			4	비전동 1044-3 대	231.1	
			5	비전동 1044-4 대	230.7	
	6	2,790.2	1	비전동 1043 대	231.5	
			2	비전동 1043-1 대	232.3	
			3	비전동 1043-2 대	231.4	
			4	비전동 1043-3 대	232.1	
			5	비전동 1043-4 대	233.4	
			6	비전동 1043-5 대	232.1	
			7	비전동 1043-11 대	232.0	
			8	비전동 1043-10 대	233.2	
			9	비전동 1043-9 대	232.3	
			10	비전동 1043-8 대	233.4	
			11	비전동 1043-7 대	233.3	
			12	비전동 1043-6 대	233.2	
	7	1,675.2	1	비전동 1042 대	209.0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2	비전동 1042-1 대	209.0	
			3	비전동 1042-2 대	209.0	
			4	비전동 1042-3 대	209.1	
			5	비전동 1042-7 대	209.0	
			6	비전동 1042-6 대	212.1	
			7	비전동 1042-5 대	209.0	
			8	비전동 1042-4 대	209.0	
	8	1,122.7	1	비전동 1040 대	224.0	
			2	비전동 1040-1 대	225.0	
			3	비전동 1040-2 대	224.6	
			4	비전동 1040-3 대	225.4	
			5	비전동 1040-4 대	223.7	
	9	2,885.2	1	비전동 1048 대	240.6	
			2	비전동 1048-1 대	240.5	
			3	비전동 1048-2 대	239.4	
			4	비전동 1048-3 대	239.6	
			5	비전동 1048-4 대	240.5	
			6	비전동 1048-5 대	240.5	
			7	비전동 1048-6 대	239.5	
			8	비전동 1048-7 대	240.5	
			9	비전동 1048-8 대	240.4	
			10	비전동 1048-9 대	240.5	
			11	비전동 1048-10 대	241.5	
			12	비전동 1048-11 대	241.7	
	10	1,268.5	1	비전동 1045 대	253.0	
			2	비전동 1045-1 대	254.0	
			3	비전동 1045-2 대	254.0	
			4	비전동 1045-3 대	254.0	
			5	비전동 1045-4 대	253.5	
	11	2,971.8	1	비전동 1046 대	249.5	
			2	비전동 1046-1 대	249.5	
			3	비전동 1046-2 대	248.5	
			4	비전동 1046-3 대	248.6	
			5	비전동 1046-4 대	249.5	
			6	비전동 1046-5 대	248.3	
			7	비전동 1046-11 대	246.5	
			8	비전동 1046-10 대	246.5	
			9	비전동 1046-9 대	246.4	
			10	비전동 1046-8 대	246.6	
			11	비전동 1046-7 대	246.6	
			12	비전동 1046-6 대	245.3	
	12	1,556.7	1	비전동 1052 대	258.1	
			2	비전동 1052-1 대	258.2	
			3	비전동 1052-2 대	259.4	
			4	비전동 1052-5 대	260.3	
			5	비전동 1052-4 대	260.4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13	1,363.6	6	비전동 1052-3 대	260.3	
			1	비전동 1049 대	276.2	
			2	비전동 1049-1 대	262.6	
			3	비전동 1049-2 대	261.3	
			4	비전동 1049-4 대	281.8	
			5	비전동 1049-3 대	281.7	
	14	1,588.3	1	비전동 1050 대	268.8	
			2	비전동 1050-1 대	268.7	
			3	비전동 1050-2 대	269.0	
			4	비전동 1050-5 대	261.8	
			5	비전동 1050-4 대	261.1	
			6	비전동 1050-3 대	258.9	
	15	3,659.8	1	비전동 1060 대	234.9	
			2	비전동 1060-1 대	250.7	
			3	비전동 1060-2 대	250.7	
			4	비전동 1060-3 대	250.7	
			5	비전동 1060-4 대	250.7	
			6	비전동 1060-5 대	250.7	
			7	비전동 1060-6 대	250.7	
			8	비전동 1060-7 대	253.1	
			9	비전동 1060-14 대	268.8	
			10	비전동 1060-13 대	233.2	
			11	비전동 1060-12 대	232.9	
			12	비전동 1060-11 대	233.2	
			13	비전동 1060-10 대	233.2	
			14	비전동 1060-9 대	233.1	
			15	비전동 1060-8 대	233.2	
	16	2,172.4	1	비전동 1064 대	241.5	
			2	비전동 1064-1 대	241.5	
			3	비전동 1064-2 대	240.6	
			4	비전동 1064-3 대	240.5	
			5	비전동 1064-4 대	240.5	
			6	비전동 1064-5 대	240.5	
			7	비전동 1064-6 대	240.5	
			8	비전동 1064-7 대	241.8	
			9	비전동 1064-8 대	245.0	
	17	2,471.6	1	비전동 1055 대	243.4	
			2	비전동 1055-1 대	242.7	
			3	비전동 1055-2 대	242.7	
			4	비전동 1055-3 대	242.6	
			5	비전동 1055-4 대	243.7	
			6	비전동 1055-5 대	242.7	
			7	비전동 1055-6 대	242.8	
			8	비전동 1055-7 대	242.6	
			9	비전동 1055-8 대	244.7	
			10	비전동 1055-9 대	283.7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18	3,353.3	1	비전동 1054 대	240.1	
			2	비전동 1054-1 대	240.3	
			3	비전동 1054-2 대	240.4	
			4	비전동 1054-3 대	240.3	
			5	비전동 1054-4 대	240.3	
			6	비전동 1054-5 대	240.3	
			7	비전동 1054-6 대	244.8	
			8	비전동 1054-13 대	238.2	
			9	비전동 1054-12 대	238.3	
			10	비전동 1054-11 대	238.2	
			11	비전동 1054-10 대	238.3	
			12	비전동 1054-9 대	238.2	
			13	비전동 1054-8 대	238.6	
			14	비전동 1054-7 대	237.0	
	19	3,329.5	1	비전동 1053 대	241.9	
			2	비전동 1053-1 대	242.1	
			3	비전동 1053-2 대	242.2	
			4	비전동 1053-3 대	242.2	
			5	비전동 1053-4 대	242.2	
			6	비전동 1053-5 대	242.2	
			7	비전동 1053-6 대	243.0	
			8	비전동 1053-13 대	233.0	
			9	비전동 1053-12 대	233.2	
			10	비전동 1053-11 대	233.4	
			11	비전동 1053-10 대	233.3	
			12	비전동 1053-9 대	233.2	
			13	비전동 1053-8 대	233.4	
			14	비전동 1053-7 대	234.2	
	20	1,461.9	1	비전동 1056 대	243.9	
			2	비전동 1056-1 대	243.0	
			3	비전동 1056-2 대	243.0	
			4	비전동 1056-3 대	243.9	
			5	비전동 1056-4 대	244.0	
			6	비전동 1056-5 대	244.1	
	21	2,022.6	1	비전동 1059 대	255.6	
			2	비전동 1059-1 대	255.5	
			3	비전동 1059-2 대	255.6	
			4	비전동 1059-3 대	257.5	
			5	비전동 1059-7 대	246.7	
			6	비전동 1059-6 대	251.5	
			7	비전동 1059-5 대	249.7	
			8	비전동 1059-4 대	250.5	
	22	1,269.7	1	비전동 1061 대	316.9	
			2	비전동 1061-1 대	314.0	
			3	비전동 1061-3 대	319.9	
			4	비전동 1061-2 대	318.9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23	2,163.6	1	비전동 1057 대	240.3	
			2	비전동 1057-1 대	240.2	
			3	비전동 1057-2 대	240.3	
			4	비전동 1057-3 대	240.4	
			5	비전동 1057-4 대	240.3	
			6	비전동 1057-5 대	240.3	
			7	비전동 1057-6 대	240.3	
			8	비전동 1057-7 대	240.4	
			9	비전동 1057-8 대	241.1	
	24	944.0	1	비전동 1063 대	236.7	
			2	비전동 1063-1 대	235.8	
			3	비전동 1063-2 대	235.7	
			4	비전동 1063-3 대	235.8	
	25	566.4	1	비전동 1062 대	283.2	
			2	비전동 1062-1 대	283.2	
	26	723.7	1	비전동 1068 대	241.0	
			2	비전동 1068-1 대	239.3	
			3	비전동 1068-2 대	243.4	
	27	1,092.4	1	비전동 1067 대	216.8	
			2	비전동 1067-1 대	220.0	
			3	비전동 1067-2 대	217.3	
			4	비전동 1067-3 대	217.3	
			5	비전동 1067-4 대	221.0	
D2-2	1	2,530.5	1	비전동 982 대	229.8	
			2	비전동 982-1 대	229.8	
			3	비전동 982-2 대	229.6	
			4	비전동 982-3 대	229.7	
			5	비전동 982-4 대	230.5	
			6	비전동 982-5 대	230.7	
			7	비전동 982-6 대	230.7	
			8	비전동 982-7 대	230.6	
			9	비전동 982-8 대	230.5	
			10	비전동 982-9 대	230.5	
			11	비전동 982-10 대	228.1	
	2	1,770.5	1	비전동 983-5 대	221.1	
			2	비전동 983-6 대	220.0	
			3	비전동 983-7 대	222.9	
			4	비전동 983 대	222.2	
			5	비전동 983-1 대	222.1	
			6	비전동 983-2 대	222.0	
			7	비전동 983-3 대	220.1	
			8	비전동 983-4 대	220.1	
	3	1,069.4	1	비전동 987-3 대	267.5	
			2	비전동 987-4 대	267.4	
			3	비전동 987-1 대	267.0	
			4	비전동 987-2 대	267.5	
	4	1,343.7	1	비전동 984-4 대	203.2	
			2	비전동 984-5 대	202.3	
			3	비전동 984 대	202.3	
			4	비전동 984-1 대	244.6	
			5	비전동 984-2 대	245.7	
			6	비전동 984-3 대	245.6	
	5	1,963.8	1	비전동 986-5 대	235.7	
			2	비전동 986-6 대	234.8	
			3	비전동 986-7 대	234.6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4	비전동 986 대	234.6	
			5	비전동 986-1 대	256.8	
			6	비전동 986-2 대	255.8	
			7	비전동 986-3 대	255.7	
			8	비전동 986-4 대	255.8	
	6	2,337.5	1	비전동 985 대	233.7	
			2	비전동 985-1 대	233.7	
			3	비전동 985-2 대	232.9	
			4	비전동 985-3 대	233.0	
			5	비전동 985-4 대	233.8	
			6	비전동 985-5 대	232.9	
			7	비전동 985-6 대	232.9	
			8	비전동 985-7 대	233.8	
			9	비전동 985-8 대	233.8	
			10	비전동 985-9 대	237.0	
	7	1,621.7	1	비전동 988 대	232.1	
			2	비전동 988-1 대	231.1	
			3	비전동 988-2 대	231.0	
			4	비전동 988-3 대	231.1	
			5	비전동 988-4 대	232.2	
			6	비전동 988-5 대	232.1	
			7	비전동 988-6 대	232.1	
	8	1,769.7	1	비전동 989-5 대	222.7	
			2	비전동 989-6 대	223.7	
			3	비전동 989-7 대	223.0	
			4	비전동 989 대	219.5	
			5	비전동 989-1 대	217.5	
			6	비전동 989-2 대	222.7	
			7	비전동 989-3 대	220.3	
			8	비전동 989-4 대	220.3	
	9	1,764.6	1	비전동 993-5 대	221.3	
			2	비전동 993-6 대	220.2	
			3	비전동 993-7 대	220.4	
			4	비전동 993 대	220.3	
			5	비전동 993-1 대	221.4	
			6	비전동 993-2 대	220.4	
			7	비전동 993-3 대	221.3	
			8	비전동 993-4 대	219.3	
	10	1,958.9	1	비전동 990-5 대	249.9	
			2	비전동 990-6 대	250.8	
			3	비전동 990-7 대	251.9	
			4	비전동 990 대	250.9	
			5	비전동 990-1 대	238.8	
			6	비전동 990-2 대	238.9	
			7	비전동 990-3 대	238.9	
			8	비전동 990-4 대	238.8	
	11	1,525.4	1	비전동 992-4 대	264.1	
			2	비전동 992-5 대	267.0	
			3	비전동 992 대	266.2	
			4	비전동 992-1 대	245.0	
			5	비전동 992-2 대	241.5	
			6	비전동 992-3 대	241.6	
	12	1,435.1	1	비전동 991 대	237.5	
			2	비전동 991-1 대	238.5	
			3	비전동 991-2 대	238.5	
			4	비전동 991-3 대	238.5	
			5	비전동 991-4 대	238.4	
			6	비전동 991-5 대	243.7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합계		956,757.4	—	956,757.4	
A	A-1BL	51,572.8	비전동 1005 대	51,572.8	
	A-2BL	48,241.3	비전동 1004 대	48,241.3	
	A-3BL	57,919.4	비전동 1008 대	57,919.4	
	A-4BL	50,822.0	비전동 1028 대	50,822.0	
	A-5BL	31,921.9	죽백동 725 대	31,921.9	
	A-6BL	19,913.8	죽백동 815 대	19,913.8	
	A-7BL	12,710.0	비전동 1030 학	12,710.0	
B	B-1BL	37,662.1	비전동 970 대	37,662.1	
	B-2BL	41,853.9	비전동 967 대	41,853.9	
	B-3BL	56,271.3	비전동 1011 대	56,271.3	
	B-4BL	69,993.0	비전동 1089 대	69,993.0	
	B-5BL	51,068.3	비전동 968 대	51,068.3	
	B-6BL	51,284.1	비전동 1031 대	51,284.1	
	B-7BL	37,191.4	죽백동 722 대	37,191.4	
	B-8BL	42,179.3	죽백동 720 대	42,179.3	
	B-9BL	70,147.9	죽백동 721 대	70,147.9	
	B-10BL	45,314.6	죽백동 816 대	45,314.6	
	B-11BL	43,964.9	죽백동 737 대	43,964.9	
	B-12BL	22,597.7	죽백동 767 대	22,597.7	국토부고시 제2024-926호 (2024.12.30.)
C	C-1BL	54,279.3	죽백동 817 대	54,279.3	
S	S-2BL	59,848.4	죽백동 766 대	59,848.4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 호	위 치	면적 (㎡)	
합계		27,145.1	—	—	27,145.1	
근생1	1	518.2	1	비전동 995 대	518.2	
	2	2,052.8	1	비전동 996-3 대	410.6	
			2	비전동 996-2 대	410.5	
			3	비전동 996-1 대	411.7	
			4	비전동 996 대	820.0	
	3	1,907.0	1	비전동 1003-3 대	475.0	
			2	비전동 1003-2 대	476.0	
			3	비전동 1003-1 대	477.0	
4			비전동 1003 대	479.0		
근생2	1	600.9	1	비전동 1027-4 대	600.9	
	2	1,181.9	1	비전동 1027-3 대	589.0	
			2	비전동 1027-2 대	592.9	
	3	974.6	1	비전동 1027-1 대	479.3	
			2	비전동 1027 대	495.3	
	4	972.2	1	비전동 1070 대	488.3	
			2	비전동 1070-1 대	483.9	
	5	1,081.8	1	비전동 1070-2 대	547.8	
2			비전동 1070-3 대	534.0		
근생3	1	688.2	1	죽백동 753 대	358.5	
			2	죽백동 753-1 대	329.7	
	2	1,240.9	1	죽백동 754 대	423.2	
			2	죽백동 754-1 대	405.4	
			3	죽백동 754-2 대	412.3	
	3	1,338.2	1	죽백동 757 대	361.2	
			2	죽백동 757-1 대	302.4	
			3	죽백동 757-2 대	305.5	
4	죽백동 757-3 대	369.1				
근생4	1	1,010.3	1	죽백동 768 대	1,010.3	
	2	1,179.4	1	죽백동 769 대	591.6	
			2	죽백동 769-1 대	587.8	
	3	946.0	1	죽백동 770-1 대	946.0	
	4	1,684.2	1	죽백동 771 대	849.1	
			2	죽백동 771-1 대	835.1	
5	1,547.8	1	죽백동 772 대	772.9		
		2	죽백동 772-1 대	774.9		
근생5	1	2,976.2	1	죽백동 733 대	463.1	
			2	죽백동 733-5 대	517.2	
			3	죽백동 733-4 대	522.7	
			4	죽백동 733-1 대	448.6	
			5	죽백동 733-2 대	518.0	
			6	죽백동 733-3 대	506.6	
	2	2,651.3	1	죽백동 732 대	653.0	
			2	죽백동 732-4 대	677.8	
3			죽백동 732-1 대	642.4		
4			죽백동 732-2 대	678.1		
근생6	1	756.1	—	비전동 1001-2 대	756.1	
근생7	1	1,139.3	—	비전동 1007 주	1,139.3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합계		82,177.2	—	—	82,177.2	
일상1	1	1,144.1	1	비전동 1012 대	569.6	
			2	비전동 1012-1 대	574.5	
	2	2,017.0	1	비전동 1012-2 대	1,009.0	
			2	비전동 1012-3 대	1,008.0	
	3	4,206.0	1	비전동 1015 대	868.0	
			2	비전동 1015-1 대	687.0	
			3	비전동 1015-2 대	687.0	
			4	비전동 1015-3 대	689.0	
			5	비전동 1015-4 대	733.0	
			6	비전동 1015-5 대	542.0	
4	898.7	1	비전동 1013 대	898.7		
일상2	1	7,603.2	1	비전동 1090 대	1,009.1	
			2	비전동 1090-1 대	884.4	
			3	비전동 1090-2 대	2,141.0	
			4	비전동 1090-3 대	1,176.7	
			5	비전동 1090-4 대	1,225.0	
			6	비전동 1090-5 대	1,167.0	
	2	5,809.3	1	비전동 1091 대	755.4	
			2	비전동 1091-1 대	1,018.6	
			3	비전동 1091-2 대	980.4	
			4	비전동 1091-5 대	803.6	
			5	비전동 1091-4 대	1,152.6	
			6	비전동 1091-3 대	1,098.7	
3	1,909.4	1	비전동 1092 대	1,909.4		
4	1,928.8	1	비전동 1092-1 대	1,928.8		
일상3	1	2,244.3	1	비전동 1094 대	1,024.9	
			2	비전동 1094-1 대	1,219.4	
	2	2,411.7	1	비전동 1098 대	1,345.6	
			2	비전동 1098-1 대	1,066.1	
	3	1,012.9	1	비전동 1097-1 대	1,012.9	
	4	1,433.0	1	비전동 1095 대	1,433.0	
	5	4,638.1	1	비전동 1096 대	1,677.7	
			2	비전동 1096-1 대	1,158.6	
			3	비전동 1096-2 대	903.0	
			4	비전동 1096-3 대	898.8	
일상4	1	14,850.0	1	비전동 1104 대	14,850.0	
	2	3,517.0	1	비전동 1105 대	933.6	
			2	비전동 1105-1 대	850.8	
			3	비전동 1105-3 대	754.8	
			4	비전동 1105-2 대	977.8	
	3	5,027.3	1	비전동 1103 대	1,257.2	
			2	비전동 1103-1 대	1,257.7	
			3	비전동 1103-2 대	1,257.2	
			4	비전동 1103-3 대	1,255.2	
	4	3,887.3	1	비전동 1100 대	556.0	
			2	비전동 1100-1 대	697.9	
			3	비전동 1100-2 대	698.5	
			4	비전동 1100-5 대	644.9	
			5	비전동 1100-4 대	645.1	
			6	비전동 1100-3 대	644.9	
	5	1,437.1	1	비전동 1107 대	643.1	
	6	1,417.5	2	비전동 1107-1 대	794.0	
			1	비전동 1108 대	734.2	
	7	1,166.8	2	비전동 1108-1 대	683.3	
			1	비전동 1109 대	1,166.8	
	8	1,735.3	1	비전동 1109-1 대	868.1	
			2	비전동 1109-2 대	867.2	
	9	4,638.1	1	비전동 1101 대	712.0	
			2	비전동 1101-1 대	712.1	
			3	비전동 1101-2 대	1,537.0	
			4	비전동 1101-3 대	838.0	
			5	비전동 1101-4 대	839.0	
			1	비전동 1102-3 대	1,345.1	
10	7,244.3	2	비전동 1102-2 대	3,144.3		
		3	비전동 1102-1 대	1,438.4		
		4	비전동 1102 대	1,316.5		

5) 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합계		24,102.0	-	24,012.0	
업무	업무1	10,003.2	죽백동 796 대	10,003.2	
	업무2	3,279.2	비전동 1002-1 대	3,279.2	
	업무3	2,291.1	비전동 1002 대	2,291.1	
	업무4	5,179.8	비전동 1001 대	5,179.8	
	업무5	3,348.7	죽백동 763 대	3,348.7	

6)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	
합계		112,112.1	－	－	112,112.1	
지원1	1	12,980.2	1	죽백동 729 대	8,518.1	
			2	죽백동 729-1 대	4,462.1	
	2	6,802.2	1	죽백동 736 대	3,289.0	
			2	죽백동 736-1 대	3,513.2	
	3	19,652.6	1	죽백동 735 대	991.6	
			2	죽백동 735-1 대	1,022.6	
			3	죽백동 735-2 대	1,021.7	
			4	죽백동 735-3 대	920.1	
			5	죽백동 735-13 대	1,509.1	
			6	죽백동 735-12 대	1,525.1	
			7	죽백동 735-11 대	1,540.4	
			8	죽백동 735-10 대	1,557.1	
			9	죽백동 735-9 대	1,776.8	
			10	죽백동 735-4 대	1,465.7	
			11	죽백동 735-5 대	1,488.1	
			12	죽백동 735-6 대	1,510.1	
			13	죽백동 735-7 대	1,532.1	
			14	죽백동 735-8 대	1,792.1	
	4	14,413.6	1	죽백동 734 대	1,088.5	
			2	죽백동 734-1 대	1,105.0	
			3	죽백동 734-10 대	1,808.3	
			4	죽백동 734-9 대	1,898.2	
			5	죽백동 734-8 대	2,055.3	
			6	죽백동 734-7 대	1,478.6	
			7	죽백동 734-3 대	1,650.4	
			8	죽백동 734-4 대	1,633.6	
			9	죽백동 734-5 대	1,695.7	
지원2	1	9,269.0	1	죽백동 730 대	4,880.6	
			2	죽백동 730-2 대	4,388.4	
지원3	지원3	2,032.5	－	죽백동 732-3 대	2,032.5	
지원4	지원4	46,962.0	－	죽백동 814 대	46,962.0	

7)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합계		106,095.1	-	106,095.1	
유	유1	766.9	비전동 981-1 대	766.9	
	유2	704.3	비전동 1077 대	704.3	
	유3	1,027.0	비전동 1051 대	1,027.0	
	유4	895.4	죽백동 808 대	895.4	
초	초1	12,046.5	비전동 1009 학	12,046.5	
	초2	12,848.6	죽백동 738 학	12,848.6	
	초3	13,158.8	비전동 1034 학	13,158.8	
초중통합	초중4	11,898.1	죽백동 793 학	11,898.1	
중	중1	13,026.0	비전동 332-1 학	13,026.0	
	중3	11,859.5	비전동 1010 학	11,859.5	
고	고1	13,881	비전동 1088 학	13,881	
	고2	13,983.0	죽백동 726 학	13,983.0	

8)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합계		18,308.5	—	18,308.5	
공청	공청1	2,652.0	죽백동 798 대	2,652.0	
	공청3	9,969.8	죽백동 795 대	9,969.8	
	공청4	2,293.7	비전동 1001-4 대	2,293.7	
	공청5	3,393.0	죽백동 724	3,393.0	

9) 체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계		5,823.0	-	5,823.0	
체	체1	5,823.0	죽백동 794 체	5,823.0	
	체2	13,265.2	죽백동 729-2 대	4,341.8	
			죽백동 729-3 대	4,459.2	
			죽백동 729-4 대	4,464.2	

10) 의료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계		9,437.1	-	9,437.1	
의	의1	9,437.1	죽백동 731 대	9,437.1	

11)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계		5,581.2		5,581.2	
보	보1	855.8	비전동 975-1 대	855.8	
	보2	850.2	비전동 1086 대	850.2	
	보3	695.5	죽백동 778 대	695.5	
복	복1	3,179.7	비전동 1001-1 대	3,179.7	

12)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계		9,100.9		9,100.9	
문	문1	9,100.9	죽백동 797 대	9,100.9	

13)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계		19,361.3	-	19,361.3	
종	종1	1,697.1	비전동 1006 중	1,697.1	
	종2	2,118.1	죽백동 812 중	2,118.1	
	종3	1,233.6	비전동 1033 중	1,233.6	
	종4	1,700.0	죽백동 727 중	1,700.0	
	종5	1,262.7	죽백동 762 중	1,262.7	
	종7	3,982.6	비전동 997 중	3,982.6	
	종8	7,367.2	비전동 1029 중	7,367.2	

14)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계		6,537.6	-	6,537.6	
주유	주유2	3,233.8	죽백동 734-6 주	3,233.8	
	주유3	3,303.8	죽백동 813 주	3,303.8	

15)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계		34,042.2	-	34,042.2	
주	주1	524.9	비전동 978 차	524.9	
	주2	499.6	비전동 987 차	499.6	
	주3	849.5	비전동 994 차	849.5	
	주4	2,299.3	비전동 1013-1 차	2,299.3	
	주5	899.4	비전동 1026-2 차	899.4	
	주6	509.0	비전동 1073 차	509.0	
	주7	1,477.6	비전동 1083 차	1,477.6	
	주8	1,137.2	비전동 1041 차	1,137.2	
	주9	3,014.7	비전동 1066 차	3,014.7	
	주10	873.5	죽백동 752 차	873.5	
	주11	1,143.0	죽백동 759 차	1,143.0	
	주12	1,022.8	비전동 1097 차	1,022.8	
	주13	1,775.4	비전동 1092-2 차	1,775.4	
	주14	1,983.1	비전동 1001-3 차	1,983.1	
	주15	490.3	죽백동 770 차	490.3	
	주16	861.4	죽백동 804 차	861.4	
	주17	1,329.5	비전동 1058 차	1,329.5	
	주18	1,858.0	비전동 1106 차	1,858.0	
	주19	1,143.8	죽백동 787 차	1,143.8	
	주20	497.1	죽백동 771-2 차	497.1	
	주21	2,154.5	죽백동 734-2 차	2,154.5	
	주22	3,198.6	죽백동 799 대	3,198.6	
		주120	4,500.0	비전동 1099 공	4,500.0

16) 공급처리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계		3,155.2	-	3,155.2	
전	전1	3,155.2	죽백동 730-1 잡	3,155.2	

17) 하수도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합계		17,093.7	-	17,093.7	
하	하1	17,093.7	비전동 1000 잡	17,093.7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가. 주택전용필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D1-1 ~ D1-6	용 도	R1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다중주택, 공관제외/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태양집광판과 태양집열판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음
		형 태		•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고려하여 지붕면적의 2/3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m이하로 권장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로 권장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 도로변
		허용 가구수		• 4가구 이하

나. 점포주택필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2	D2-1 ~ D2-2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다중주택, 공관 제외/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건축연면적의 40% 범위내에서 지상 1층이하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D2	D2-1 ~ D2-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태양집광판과 태양집열판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음
		형 태	•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고려하여 지붕면적의 2/3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m이하로 권장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권장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도로변
		허 용 가구수	• 단독주택 : 6가구 이하 • 점포주택 : 점포부분외 5가구 이하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B, C, S	A-1 ~ A-7, B-1 ~ B-12, C-1, S-2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 A :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B : 전용면적 60~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B-12BL : 전용면적 60㎡이하 포함) • C :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S : 전용면적 60~85㎡이하 및 85㎡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A-1~A-6, B-1~B-11, C-1 : 30% 이하 • A-7 : 60%이하 • S-2, B-12 : 50% 이하

		용적률 및 높이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용 적 륜(%)</th><th colspan="2">높 이</th></tr><tr><th>최저층수</th><th>최고층수</th></tr><tr><td>A-1</td><td>170%이하</td><td>—</td><td>25</td></tr><tr><td>A-2</td><td>170%이하</td><td>—</td><td>25</td></tr><tr><td>A-3</td><td>170%이하</td><td>—</td><td>25</td></tr><tr><td>A-4</td><td>160%이하</td><td>—</td><td>20</td></tr><tr><td>A-5</td><td>160%이하</td><td>—</td><td>25</td></tr><tr><td>A-6</td><td>190%이하</td><td>—</td><td>25</td></tr><tr><td>A-7</td><td>190%이하</td><td>—</td><td>20</td></tr><tr><td>B-1</td><td>170%이하</td><td>—</td><td>25</td></tr><tr><td>B-2</td><td>170%이하</td><td>—</td><td>25</td></tr><tr><td>B-3</td><td>170%이하</td><td>—</td><td>25</td></tr><tr><td>B-4</td><td>170%이하</td><td>—</td><td>15</td></tr><tr><td>B-5</td><td>170%이하</td><td>—</td><td>25</td></tr><tr><td>B-6</td><td>190%이하</td><td>—</td><td>25</td></tr><tr><td>B-7</td><td>190%이하</td><td>—</td><td>25</td></tr><tr><td>B-8</td><td>190%이하</td><td>—</td><td>25</td></tr><tr><td>B-9</td><td>190%이하</td><td>—</td><td>25</td></tr><tr><td>B-10</td><td>190%이하</td><td>—</td><td>25</td></tr><tr><td>B-11</td><td>190%이하</td><td>—</td><td>25</td></tr><tr><td>B-12</td><td>100%이하</td><td>—</td><td>4</td></tr><tr><td>C-1</td><td>190%이하</td><td>—</td><td>25</td></tr><tr><td>S-2</td><td>100%이하</td><td>—</td><td>4</td></tr></table>	구 분	용 적 륜(%)	높 이		최저층수	최고층수	A-1	170%이하	—	25	A-2	170%이하	—	25	A-3	170%이하	—	25	A-4	160%이하	—	20	A-5	160%이하	—	25	A-6	190%이하	—	25	A-7	190%이하	—	20	B-1	170%이하	—	25	B-2	170%이하	—	25	B-3	170%이하	—	25	B-4	170%이하	—	15	B-5	170%이하	—	25	B-6	190%이하	—	25	B-7	190%이하	—	25	B-8	190%이하	—	25	B-9	190%이하	—	25	B-10	190%이하	—	25	B-11	190%이하	—	25	B-12	100%이하	—	4	C-1	190%이하	—	25	S-2	100%이하	—	4
			구 분			용 적 륜(%)	높 이																																																																																						
최저층수	최고층수																																																																																												
A-1	170%이하	—	25																																																																																										
A-2	170%이하	—	25																																																																																										
A-3	170%이하	—	25																																																																																										
A-4	160%이하	—	20																																																																																										
A-5	160%이하	—	25																																																																																										
A-6	190%이하	—	25																																																																																										
A-7	190%이하	—	20																																																																																										
B-1	170%이하	—	25																																																																																										
B-2	170%이하	—	25																																																																																										
B-3	170%이하	—	25																																																																																										
B-4	170%이하	—	15																																																																																										
B-5	170%이하	—	25																																																																																										
B-6	190%이하	—	25																																																																																										
B-7	190%이하	—	25																																																																																										
B-8	190%이하	—	25																																																																																										
B-9	190%이하	—	25																																																																																										
B-10	190%이하	—	25																																																																																										
B-11	190%이하	—	25																																																																																										
B-12	100%이하	—	4																																																																																										
C-1	190%이하	—	25																																																																																										
S-2	100%이하	—	4																																																																																										
	배치	- 태양집광판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장남향으로 배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음 - A-1BL, A-2BL, B-1BL, B-2BL, C-1BL, B-10BL 도로변에 저층(10층이하)배치구간 설정 - A-5BL, B-7BL, B-8BL, C-1BL, B-10BL 도로변에 직각배치구간 설정																																																																																											
	형 태	- 건축물 1동의 길이는 기준층에 대하여 호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로 함, 다만 테라스형 하우스 및 연립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함 - 전용면적 60㎡초과의 아파트는 4호 이내로 함 -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는 50m이내로 또는 6호 이내로 함 - 지붕형태는 통일감 형성과 태양집광판 설치가 가능한 형태를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 이하로 함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로 함 - 연립주택용지(S-2BL)의 건축물은 테라스하우스 유형의 주택을 권장하며, 테라스하우스 유형의 주택을 총 세대수의 50%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 50%이하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건폐율 30%이하를 적용함 (테라스하우스 유형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지층 또는 1층, 발코니 외부(중간층), 최상층의 지붕 등에 개별세대에서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테라스를 확보한 주택을 말함) - 테라스하우스 유형 주택의 건축시 테라스 면적은 건축면적(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4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색 채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르며, 결정도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평택시 조례에 따름 - A-1BL, A-3BL, A-4BL, A-7BL, B-4BL, C-1BL은 남측 근린공원에서부터 건축한계선 13m를 지정, 이는 주거동에 한함 - A-1BL, A-2BL, B-1BL, B-2BL은 통복천 인접 도로변에서부터 건축한계선 10m를 지정, 이는 주거동에 한함 - B-2BL, B-5BL은 북측 완충녹지변에서부터 건축한계선 8m를 지정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 생	근생1 ~ 근생7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지하층은 공용부분에 한하여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근생1~6	• 70% 이하
			근생7	• 20% 이하
		용적률	근생1~6	• 350% 이하
			근생7	• 40% 이하
		높 이	근생1~6	• 2층 이상, 5층이하
			근생7	• 2층 이상, 9m 이하 (경사지붕 높이는 별도) • 지하층 개발 불허 (공용부분 제외)
		배 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며, 건축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고려하여 지붕면적의 2/3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2m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 상	일상1 ~ 일상4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외의 용도 - 시행지침 제43 조에서 규정한 허용용도 • 불허용도 - 시행지침 제43 조에서 규정한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900% 이하
		높 이	• 15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단, 20m이상의 도로 가 2개이상 면할 때 임의로 선택가능 • 광장과 면한 대지는 광장과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형 태	• 건축물의 길이는 30m 이내로 하고 그이상은 시각적으로 분절되도록 함 • 건축물의 지붕, 출입구, 계단실, 창문 등은 가급적 박공모양의 디자인을 가미하고, 통일성 있게 계획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지정선 3m : 주도로변

5) 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업무1 ~ 업무5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부수용도로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2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단, 20m이상의 도로가 2개이상 면할 때 임의로 선택가능
		형 태	• 개방감을 주기 위해 투시형서터를 1층 벽면의 1/2이상 설치하도록 함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6)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1 ~ 지원4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교육연구시설 (학교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종교집회장제외) ※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부수용도로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남향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
		형 태	• 첨단산업, 디지털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 (단,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실시)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대로변 및 인접 대지선

7)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가. 유치원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	유1 ~ 유4	용 도	•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이하 범위내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남향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5m이하로 함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 도로변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초,중,고	초1~ 고2	용 도	•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 병설유치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초1 ~초4, 중1 ~중3, 고1 • 6층 이하 : 고2
		배 치	• 태양집광판과 태양집열판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음
		형 태	• 담장을 설치할 경우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5m 이하로 함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8)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청	공청1, 공청3, 공청4, 공청5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배 치	• 태양집광판과 태양집열판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음
		형 태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함 • 개방감을 주기 위해 투시형서터를 1층 벽면의 1/2이상 설치하도록 함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5m 이하로 함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9) 체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체	체1	용 도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배 치	• 태양집광판과 태양집열판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음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함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5m 이하로 함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체2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해당하는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및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제1·2종근린생활시설은 부수용도로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배 치	• 휴먼링 등 주변지역과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가로활성화를 고려하여 배치 - 외부에서 휴먼링으로의 이용성, 휴먼링에서 주변시설로의 접근성, 보행자의 안전성, 완만한 경사구배로 편의성을 확보
		형 태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 - 유색유리, 반사유리, 필름 씬팅 등 사용금지 •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공지 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 • 고령화 및 장애인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10) 의료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의	의1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해당하는 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함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5m 이하로 함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10m : 도로변 • 건축한계선 6m : 도로변 및 인접대지선

11)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보,복	보1 ~ 보3, 복1	용 도	• 허용용도 -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제외) - 보육시설 : 「건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보1, 보2, 보3, 복1 : 60% 이하
		용적률	• 보1, 보2, 보3 : 180% 이하 • 복1 : 230% 이하
		높 이	• 보1~보3 : 3층 이하
		배 치	• 태양집광판과 태양집열판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음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함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5m 이하로 함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복1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보1~보3 도로변

12)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	문1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관람장, 집회장 중 마권장의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배 치	• 태양집광판과 태양집열판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으로 배치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준으로 동·서로 45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음
		형 태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함 • 개방감을 주기 위해 투시형서터를 1층 벽면의 1/2이상 설치하도록 함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5m 이하로 함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13)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	종1~종5, 종7~종8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및 부속용도 (납골당 제외) ※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함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5m 이하로 함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14)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주1 ~ 주22, 주20	용 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제8호에 해당하는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주1, 주2, 주5, 주6, 주7, 주8, 주10, 주11, 주16, 주17, 주19 : 240% 이하 • 주3, 주14, 주15, 주20, 주22 : 320% 이하 • 주4, 주9, 주12, 주13, 주18, 주21 : 800% 이하
		높 이	• 주1, 주2, 주5, 주6, 주7, 주8, 주10, 주11, 주16, 주17, 주19 : 3층 이하 • 주3, 주14, 주22 : 4층 이하 • 주4, 주9, 주12, 주13, 주18, 주21 : 10층 이하 • 주15, 주20 : 3층 이상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주15, 주20 : 최상층 옥상은 주차장으로 활용
		색 채	-
		건축선	-

15)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	주22 주20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제1항에 의한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2항에 의한 휴게실, 간이정비시설, 슈퍼마켓, 편의점등의 판매시설 - 주유2, 주유3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6) 공급처리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	전1	용 도	• 허용용도 - 전기공급설비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남향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함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함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5m 이하로 함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6m

17) 하수도시설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하	하1	용 도	기정 • 허용용도 -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수도 및 편익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배 치	• 태양집광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설치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10m : 도로변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D1-1 ~ D2-2, 근생1 ~ 근생7	D-1 ~ D2-2, 근생1 ~ 근생7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와 면한 경우 그 폭은 단독주택용지 6m, 근린생활시설용지 7m를 초과할 수 없다. -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단독주택용 점포형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 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포주택은 1가구당 1대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며 기계식주차장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 내벽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의 이용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단독주택의 개별차고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일체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면 공지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생활녹지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다만 차량진출입 및 보행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대지내 조경 및 옥외 마당	-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점포형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물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고 지상 조경부에 대중에 상시 개방될 수 있는 휴식공간(벤치, 파고라 등)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 A-7, B-1 ~ B-12, C-1, S-2	A-1 ~ A-7, B-1 ~ B-12, C-1, S-2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자 교차를 하도록 한다. - 차량출입구가 폭 20m 이상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가·감속차선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척한다.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근리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보행자 통로	•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하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	• 공동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 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전면 공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포켓공간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공공 보행 통로	• 보행생태축 (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 상업·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일상1 ~ 일상4 , 업무1 ~ 업무5	일상1 ~ 일상4 , 업무1 ~ 업무5	보행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를 3cm이하로 한다. •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0.3m 전면에는 점형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위치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한다.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정시설물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전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별표4]에 따른 보행지장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와와의 높이 차를 15cm 이하로 한다.	
		공개 공지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각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4)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원1 ~ 지원4	지원1 ~ 지원4	차량의 진출입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에서는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전면 공지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 하도록 한다.	

5)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 내용	비고
<변경> 유1~유4, 초1~고2, 공청1,3~5, 의1, 보1~3, 복1, 문1, 체1, 종1~5,7,8, 주1~주22, 주유2,3, 전1, 하1	<변경> 유1~유4, 초1~고2, 공청1,3~5, 의1, 보1~3, 복1, 문1, 체1, 종1~5,7,8, 주1~주22, 주유2,3, 전1, 하1	차량 출입구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유치원, 학교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면적 1,000㎡이하의 대지내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	-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면 공지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차폐 조경	- 주차장, 하수도시설, 사회복지시설은 결정도에 지정된 위치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구간은 제외한다. - 차폐조경의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식재토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II.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당 초				변 경			
제5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제5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제70조 (건축물의 용도)				제70조 (건축물의 용도)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용도계획표>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용도계획표>			
구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불허용도	구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불허용도
하수도 시설	U(하)	· 지정된 용도(하수종말처리장) 및 그 부속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하수도 시설	U(하)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하수도 및 편익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